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 8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김만곤(한국교과서연구재단)

공동연구자 : 김정호(미래문화연구소)

: 이춘식(경인교육대학교)

김재준(경기고등학교)

이 팀(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협력관 : 정상명(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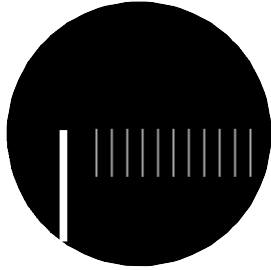
2014. 8.



이 연구는 2014년도 교육부의 지원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연구 협력진

강신철(광주광역시교육청)
구난희(한국학중앙연구원)
김대현(부산대학교)
김범상(장원교육)
김선희(용인 모현중학교)
김종숙(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김진영((사)한국검인정교과서)
김풍환(평촌경영고등학교)
김혜환(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김훈범((주)미래엔)
박소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재은(장평중학교)
박정과((주)천재교과서)
박중은(서울불광중학교)
백선옥(강원도교육청)
서지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손병길(한국교육학술정보원)
양향룡(전라북도교육청)
윤경숙(목동중학교)
윤광원((주)미래엔)
윤선웅(두산동아(주))
이경성(난우중학교)
이계영(인천광역시교육청)
이광서(아산 설화고등학교)
이동원(경인교육대학교)
이성환(부산광역시교육청)
이옥희(잠신중학교)
이홍배(천일중학교)
이화성(서울특별시교육청)
정종식(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정혜은((주)좋은책신사고)
조성준((주)금성출판사)
조용옥(온양여자중학교)
차경호(대구 경덕여자고등학교)
허보옥((주)비상교육)
홍승현(충청북도교육청)
황영숙(경상남도교육청)



차례

C O N T E N T S

I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3
2. 연구 내용과 방법	6
가. 연구 내용	6
나. 연구 방법	6
3. 연구 과정과 한계점	7
가. 연구 과정	7
나. 연구의 한계점	7
II 이론적 배경	9
1.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의 변천과정과 쟁점	11
2. 교과서 선정 매뉴얼의 내용과 쟁점	15
가.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 제공	19
나.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20
다. 학교에서의 선정	22
3. 선행 연구 분석	26
가. 교과서 선정제도에 관한 연구	26
나. 교과서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29
4. 외국 사례 분석	31
가. 일본	31
나. 미국	38
다. 시사점	41

III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방법과 결과	43
	1. 델파이 조사의 개요	45
	2. 델파이 조사의 과정	46
	가. 1차 델파이 조사	46
	나. 2차 델파이 조사	52
	다. 3차 델파이 조사	56
	3.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결과	62
IV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 방안	65
	1.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개선 방안	67
	가. 교사 참여의 근거 법제화 방안	67
	나. 선정 도서의 변경 조건 보완 방안	68
	다. 도서 주문 시기와 교과서 가격 결정의 현실화	70
	2.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지침)의 개선 방안	71
	가. 추천 과정에서의 순위 결정 문제	71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학교장 결정 과정의 문제	73
	다. 소규모 학교에서의 교사 참여 방법의 문제	73
	라. 도서 선정기준의 개선 방안	75
	마. 선정 결과의 공개	76
	바.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대응	77
V	요약 및 정책 제언	79
	참고문헌	89
	부록	91
	[부록 1]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 대조표	93
	[부록 2]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개정(안) 신·구 대조표	94
	[부록 3] 델파이 조사 1차 설문지	97
	[부록 4] 델파이 조사 2차 설문지	104
	[부록 5] 델파이 조사 3차 설문지	108

[부록 6] 델파이 조사 1차 서술형 의견	114
[부록 7] 델파이 조사 2차 서술형 의견	161
[부록 8] 델파이 조사 3차 서술형 의견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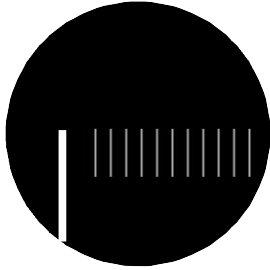


표 차 례

C O N T E N T S

<표 II-1> 검·인정 심사 결과표 및 수정·보완 대조표 탑재 홈페이지	20
<표 II-2> 교과서 선정기준 틀 예시	3
<표 II-3> 일본의 교과서 선정제도 관련 법규 목록	2
<표 III-1> 설문지 발송 및 회수율	64
<표 III-2>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의 1차 델파이 설문지의 주요 내용	74
<표 III-3>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의 2차 델파이 설문지의 구성 내용	3
<표 III-4> 델파이 2차 조사 설문지 결과 분석	55
<표 III-5>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 개선안에 대한 분석 결과	6
<표 III-6> ‘교과서 선정 단위’ 개선안에 대한 분석 결과	8
<표 III-7>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 개선안에 대한 분석 결과	9
<표 III-8> ‘교과서 선정 후 변경’ 개선안에 대한 분석 결과	6
<표 III-9> ‘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설명회 기회 부여’ 개선안에 대한 분석 결과	6
<표 III-10>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의 분석 결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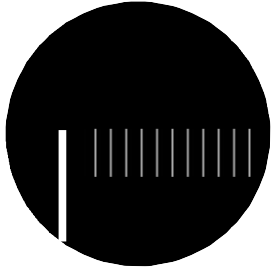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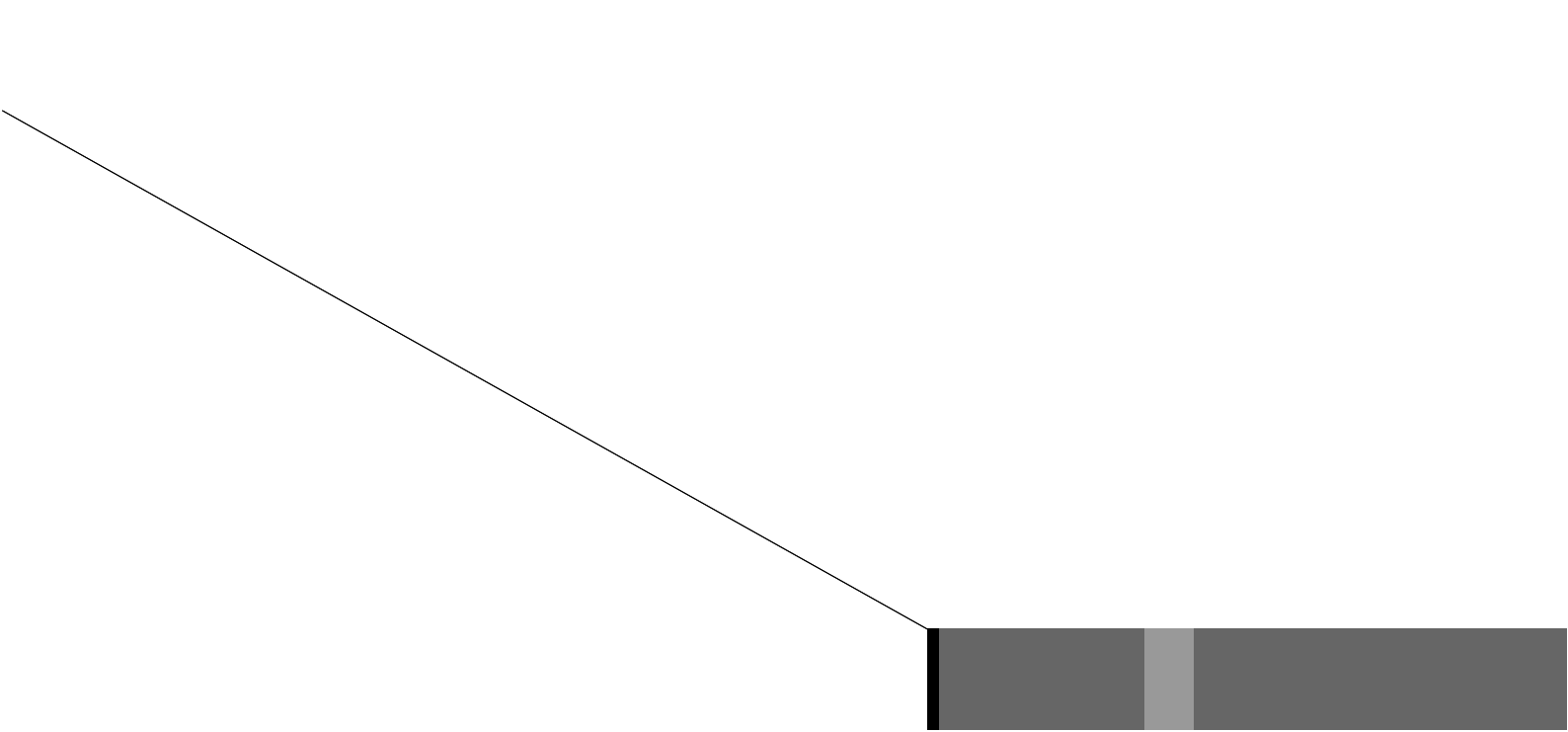


그림 차례

C O N T E N T S

[그림 II-1] 교과서 선정 절차	8
[그림 II-2] 일본의 교과서 선정 절차	36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3. 연구 과정과 한계점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교과서의 일생 주기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 → 교과서 구분 고시 →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심의기준 발표 → 교과서 개발 → 심의·심사 → 인쇄·발행 → 선정 → 공급 → 사용 → 수정·보완 → 재판 발행’으로 이어진다. 이 전 과정이 정책 목표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시대 상황에 맞도록 국가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하고, 인정제 대폭 확대와 민간 발행사의 창의성 보장 및 학교의 선정 자율권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도 공교육 체제 안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질의 교과서를 공급하기 위하여 법규와 지침을 통해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심의 단계에서는 정부가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인증할 것인가를 가리는 만큼, 일정 조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최저 가치 평가만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교과서의 결격 사유가 없다는 보증만 받은 것일 뿐, 시장이 바라는 모든 가치를 다 높은 수준으로 갖추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최고 가치 평가는 학교가 하는 선정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학교는 검·인정 교과서로 발행된 다양한 상품 중에서 교과목별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선정 과정은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찾기 위한 상대적 비교 평가이다.

교과서 선정은 발행사의 이윤 동기 자극과 학생의 학습 방향 안내 및 국가의 교과서 예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신호등과 같다. 검·인정 교과서를 출시한 발행사는 그 선택 결과를 보고 앞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 할지 방향을 잡게 된다. 소비자가 선택해 주지 않는 상품은 비록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 시장 경쟁이 심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바라는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 학교의 교과서 선정 과정은 발행사의 이윤 동기를 자극하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이 바라는 좋은 교과서가 어떤 것인지를 천명하는 ‘타당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

학생도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지에 따라 그 과정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교과서 자체가 학생들에게 세계 인식의 창이 되며, 교수·학습 과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같은 국가 교육과정을 근거로 개발하여도 다양한 검·인정 교과서는 내용 구성과 전개 체제가 각각 다른 편이다. 특히 이념 기반이 수반되는 교과목이나 탐구 과정이 필요한 교과목은 교과서 간 편차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학교는 이념 중립성을 지키면서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정의 타당성을 살려야 한다.

교과서 대금을 정부가 부담하면 가격은 선정 요인이 되지 않는다. 교과서 가격을 자율화한 상황에서 전국 학교의 교과서 대금은 국가 교육비 예산 규모에 큰 영향을 준다. 교사는 가장 좋은 교과서만 찾을 뿐,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발행사도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격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 거래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편이다. 그러므로 교과서 선정의 경제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¹⁾

정부는 교과서 선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학교 단위에서 교사가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는 선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법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고, 선정 매뉴얼은 교사가 먼저 선정한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검·인정 교과서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 특색에 맞는 교과서를 제대로 선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교과서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교과서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려면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쟁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전문성에 기초한 자주적인 선택을 하고, 그 결과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1) 가용 예산 안에서 최소비용과 최대효용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성이고, 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율가격제 → 가격 인상 → 예산 부담 가중 → 정부의 가격 인하 조정 → 발행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몇 가지 현안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각 학교에서 교과목별 전공 교사 3인 이상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최종 결정 등을 거쳐 진행되는 교과서 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즉 3인 이상의 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인근 학교와 협력하여 교과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선정 과정의 대표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그 과정이 선정을 위한 논의 구조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다. 그리고 교과서 선정 주체인 학교는 자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을 겪고 있으므로 양질의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현안을 밝혀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²⁾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바탕으로 검·인정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위압이나 사회적 간섭에 의해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타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가 교과서 선정을 타당하고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 선정 정책과 현실을 ‘선정 주체와 선정 단위, 선정 과정, 선정 기준, 선정 결과’ 등에서 파악하고 실증적이거나 논리적인 근거를 가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표이다. 그 대안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과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2014학년도 2학기 이후 교과서 선정 과정에 적용
- 학교와 사회의 교과서에 대한 선순환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 교사의 교과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2) 특히 이러한 학교의 한계점은 이미 유학영 외(2009)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선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교육현장의 문제라고 제기된 바 있음.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 (1) 교과서 선정의 실상 파악과 쟁점 분석
- (2) 교과서 선정 과정상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선 방안
 - 교사 참여의 법제화
 - 선정 교과서의 변경 방법
 -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보완 방안
 - 교사 참여의 방법(소규모 학교에서의 교사 참여 방법 포함)
 - 선정 교과서의 변경 방법
 - 교과서 선정 결과의 공개 시기
 - 교과서 선정 기준
 - 선정 이후 부당한 외부 압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방법
 - 교육청의 역할

나.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및 교과서 선정 관련 공식 문서 분석
- 외국 사례 조사
 -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교과서 선정 사례
 - 시사점 도출
- 실증 조사연구 : 상황 파악과 문제 발견 및 대안 탐색
 - 전문가 델파이조사 : 현안과 대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도출
 - 전문가 협의회 : 제도 개선 방안의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

3. 연구 과정과 한계점

가. 연구 과정

○ 연구 추진 일정

연구 내용	월별	4월	5월	6월	7월
	연구 계획 수립 및 선행연구, 관련 문서 검토와 분석				
문헌분석, 1~2차 델파이조사					
3차 델파이조사, 전문가협의회					
개선방안 마련 및 최종 보고서 작성					

나. 연구의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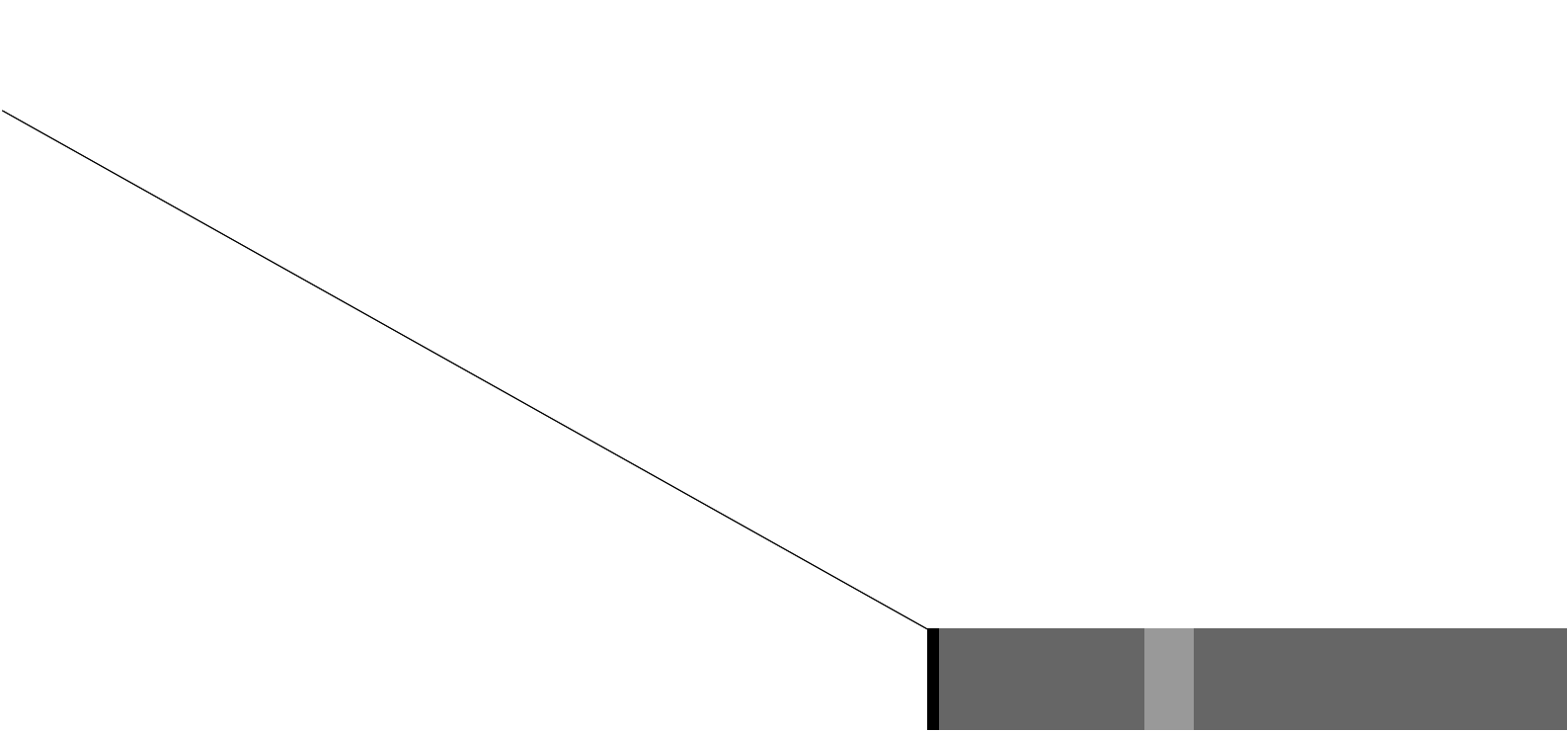
이 연구는 단기간에 수행해야 하는 소규모 과제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한계점은 추후 중·장기 연구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의제와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 2013년에 마무리된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선정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는 교과서 선정의 종합적인 평가 연구를 하려면 2014년에 사용해 본 결과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교과서 선정과 사용의 상호 연결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많은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교과서 선정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심층 비교를 하려면 그 나

라의 현장을 관찰하여 구체적 상황에 대한 인지가 선행된 다음, 나라마다 교육 제도와 사회 문화 및 법률 제도 등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교과서 선정 과정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과서 선정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의 교육에 대한 내적 의식과 결정에 이르는 행태 및 현상에 대한 이상적 관점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교과서 선정 과정은 제도적인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그 타당성과 경제성 및 안정성 등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 자체보다 참여자의 내적 의식인데, 이는 참여 관찰이나 심층 면담 분석을 해야 하는 장기 종합 연구 방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의 변천과정과 쟁점
2. 교과서 선정 매뉴얼의 내용과 쟁점
3. 선행 연구 분석
4. 외국 사례 분석

II. 이론적 배경

1.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의 변천과정과 쟁점

이 절에서는 교과서 관련 법규 중심으로 교과서 선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의 편찬·개발부터 심사·심의, 인쇄·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결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의 탄생부터 소멸까지를 다루는 법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5호, 2014. 2. 18. 일부개정)」이다. 교과서 선정 부분은 학교급별·교과목별 교과서가 단 1종인 국정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학교급별·교과목별 교과서가 다종인 검정과 인정에 국한된 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교과서’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895년 8월 최초의 근대 국정 교과서인 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 조선역사 등이 발행되면서부터이고, 관련 법규는 1908년 학부령 제16호로서 ‘교과용도서 검정 규정’이란 명칭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포되었으나(허강, 2010), 통감부에 의한 교과서 통제가 심하여 민간이 교과서 발행에 참여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교과서 선정 관련해서는 광복 이후부터 살펴볼 수 있다.

현재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시초가 되는 법규는 1950년 4월 29일 발표된 ‘대통령령 제336호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과 ‘대통령령 제337호 국정 교과용도서 편찬·개발 규정’이다. 이 규정들은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친 뒤, 1967년 4월 17일 ‘대통령령 제3018호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폐지되었고, 마찬가지로 이 규정은 7번의 개정을 거친 뒤, 1977년 8월 22일 ‘대통령령 제8660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면서 폐지되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이후에 2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대통령령 제2518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2. 18.)’이 공포·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규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부터 선정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검·인정 교과서보다는 국정 교과서가 더 주요하게 쓰였기 때문에 선정과 관련된 사항이 정책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선정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8월 3일에 전부 개정된 ‘대통령령 제5252호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이다. 직접적으로 ‘선정’이라는 용어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교과서 전시회’라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제30조(교과서 전시회) ①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전시회의 시기·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이는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학교에 다양한 교과서를 종합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법규에는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13년에 발간된 '인정도서 업무 편람(김만곤·김풍환·팽주만·김진영·정학준·이림, 2013)'과 교육부에서 2013년 배포한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회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서 학교나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두고 전시본을 전시하는 것이다.

이후 교과서 선정이라는 용어가 직접 포함된 조항이 나타나는 시점은 기존의 '교과용도서저작검·인정령'이 폐지되고 1977년 8월 22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학교의 장은 1종도서(1종교과서 또는 1종지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1종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도서(2종교과서 또는 2종지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한 1종도서 또는 2종도서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1종도서 또는 2종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위 조항의 경우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 과정을 안내해주는 조항이라기보다는 1종도서(국정)와 2종도서(검정), 그리고 인정도서의 위계를 나타내주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와 제12조를 통하여 1종도서 및 2종도서의 대상을 명시화하고 있으므로 선정 과정을 안내해주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현재 법규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선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선정하기 위해 여러 교과서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충분히 확보되는냐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법에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나타난다.

제30조(주문) ①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서 및 지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서 및 지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교과서 및 지도서의 주문상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문 관련 조항이 선정과 관련되는 이유는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문 전까지이기 때문이다. 위 조항의 경우 주문시기는 학기 시작을 기준으로 6개월 또는 4개월 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교과서의 검정과 인정이 언제 끝나 전시본이 언제 제공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명백하지 않다.

예를 들어 1학기에 사용할 교과서의 경우 학기 시작 6개월 전인 8월 말까지 주문하여야 하나,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롭게 교과서 검·인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동법 제13조 검정 실시 공고 조항에 검정 공고를 적어도 최초 교과서 사용학년도 개시 1년 전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8월 말 정도에 검정 합격 발표가 나게 된다. 이는 주문 기한인 8월 말과 겹치는 일정으로 이후에 전시본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송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각 학교는 법규에 규정된 주문 기한에 떠밀려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선정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주문이 늦어지면 발행 및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겨 각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문 관련 기한을 법규에 정해 놓은 것이지만, 이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인쇄, 발행, 공급까지 한 달이면 충분한 현재에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 구체적으로 전시본 제공 시점까지도 명시화되면 좋을 것이다.

이후 2002년 6월 25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특히 교과용도서의 선정과 관련된 조항이 상세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 밑줄은 전 법규와 달라진 부분임

이 조항의 제1항의 경우는 전 규정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고, 나머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신설된 항목이다. 제2항의 경우는 교과서를 선정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교과서 선정 과정의 일부를 법규에 명시한 것이다.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명시되어 있으나, 교사, 학생 등 실제 교과서를 사용하는 주체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면이 있다. 제3항의 경우는 교과서 선정에 있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역할을 명시한 부분으로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교육청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라는 점이다. 즉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평가 관련 자료가 제공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뉠 수 있다.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교육청의 역할을 어디까지 봐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교육청 차원의 자료 제공이 오히려 학교를 규제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비판적 입장이 병존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현재의 규정까지 약간의 문구 수정만이 있을 뿐 그 주요 내용은 이어지고 있다.

주문과 관련된 조항도 이번 개정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약간의 문구 수정만 이루어졌을 뿐 교과서 선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0조(주문)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 밑줄은 전 법규와 달라진 부분임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조항 및 주문과 관련된 조항은 2009년 8월 18일에 한 번 더 개정이 되는데 그 골자는 그대로이고, 약간의 문구 수정만 이루어졌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가 생김에 따라 교과서 주문을 이 시스템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여전히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의 다른 주체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고, 교과서 주문 기한 역시 늦추어지지 않았으며, 이 기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인정 합격 통보 최종 기한, 전시본 제공 기한 등에 대한 내용은 법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곧 교과서 선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간 확보’에는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조항은

2014년 2월 18일에 개정된 대통령령 제25185호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 밑줄은 전 법규와 달라진 부분임

제30조(주문)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4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 밑줄은 전 법규와 달라진 부분임

2. 교과서 선정 매뉴얼의 내용과 쟁점

현재 교과서 선정의 법적 근거는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2338호, 2014.1.28.,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타법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185호, 2014.2.18., 일부개정]이다. 각 법규의 교과서 선정제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제32조(기능) ①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 밑줄은 연구자가 친 것임

위 조항에서 볼 수 있다시피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조항은 매우 소략하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는 국·검·인정도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만 하나 그 선정에 있어 국정도서가 없을 때는 검정도서, 국·검정도서가 없을 때는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각 도서 간에는 위계가 존재한다. 둘째, 학교장이 학교에서 사용되는 검·인정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교과서 선정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학교(장)이며,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인사들의 모임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는 공개해서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교과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의 선정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과서 선정의 과정은 각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맞는 수업용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및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31조로부터 시작해 교육기본법 제5조, 제6조, 제14조로써 보장된 바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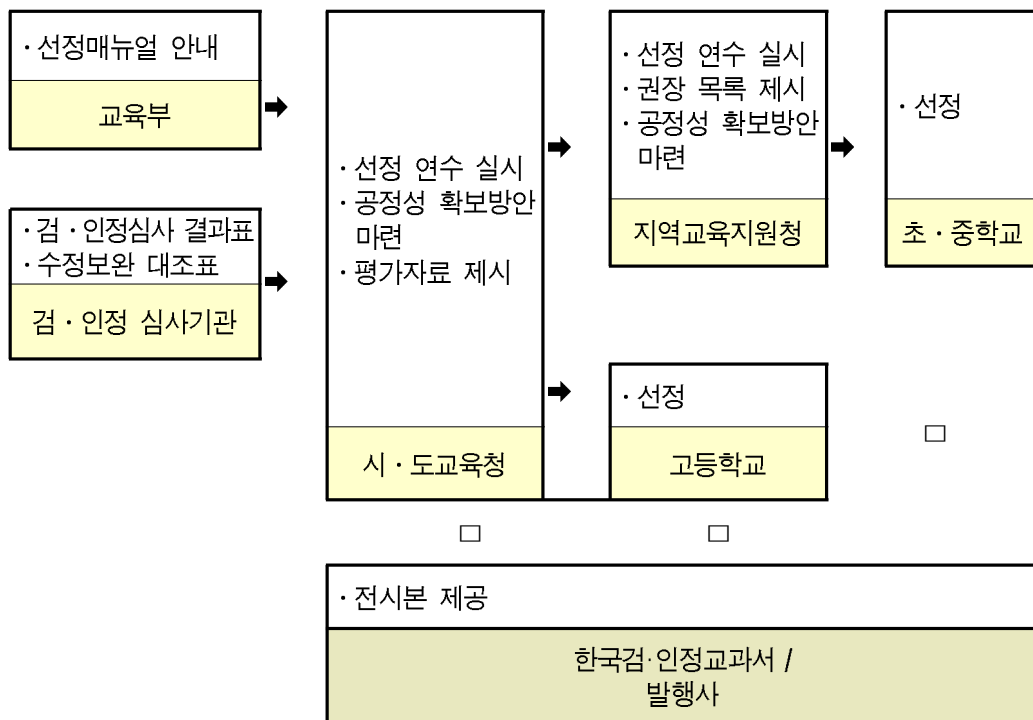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④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 제시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학교별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과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지역 교육 관련자들의 참여를 배려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사용하는 주체인 교원이나 학생의 참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에 명시되고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현재는 2013년 9월에 배포된 매뉴얼이 적용되고 있다. 이 매뉴얼에는 교과서 선정의 의의를 “해당 학교의 특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교사의 교수·학습방법과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수준에 적합하고 학습활동에 용이한 교과서를 선정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교육부, 2013)”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 의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서 선정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I-1] 교과서 선정 절차

(출처: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2013, p. 4에서 수정·보완)

교과서 선정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기본 자료 제공

첫 번째 단계는 학교 현장에 교과서 선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이들 자료에는 교육부의 매뉴얼, 검·인정 심사기관의 심사 결과표 및 수정·보완 대조표, 그리고 전시본 등이 포함된다.

우선 제일 중요한 자료는 전시본이다. 이는 교과서 검·인정 결과가 모두 반영된, 교과서 선정을 위해 학교에 제공되는 교과서이다. 그러므로 선정의 주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은 학교에 서책형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별도로 전시본을 인쇄하는 비용이 교과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의견과 전시본을 따로 인쇄하는 기간 때문에 전시본 제공이 늦어진다는 점에 의거하여 웹 전시³⁾가 추진되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를 서책형으로 배우는데 비해 웹형으로 보면서 선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결국 서책형이 같이 제공되도록 추진되었다. 웹전시를 주최한 곳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웹전시를 중단하였고, 현재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에서 소수 선택 교과목의 교과서(교과서 가격 인상 때문에 전시본까지 서책형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교과서)만을 웹 전시하고 있다.

교육부 매뉴얼에는 교과서 선정의 개요(근거와 개념, 교과서 선정과 절차, 교과서 선정 시 제공되는 자료, 교과서 주문·정산 시스템), 시·도교육청의 역할(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원 연수계획 수립, 고교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시,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 계획 수립),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원 연수 추진, 교과서 선정을 위한 권장목록 제시,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 학교의 역할(공정하고 투명한 교과서 선정과정 준수,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 절차), 전시본 공급, 전시, 선정 및 주문 체계(근거 법령, 전시본 발행 목적, 전시본 제작 및 주문 절차, 교과용도서 주문 및 공급 체계), 부록(교과서 평가기준 항목, 선정기준 평가표, 선정기준 평가 일람표, 추천도서 및 추천의견서, 추천도서 심의 의견서, 서약서, 단위학교 교과서 선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검·인정 심사기관의 심사 결과표는 검·인정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이 담긴 문서이고 수정·보완 대조표는 교과서의 검정과 인정 과정에서 나온 심사위원들의 의견, 검·인정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표기 오류 등을 출판사에 수정·보완 권고한

3)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웹에 교과서 파일을 탑재하고 각 학교에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한 사람만 교과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웹전시를 전체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저작권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음.

사항을 출판사가 이행한 결과물이다. 이들 자료는 각 검·인정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인정도서의 경우 인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매뉴얼에 의하면 (사)한국검인정교과서 홈페이지에도 인정 심사 결과표와 수정·보완 대조표가 탑재되어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

<표 II-1> 검·인정 심사 결과표 및 수정·보완 대조표 탑재 홈페이지

구분	심사기관	홈페이지
검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국사편찬위원회(역사)	http://www.history.go.kr
	한국개발연구원(경제)	http://www.kdi.re.kr
인정	시·도교육청(인정도서)	시·도교육청, http://www.ktbook.com

나.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시·도교육청(고등학교 대상)과 지역교육지원청(초·중학교 대상)은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 과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선정 관련 연수 실시

교육부(2013)의 매뉴얼에 의하면 시·도교육청은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원 대상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교원지원청 초·중등 담당자 및 고등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과서의 적기 선정 및 보급을 위한 일정 안내, 교과서 선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숙지,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오프라인 연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이며,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수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공문을 통한 온라인 연수, 전달 연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보통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을 다시 각 학교로 내려 보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되는, 교과서 선정 관련 연수 자료를 살펴보면 교육부의 매뉴얼과 거의 흡사하다.

2) 교과서 선정 관련 자료 제공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평가자료의 작성은 임의 규정인 것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평가자료 배포 여부가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인력 부족과 시간의 여의치 않음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2013)의 매뉴얼에 의하면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2~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자료나 권장목록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자료나 권장목록 제공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꼭 이행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이러한 교육청의 평가자료가(어차피 소수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3)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공정성 부분이다. 학교의 교수·학습적 상황에 맞는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로비나 압력에 의해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중립성, 자율성 등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청은 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반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교육부(2013)의 매뉴얼에 의하면 시·도교육청 부조리 방지 대책반 구성, 부조리 발생 예방 지도(사전 연수 및 장학활동 등),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조사 및 감사 실시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실제 교육청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학교의 홈페이지에서는 부조리 방지를 위한 안내문이 탑재되어 있으며, 각 학교는 나름의 계획을 세워 내부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2013년도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에 의해 몇몇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결과를 번복한 사례가 나타난 것을 보면 ‘부당한 외부 압력 사례 발생 시,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 시행’ 등과 같은 더욱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매뉴얼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 학교에서의 선정

1) 계획 수립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지원을 실시한 후, 각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매뉴얼, 지침, 안내 등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서울특별시 소재 한 고등학교의 선정 계획 문서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학교별 계획에 의거하여 교과서 선정 관련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4. 세부 내용

가. 1단계 : 교과협의회 추천 <2013.9.24(화)~10.4(금)>

- 각 교과 개인별 평가표 작성(서식1) - 해당 교과 교사 전체 작성
 - 교과 담당 교사들이 검정 및 인정도서의 수준, 특징 및 장·단점 등을 세밀하게 비교·검토 하여 평가표 작성
 - 교사의 개인별 평가표 작성 전, 동일 교과 교사들 간의 사전 의견 조율 금지
 - 당해 교과목 자격소지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당해 교과목자격소지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협의함
- 검·인정 도서 선정기준 평가 일람표(서식 2) 작성 : 위원별 순위 기록
 - 확인자 교과협의회 대표교사
- 3종을 선정하여 추천 검·인정 도서 및 추천의견서(서식 3) 작성
 - 작성자 교과협의회 대표교사, 확인자 교감
 - 개정된 도서가 3종 미만 출시된 경우, 출시된 도서에 한해 의견서 작성.
-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 개인별 검·인정 도서 선정기준 평가표, 평가 일람표,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업무 담당부서에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까지 비공개 보관함

나. 2단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13.10.10(목)>

- 학교운영위원회는 추천된 검정 및 인정도서를 심의한 후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
- 심의 근거(「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인정 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주안점
 - 이해관계 위원(저작자, 발행사·대리점 관계자 등) 배제
 - 주문도서에 대한 차순위를 결정하여 발행사 운영난 등으로 재주문이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 개최하지 않고 차순위 도서로 자동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 교사 대표의 설명 청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추천 검·인정 도서 3종에 대한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에게 추천도서 심의의견서(서식 4) 제출
- 기타 심의 관계서류는 교과별협의회 선정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업무 담당부서에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까지 비공개 보관함

다. 3단계 : 확정

- 학교장은 선정할 검정 및 인정 도서를 최종 확정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선정
-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라. 4단계 : 주문 <2013. 10. 11(금)>

5.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

- 교과서 선정기준 공개 : 2013. 10. 8(화)
- 교과서 선정 절차, 선정 결과 공개 : 2013. 10. 11(금)

2) 교과서 전시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교과서 전시본이다. 교과서 전시본이란 “검·인정 합격도서를 발행사가 각급 학교에 전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검·인정도서”이다. 2013학년도 교과서 선정까지는 서책형의 전시본이 각 학교에 공급되었으나, 선정 일정이나 교과서 가격 등의 문제로 2014학년도 교과서 선정부터는 웹-전시가 추진되었다. 웹-전시라 함은 인증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에서 e-book과 같은 파일 형태로 특수한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교과서를 전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를 통해 추진되었고, 실제 2013년 9월 6일부터 30일까지 <http://text.ktbook.com> 주소에 접속하여 각 학교에 부여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교과서를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웹-전시를 통해 교과서를 보는 것은 힘이 들며, 실제 학생들이 사용할 실물 교과서를 직접 보고 만지며 선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은 검·인정도서 신간본 288책에 한하여 서책형 전시본이 각 학교에 공급되었다. 288책은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인정도서이며, 소수 학교에서 선택하는 교과목의 인정도서들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www.textbook114.com)를 통하여 인증을 받은 학교에 한하여 전시본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로써 전면적인 웹-전시는 2014학년도 교과서 선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된 상황이고, 향후에는 소수 발행 교과서(소수 발행 교과서의 경우 서책형 전시본까지 제공하게 되면 교과서 가격이 높아지게 됨)를 제외한 교과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책형 전시본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전시본의 경우 매년 신간본의 경우만 제공된다. 기간본의 경우는 교육과정이 완료되어 관련 교과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까지 각 학교가 신간본이었을 때 받은 전시본을 보관하는 것이 의무이고, 각 출판사는 기간본의 경우 다시 서책형 전시본을 보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발행사의 운영난 등의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이미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전시본의 문제는 주로 신간본과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3) 교과협의회 개최

교과서 선정 관련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 계획에 따라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교과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교과서 선정 활동은 교과서 검·인정 활동과 차별화되는 활동으로서, 교사들의 실천적인 지식이 발휘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다(김은성·김호정·박재현·남가영, 2013: 396). 학생 수준, 지역 및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과서 선정 기준(예시)을 참고, 학교별 선정기준을 작성, 평가방법 등을 결정하여 해당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 전원이 포함된 교과협의회(3인 이상 권장)를 통해 개인별 평가표(서식 교과서 선정기준표)를 작성하고 이를 합산하는 '선정기준 평가 일람표'를 가지고 3종을 선정 후(순위 정함), 이에 대한 '추천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단계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과정은 교육부(2013)의 매뉴얼에 제시된 과정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 때로는 모든 교과 교사가 개인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교과 부장에게 제출하면 교과 부장이 정리하여 '평가 일람표 및 추천 의견서'를 작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식으로 교과협의회가 간략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대부분의 학교가 준수하고 있는 과정이고, 교과서를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사가 교과서의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사항이 법규에는 명시되지 않고 권장 수준의 매뉴얼에만 언급되어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해당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는 인근 학교(시·군·구)의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을 위촉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많은 학교에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현일·정희정·강래형·김현지·최혜민(2013)의 연구에 의하면 미술과의 경우 각 학교에 미술 교사가 1인일 경우, 주변 학교의 미술 교사를 섭외하기 어려우면 유사교과라 볼 수 있는 체육이나 음악 교사와 협의하여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었다.

한편 교육부의 매뉴얼에 제공되는 교과서 선정기준의 각 항목은 하나의 예시로

서, 각 학교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고⁴⁾, 특히 그 항목을 살펴보면 이미 교과서 심사(의) 과정에서 다 검증된 교육과정과의 부합성, 내용의 중립성과 정확성 등 교과서 심사기준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예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과서의 선정은 이 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과정이 아니라 이 교과서가 해당 학교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임을 학교 교사나 학교장, 운영위원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교과협의회에서 선정한 3종에 대한 순위와 의견서를 적은 ‘추천의견서’를 학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면 위원회에서는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 대표 교사의 설명을 청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의를 한 후,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 ‘심의의견서’에도 역시 3종에 대한 순위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이라고도 저작자, 발행사 관련자, 대리점 관계자 등의 교과서 관련 이해 관계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교육에서의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이 교육(교과) 전문성과 관련되어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안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그 지위가 정해진 학교운영위원회의 교과서 심의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종에 대해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교과협의회에서 3종의 순위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얻는 방향으로 법규나 매뉴얼의 개선이 필요하다.

4) 김은성·김호정·남가영·박재현(2012)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 100개 중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 기준을 검토한 결과, 교육부에서 제시한 매뉴얼의 항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정현일·정희정·강대형·김현지·최혜민(2013)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미술 교사들은 교육부의 교과서 선정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교장 최종 결정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에서 교과서 선정의 주체는 학교장이다. 교과서의 문제를 떠나서 학교의 모든 행정적인 최종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경우도 최종 결정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넘어온 '심의의견서'를 보고 학교장이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심의의견서'의 내용을 존중하여 결정하게 된다.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학교장이 관련 교과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이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는 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 선정 결과 공개

학교장이 교과서를 최종 선정하고 나면 학교의 교과서 업무 담당자는 차년도 사용 예정 교과서의 물량을 파악하여 나이스(NEIS)를 통하여 주문하게 되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과서 선정기준표, 절차,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그러나 교사나 학교운영위원의 개인별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교과서 선정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번 한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해 볼 여지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학교장의 최종 결정 사항까지 공개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 공개시기를 주문 이후로 늦춘다는 등의 조치를 취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타 학교의 교과서 선정 사례가 해당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장 교사의 언급은 참고할 만하다.

3. 선행 연구 분석

가. 교과서 선정제도에 관한 연구

교과서 정책이나 제도 관련 연구는 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한국검인정교과서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교과서 편찬·개발, 검·인정 방법 및 절차, 주문 및 공급, 가격결정 등 교과서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교과서 선정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보고서는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다음 5개 연구 정도가 교과서 선정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각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박도순·홍후조·전효선·김명화(2001)의 '교과서 심의·선정 제도 국제 비교 연구 :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는 다섯 국가의 교과서 심의 및 선정 제도를 문헌분석과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고 15개 비교 준거에 의거하여 비교한 연구이다. 15개 비교 준거 중 교과서 선정과 관련되는 준거는 '누가 교실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는가?', '교과서 선정 결정이 미치는 효력 범위는 얼마나 넓은가?'의 2개이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다양한 집단들을 참여케 하여 선정 과정의 신뢰성을 증진시켜야 하고 각 지역과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독자적인 기준으로 교과서를 선정하고 그 책임도 지도록 하여 책임감 있는 선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결론 내었다. 또한 개방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이는 교과서 선정제도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연수를 교원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도 확대해야 하고 다양한 교재가 학교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줘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나온 다수의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2) 이인제·김창환·이난영·왕미선(2007)의 '일본의 교과서 검정·선정 정책'도 앞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중에 한 꼭지로서 선정 제도를 다룬 것으로 구체적인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의 교과서 검정·선정과 관련한 정책 관련 자료를 번역한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어 일본의 교과서 제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 연구도 일본의 교과서 제도를 번역 및 요약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이나 개선방안 도출은 다루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간섭이나 학부모 단체 등 외부 압력에 의해 교육의 자주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3) 유학영·송규각·윤광원(2009)의 '교과용도서 검정과 선정의 발전 방안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교과서 제도를 대략적으로 분석한 후, 검정 교과서의 현장 수급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비교 분석 결과,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단계별로 심사하여 공정성 담보 및 단위 학교의 부담 경감,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교육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할 여지 확보, 개방과 학부모 참여 등을 통하여 선정의 신뢰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제도화, 교과서 선정 기간의 제도적 보장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고 있다. 의견조

사 중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선정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문항’의 항목으로 ①출판사의 인지도, ②집필자의 명성, ③교육과정 반영의 충실도, ④교과용도서의 디자인과 편집 및 인쇄 상태, ⑤참신한 구성 및 내용 등이 제시되었고, 조사 결과 90% 가까운 응답자가 ③, ④, ⑤ 항목에 응답하고 있어 교과서 선정 시,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법규적 명시화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4) 심재호·권유진·황수영(2010)의 ‘미국의 교과서 검정 및 선정제도 분석’ 연구 역시 교과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중에 한 꼭지로서 선정제도를 다룬 것으로 미국의 텍사스주와 아이오와주를 방문하여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교과서 선정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미국 텍사스주와 아이오와주의 경우 지역교육청이 교과서 선정을 주관한다. 주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속해 있는 학교의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시민 단체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교과서 선정 위원에게 출판사가 로비할 경우를 대비해 처벌 내용을 법규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학교가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교육청에 관련 업무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며, 선정 비리와 관련한 엄격한 별도 규정 마련도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다.

(5) 진재관·조난심·김미영·양정실·이경복(2010)의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는 앞선 연구들과 다르게 전면적으로 교과서 선정 제도만을 다루고 있는 연구이다. 미국, 일본,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전문가협의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내용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단일종의 교과서를 선정하는 방법, 교육청이 선정 권장 목록을 제공하는 방법, 교육청이 교과서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 등과 더불어 발행사의 교과서 홍보 기회 제공,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 교과서 선정 관련 부정행위 방지, 교과서 전문 평가 기관 설립 등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서 선정의 권한을 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제안은 그만큼 학교의 자율성을 위축시킨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발행사의 교과서 홍보 기회 제공의 경우는 발행사의 지나친 홍보로 교육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교과서 전문 평가 기관 설립 관련하여서는 교과서의 편찬·개발부터 심사(의), 감수, 공급에까지의 교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일 기관을 설립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나,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기관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교과서 선정의 과정은 이미 교과서로서 국가로부터 자격을 얻은 교과서를 각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는 것을 고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심사·심의하는 과정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이 교과서 선정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나. 교과서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일본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 교육청 단위의 교과서 선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명백하게 학교 단위의 교과서 선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준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어떤 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검·인정과 같은 심사·심의기준이 아니고 어떤 교과서가 학교의 실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즉 교사나 학생이 활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선정 기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재 교육부의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는 선정기준(안)의 경우 '교육과정 부합성'이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교과서가 검·인정을 거치면서 이미 그 부합 여부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들(김정은, 2014)에서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준과 교과서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심사·심의 기준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각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는 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선정의 주요 주체인 교사에게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김은성·김호정·박재현·남가영, 2013: 372). 이미 심사·심의를 거쳐 교과서로서의 자격을 얻은 교과서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과정인 선정 과정에서는 심사·심의 때와는 다른 기준들을 참고해야만 할 것이다. 선행연구는 국어(김은성·김호정·박재현·남가영, 2013), 수학(유현종·고호경, 2013), 영어(김정렬·이지은, 2009; 박아영, 2011), 도덕(김국현, 2009), 과학(최경희·김숙진, 1996), 제2외국어(김정은, 2014), 기술·가정(권리라·윤인경, 1998; 함승연, 2012), 미술(정현일·정희정·강래형·김현지·최혜민, 2013), 정보(최길수·김영주·이종연, 2010) 등 각 교과목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선정기준의 문제점은 첫째, 선정 기준과 검·인정기준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선정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 셋째, 교과 일반적인 기준이어서 교과별 특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넷째, 선정기준 항목별 중요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다섯

제, 교사의 정체성을 선정기준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표면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다.

특히 김은성·김호정·박재현·남가영(2013)의 연구는 교과서의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하고 있다.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교사의 교과서 선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교육부의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자기주도적 학습가능성, 창의성 등의 추상적인 단위보다는 직관적인 차원에서 목차, 단위, 학습목표, 제재, 학습활동, 설명, 평가, 저자, 출판사, 보조자료, 분량, 디자인, 교수·학습방법, 교과서 체제, 교과서 가격 등의 ‘지각 단위’를 중심으로 선정기준을 재구성해야 함을 제안하며, 그 하위 요소와 준거 등은 교사별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교과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의 통해 도출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표 II-2> 교과서 선정기준 틀 예시(김은성 외(2013)의 연구에서 재구성)

지각 범위	지각 단위	요소	준거	참조영역		
거시적 / 미시적	내적 요소	목차	·	·	학습자 동료교사 교육과정 · · ·	
		단위	단위의 배치	쉬운 단원에서 어려운 단위의 순서로 배치되었는가?		
			단위의 비중	특정 영역에 편중 없이 단위가 배치되었는가?		
			단위의 흐름	목표-제재-활동-평가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가?		
			단위의 성격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학습목표	·	·		
		제재	·	·		
		학습활동	·	·		
		설명	·	·		
		평가	·	·		
	외적 요소	저자	·	·		
		출판사	·	·		
		보조자료	·	·		
	물적 요소	분량	·	·		
		디자인	·	·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과별 기준을 만들기 위한 지침이나 안내를 해줘야 할 것이며, 관련한 교사 대상 연수가 실질적으로 넉넉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외국 사례 분석

가. 일본⁵⁾

1) 개요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거의 유사한 교과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를 학교에서 무조건 사용해야만 하는 규정(학교교육법 제34조)이 있는 것도 동일하다.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영국을 위시로 하는 영연방 국가들 등 교육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국가들이 대부분 교과서를 하나의 교수-학습자료로 생각하고 관련된 자율권을 모두 교사에게 부여하는 경향 속에서(이들 국가들은 교과서와 관련된 법규나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교과서와 관련된 여타의 과정을 국가가 관여하고 있는 일본의 교과서 선정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①문부과학성이 저작 명의를 가진 것, ②문부과학성의 검정을 거친 것, ③고등학교나 중등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 특별 지원 학교 및 특별 지원 학급 등에서 적절한 교과서가 없는 경우 교과서 이외의 도서를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용어를 빌면 국정이 되고, 두 번째는 검정이며, 마지막은 인정이다. 그러나 이 인정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대신 교육청이 그 심사의 권한을 가진 교과서로 변형되어 사용되는 면이 있으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다.

일본의 경우도 검정 교과서의 경우는 1종목 당(학교급, 학년 및 교과목별) 교과서의 종류가 여러 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과정만큼은 우리나라와 다른 면이 있다. 선정 권한이 우리나라처럼 단위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의 경우는 소관 교육위원회에, 국·사립학교

5) 일본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에서 2013년 7월에 발표한 '교과서 제도의 개요' 번역본에 의거하여 기술하였음.

는 교장에게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선정제도가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학교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선정된 교과서의 수요는 시·정·촌 교육위원회와 각 학교장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이를 정리하여 문부과학 대신에게 보고한다. 문부과학 대신은 보고된 교과서의 수요 집계 결과에 따라 각 발행자에게 발행과 공급을 지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경우 교육과정이 개정 될 때마다 교과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때마다 교과서 선정을 다시 하는 반면 일본은 검정의 주기가 4년이어서, 검정 주기에 맞춰 교과서 선정도 다시 이루어진다.

다음 절에서부터 일본의 교과서 선정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선정 관련 법규

우리나라에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검·인정도서 선정 매뉴얼」과 같은 법규나 지침이 있는 것처럼 일본도 관련 내용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제6호, 제48조)」, 「교과서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제7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도서 무상 조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도서 무상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이 그것이다.

<표 II-3> 일본의 교과서 선정제도 관련 법규 목록

<p>「학교교육법」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2&H_NAME=&H_NAME_YOMI=%82%a9&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22HO026&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p>
<p>「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2&H_NAME=&H_NAME_YOMI=%82%b5&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22HO054&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p>
<p>「지방 교육 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2&H_NAME=&H_NAME_YOMI=%82%bf&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31HO162</p>

&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교과서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2&H_NAME=&H_NAME_YOMI=%82%ab&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23HO132&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교과서 발행에 관한 임시 조치법 시행 규칙」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2&H_NAME=&H_NAME_YOMI=%82%ab&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23F03501000015&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도서 무상에 관한 법률」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2&H_NAME=&H_NAME_YOMI=%82%ab&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38HO182&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도서 무상 조치에 관한 법률」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2&H_NAME=&H_NAME_YOMI=%82%ab&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38HO182&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도서 무상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2&H_NAME=&H_NAME_YOMI=%82%ab&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39SE014&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도서 무상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2&H_NAME=&H_NAME_YOMI=%82%ab&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39F03501000002&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 링크를 통하여 법규 원문을 확인해 볼 수 있음

3) 선정의 단위와 권한

앞서 기술했다시피, 일본의 교과서 선정제도는 이원화되어 있다. 교과서 선정 권한이 공립학교의 경우는 그 학교를 설치하는 시·정·촌과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있고 국·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장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공립학교의 경우는 선정 단위가 광역화되어 있고 국·사립학교의 경우는 단위 학교에 그 권한이 있는 것이다. 광역화가 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선정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실제 선정은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수행한다.

4) 선정 시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중학교 등에서는 사용 해당 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도 이에 같음한다.

5) 선정을 위한 자료의 공개

우리나라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일본의 경우 1991년부터 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고 교과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검정을 신청한 도서와 검정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6~7월까지 전국 7개의 공개 장소에서 신청 도서,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 의견서, 검정 의견서, 수정표, 교과서 견본, 심의회의 심의 개요 등이 모두 전시되었다. 관련 자료는 물론 문부과학성의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선정 결과도 공개가 되는데,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 및 선정지구협의회 위원, 전문조사원 명단, 교과서를 선정한 이유, 의사록 등도 선정이 끝난 8월 31일 이후에 모두 공개된다. 우리나라의 이번 한국사 교과서 사건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점이라 사료된다.

일종의 교과서 전시회도 매년 6~7월 진행되는데, 각 도·도·부·현이 학교의 교원과 주민의 교과서 연구를 위해 상설 전시장을 통해서 진행한다.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884개소가 설치되었고 국민들의 교과서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공립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도 비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6) 선정 방법과 과정

선정 방법은 의무교육인 소학교, 중학교, 중등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및 특별 지원 학교의 소·중학부 교과서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무상 조치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정

해져 있지는 않으나 전자에 같음한다.

발행자는 검정을 거친 교과서 중 다음 연도에 발행하고자 하는 교과서를 문부과학 대신에 신고한다. 문부과학 대신은 신고된 교과서를 바탕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를 통해 각 학교 및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송부한다. 발행자는 교과서의 견본(우리나라의 전시본)을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시·정·촌 교육위원회, 국·사립학교장에게 송부한다. 선정 권한은 시·정·촌 교육위원회 및 국·사립학교장에게 있지만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교과서에 대해 조사 및 연구해서 선정권자를 지도, 조언한다. 이 조사 및 연구 과정은 별도의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가)를 구성·설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심의회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학교의 교장, 교원, 교육위원회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교과마다 수 명으로 구성된다. 이 심의회가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선정 관련 자료(특히 선정기준⁸⁾)를 작성, 이를 선정권자에게 송부하여 조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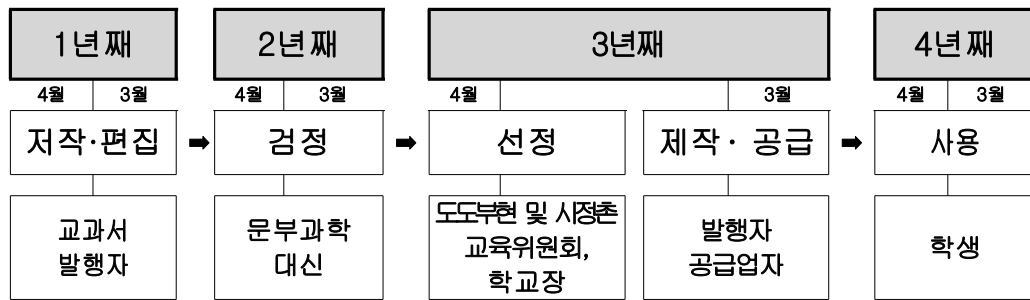
앞서도 언급되었다시피, 공립학교의 경우는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국·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이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몇 개의 시·정·촌이 모여 선정지구를 구성하여 교과서 선정을 진행한다. 즉 몇 개의 시·정·촌 교육위원회로 구성된 '선정지구협의회'가 해당 선정지구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고 같은 선정지구에 포함된 학교들은 모두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선정지구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자연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⁹⁾한다.

- 6)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도서 무상 조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해당 도·도·부·현 내의 의무교육을 하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선정의 적정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을 하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의 연구에 관해 계획하고 실시함과 동시에 시·정·촌의 교육위원회 및 의무교육을 하는 국립, 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선정에 관한 의무에 대해서 적절한 지도, 조언, 지원을 행해야만 한다.
- 7)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도서 무상 조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앞의 조 규정에 의해 지도, 조언, 지원을 행하려고 할 때는 미리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도서 무상 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선정심의회는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 자문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들 사항에 대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건의한다.
 1. 시·정·촌 교육위원회 및 국·사립 등 의무교육을 하는 모든 학교의 교장이 행하는 선정기준의 작성, 선정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그 외의 지도, 조언,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2. 도·도·부·현 및 특별구가 설치하는 의무교육을 하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 선정에 관한 사항
- 8) 교과서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이며, 교과서를 선정함에 있어 참고가 되는 것임(일본 치바현 교육위원회 교과서 선정 관련 자료, 이인제 외 3인(2007)에서 재인용)
- 9)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과용도서 무상 조치에 관한 법률 제12조」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해당 도·도·부·현 구역에 대해서 시 혹은 구의 구역 또는 이들 구역을 합친 지역에 교과용도서 선정지구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정지구는 2013년 기준 585지구이며, 보통 2개의 시 또는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선정지구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별도의 선정지구협의회¹⁰⁾를 설치하고 학교의 교원으로 구성된 조사원을 두어 공동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 대표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7) 재선정·재선정 방법과 과정

우선 일본의 경우 한번 선정한 교과서는 무조건 4년 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다. 즉 검정 주기가 4년이어서 4년에 한번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II-2] 일본의 교과서 선정 절차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교육과정 개정과 관계없이 4년에 한번 교과서 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 과정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4년에 한번 교과서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4년이 안 되어 교과서를 다시 선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¹¹⁾. 예를 들어 현재 초등학교는 2014년에 교과서가 선정되었고,

2.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선정지구를 설정한 후, 그 지구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3.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선정지구를 설정한 후, 그 지구를 변경했을 때는 신속히 이 사실을 고시함과 동시에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 지구 내의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동일한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는 협의체이다. 협의회의 위원은 관계되는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관련인 1인 이상, 그 외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10~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협의회 하위에는 별도의 전문조사원을 둘 수도 있는데, 보통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하는 형태이다.
 11) 일본 교과서 연구 센터(Japan Textbook Research Center)의 센터장 Izumi Matsuda와의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 내용임(2014.7.10./2014.7.14.). 그에 의하면 일본에서 초·중학교의 교과서 선정 주기는 4년이지만, 고등학교의 교과서 선정 주기는 1년임. 즉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교과서를 선정함.

이 선정된 교과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중학교의 경우는 2015년에 새로 교과서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선정된 교과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의무교육용 교과서의 경우는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발행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발행자의 ①자본금 또는 자산액이 1,000만엔 이상, ②전적으로 교과서 편집을 담당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5명 이상, ③도서 출판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자가 있을 것, ④도서의 발행에 있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을 것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검·인정도서 선정 매뉴얼」 22쪽에는 발행사 운영난 등으로 재선정이 필요할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 개최하지 않고 차순위 도서로 자동 확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검정 시에 발행능력까지도 검토하기 때문에 발행사 운영난 등으로 인한 재선정·재선정의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교과서 검정 결과 및 전시본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어 외부 압력으로 인해 교과서를 재선정·재선정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의 교과서 연구 센터(Japan Textbook Research Center)의 센터장 Izumi Matsuda은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에서 (2014.7.10./2014.7.14.) 우리나라와 같은 외부 단체 압력에 의한 교과서 변경 사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더불어 선정과 공급을 위한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도 있는 선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과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립학교의 경우 교과서 선정 단위가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압력에 의한 재선정·재선정 과정은 어려울 것이다.

8) 선정의 공정성 확보

일본은 교과서 선정을 위한 발행사의 홍보 행위 등을 통제하기 위해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과 제19조, 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불공정한 거래 방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5호)」을 통해 타사의 교과서를 비방하거나 선정 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금지 사항을 사단법인인 교과서협회가 「교과서 홍보 행동 기준」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부과학성은 발행사나 선정 관계자들의 다음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다. ①선정 관계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직 관계자를 선정 관련 홍보에 종사시키는 일, ②선정 관계자 방문, ③교사용지도서 등의 작성 및 배포, ④선정기간 동안 교과서 관련 연수 주최, ⑤홍보물 작성 및 배포,

⑥교원용 교과서 견본 및 신청도서 증정, ⑦타사 교과서와의 비교·대조나 타사 교과서의 오류를 통한 홍보 등이 그것이다.

나. 미국

1) 개요

미국의 경우 교육은 연방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주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50개주가 저마다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제도 역시 주별로 천차만별이나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들의 '이익'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주의 교과서 제도에 준하여 교과서를 개발, 인쇄, 발행한다(김재춘, 2012). 따라서 교과서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 교육부가 직접 교과서를 심사하고 목록을 제시하는 '폐쇄형 주'와 타 주의 목록을 활용하여 지역교육청이 교과서를 선정만 하는 '개방형 주'로 나뉘볼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나 텍사스주가 대표적인 전자의 경우고 뉴욕주나 아이오와주가 대표적인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서지영 외 5인, 2011). 인구가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 교과서 인정 목록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하는 수준이다. 물론 이 인정 과정은 우리나라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교과서 선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몇 개의 주를 취사선택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워싱턴주와 텍사스주 및 아이오와주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워싱턴주의 교과서 선정제도¹²⁾

워싱턴주의 경우 주 차원에서 교과서를 선정하지는 않고 그 하위기관인 지역교육청이 교과서를 선정한다. 그러나 주 교육부는 소규모의 지역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 수준의 교과서 선정 지침'을 만들어 제시한다. 이 지침은 지역교육청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따라야 할 지침과 다양한 참조사항을 담은 문서로, 지역교육청은 이들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워싱턴주의 '교과서 선정'은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심사를 거친 교과서 중에서 각 학교의 사정이나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선정하

12) 김재춘(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함. 이 연구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주관하고 교육부가 주최한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의 발표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미국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는 경우인 반면, 워싱턴주의 경우는 각 출판사들이 주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별 필수학습내용’, ‘학년별 기대수준’ 등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발행한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들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검·인정 상황에서의 교과서 선정이라면 워싱턴주의 경우는 이른바 자유발행제 상황에서의 교과서 선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아래서 교과서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서 언급한 문서들과의 ‘일치성’이 되겠다. 따라서 교육부는 여러 출판사가 발행한 교과서들이 얼마나 주 차원의 교육과정과 일치하는지를 분석한 자료인 ‘주 교육부의 교과서 평가 보고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평가 보고서가 각 출판사들이 각자의 교과서를 평가한 ‘자기평가보고서’에 의거하여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 평가 보고서는 ‘학생의 학습 효율성’, ‘평가’, ‘문화적 수용성’, ‘보편적 접근성’의 4개 영역에서, 강하게 일치, 적절하게 일치, 부분적으로 일치, 불일치로 그 평가내용이 표시된다.

지역교육청은 소속 학교들이 사용할 하나의 교과서를 선정한다. 즉 지역교육청에 속한 학교들은 모두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한 하나의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워싱턴주에서 이러한 정책을 운영하는 이유는, 첫째, 모든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교과서 구입과 교사 연수 등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셋째, 학교간 교사들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전입학생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선정 과정은 이러하다. 지역교육청은 교과서 전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교사 중에서 교과서 선정 업무를 보조할 ‘조력자(facilitator)’를 뽑는다. 그리고 이 조력자의 책임 하에 ‘교과서선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위원회에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을 포함시킬 것이 권장된다. 이들을 참여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청의 여유 공간에 교과서를 전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역시도 권장되고 있다. 이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교과서가 관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사용된다.

3) 텍사스주의 교과서 선정제도¹³⁾

텍사스주의 경우 「교과용자료에 관한 주교육법 31조와 시행법 66조」를 통해 교과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주 교육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검정 과정만큼 엄격하게 교과서를 심사하여 목록¹⁴⁾을 만들면, 이를 가지고 각 지

13) 서지영 외 5인(2011) 및 심재호 외 2인(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함.

14) 주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목록은 주 교육과정과의 일치성 여부에 따라 ①일치본, ②부분일치

역교육청에서 선정 과정을 통하여 교과서를 선정한다. 즉 교과서 선정의 주체(단위)가 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인 것이다. 각 지역교육청은 관할 학교의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교과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4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약 4~5번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 교사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교사를 고용하는 등의 행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지역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과서 선정기준에 따라 교과서 선정을 진행하는데, 1~2종 정도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학교에서 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교과서 활용 연수를 받은 교사가 각자 학교에 돌아가서 전달연수를 실시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출판사가 우리나라에 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텍사스주의 경우 출판사들이 지역교육청에 교과서 선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로비가 적발될 경우는 엄정하게 처벌받게 된다.

4) 아이오와주의 교과서 선정제도¹⁵⁾

아이오와주의 경우에도 교과서 선정의 주체는 지역교육청이다. 일반적으로 8년을 주기로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지며, 아이오와주는 미국에서도 인구가 많지 않은 주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과서 심사 과정이 있지는 않고, 캘리포니아주나 텍사스주에서 발표한 심사에 통과한 교과서 목록에서 교과서 선정을 한다. 자세한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교육청의 교과서 선정 담당자와 학교 대표들이 함께 모여 100여 개의 출판사가 전시한 교과서들을 관람하고, 이 중에서 5종 정도를 골라 출판사에 견본을 요청한 후, 이를 가지고 심도 있는 리뷰를 통해 최종 1종을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선정 과정은 보통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작성된 자료를 지역교육청의 교과서 선정 담당자가 요약하고 정리해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앞선 과정은 교사, 교장, 학부모, 지역인사, 교수 등의 20명 정도로 구성된 '교과서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되고, 최종 결정은 교과서 선정 담당자가 하게 된다. 선정 과정에서 활용되는 선정기준은 우리나라의 검·인정기준과 흡사하다. 그 이유는 아이오와주의 경우 별도의 교과서 심사 과정이 없이, 다른 주의 교과서 목록을 가지고 선정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 수준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심사와 비슷한 교과서 선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한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를 선택할 수 없다.

본으로 나누어 있음.

15) 심재호 외 2인(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함.

다.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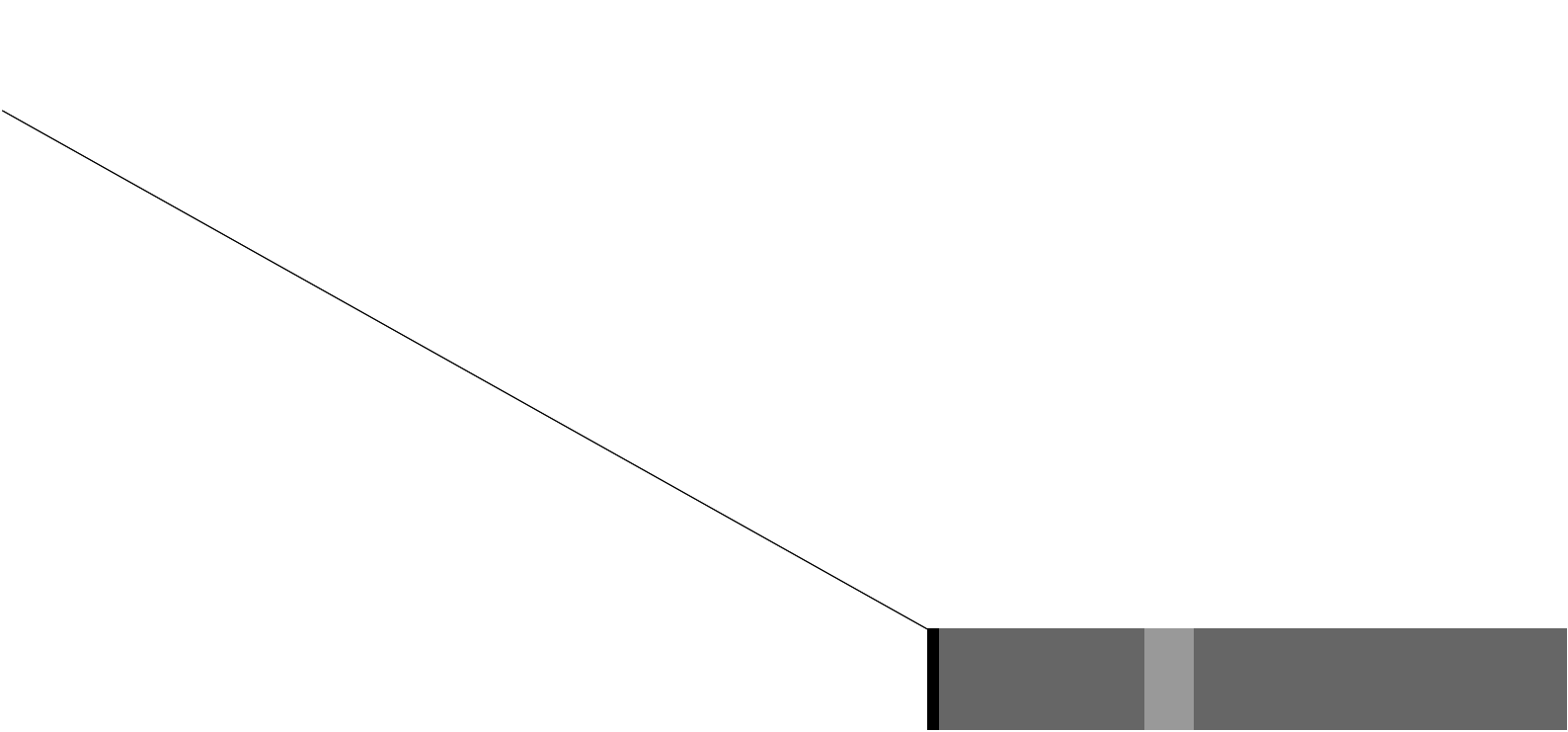
첫째,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의 각 주에서처럼 선정 단위를 광역화하여 교육청 단위로 교과서 선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학교나 교사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는 더욱 선진화된 교과서 선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학교별 특성에 따라 선정 단위를 광역화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교과목별 교사가 1인 이하인 경우는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단위로 교과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 선정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선정주기를 명시하여 선정 기간을 확보하고 교과서를 수시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교과서 선정주기가 정해져 있다. 이 주기에 따라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정 기간이 촉박함으로 인한 선정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없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교과서를 수시로 변경 가능하지도 않다.

셋째,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과서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수용할 만하다.

넷째, 교과서를 공개적으로 전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 모두 교과서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교과서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꼭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누구나 교과서를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과서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도 높다.

다섯째, 4년~8년 주기 검정을 통해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선정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바 있다.



Ⅲ.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방법과 결과

1. 델파이 조사의 개요
2. 델파이 조사의 과정
3. 델파이 조사의 결과

Ⅲ.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방법과 결과

교과서 선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 설문 조사와는 달리 델파이 설문 조사는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고 3차에 걸친 조사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심도 있고 질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델파이 조사의 개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먼저 그 첫 단계의 기초 자료로서 우리나라 교과서 선정제도와 관련된 연구물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었다.

델파이 조사를 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제도와 관련이 있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구원, 교사, 출판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교과서 선정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 공동 설명회,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 등으로 구성된 델파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3차에 걸쳐 수행하였고, 델파이 설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이끌어내도록 시도하였다. 1차 조사는 개방형으로 작성하였고, 2차 설문지는 1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내용을 구조화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작성하였다. 3차 설문지는 중앙치와 사분점간 범위를 산출하여 설문지에 표기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2차와 3차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2차에 비해 3차의 표준편차가 줄어들면 긍정적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최종 개선안을 도출할 때에는 표준편차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평균이 가장 높거나 상위에 있는 안을 선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델파이 조사에서는 델파이 전문가들이 응답한 결과의 추이를 분석하였으므로 델파이 전문가들의 집단별 변량분석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단 간의 의견 차이를 연구의 개선안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통합적으로 의견 개선안의 도출에 활용하였다. 대체적으로 개선안으로 선정한 평균은 5점 만점에 4점 이상인 것을 우선 선정하였고, 차선으로 3.5 이상인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선안의 대상으로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개선안을 선정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두었다.

2. 델파이 조사의 과정

가. 1차 델파이 조사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안하기 위하여 교과서 제도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방식의 하나인 델파이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델파이 형태는 표준 델파이(standard Delphi)라고 할 수 있는 지필형을 선택하였다. 조사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걸쳐 수행되었으며,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하였다. 먼저 전문가들에게 조사에 응해줄 것을 허락 받고, 시·도교육청 담당자, 출판사 관계자, 교과서 집필자, 심의자, 교과서 연구자, 교사 등 40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이 중 3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약 90%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표 III-1> 설문지 발송 및 회수율

구분	발송	회수	회수율(%)
시·도교육청	10	8	80.0
출판사	10	10	100.0
교사	10	10	100.0
연구자	10	8	80.0
계	40	36	90.0

1차 델파이 설문지는 개방형을 취하였다. 주요 설문 항목의 내용은 교과서 선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과서 선정제도와 관련한 법규 측면,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 역할 측면, 교과서 평가 자료의 제공 측면, 교과서 선정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의 측면, 교과서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 측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측면, 학교장의 최종 선정 측면이다.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의 개선 측면, 교과서 선정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의 측면, 교과서 선정 과정 또는 절차의 측면, 교과서 선정 후 변경의 측면(다른 교과서를 쓰고 싶을 때),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 부여의 측면, 교과서 평가 전문 기구 신설의 측면이다.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선정하여 교육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선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문하였다. 1차 델파이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의 1차 델파이 설문지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항목
교과서 선정제도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제도와 관련한 법규 측면 ○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 역할 측면 ○ 교과서 평가 자료의 제공 측면 ○ 교과서 선정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의 측면 ○ 교과서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 측면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측면 ○ 학교장의 최종 선정 측면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의 개선 측면 ○ 교과서 선정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의 측면 ○ 교과서 선정 과정 또는 절차의 측면 ○ 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 부여의 측면 ○ 교과서 평가 전문 기구 신설의 측면 ○ 교과서 선정 후 변경의 측면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선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1차 델파이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선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 선정제도와 관련한 법규 측면에서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선정 관련 준거자료가 매우 부족함.
- 선정제도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지침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
- 홍보물 및 자료가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행위로 규정해야 함.
- 소규모 학교에서는 3~4개교가 연합으로 함께 선정하는 규정이 필요함.
-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교사의 역할이 미미함.

(2)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 역할 측면에서

- 선정을 위한 매뉴얼 안내, 연수 실시, 일정이 촉박하고 연수 자체의 어려움이 있음.

- 출판업체의 홍보를 차단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임.
- 개괄적인 계획만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심도 있는 교과서 선정을 제한하고 있음.
- 담합이나 유착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역할이 필요함.
- 교과서 부조리 발생시 감사과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도교육청에서 특정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경우 학교 자율권 침해 요소가 있음.
-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과서 선정은 교육청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교과서 개발 전, 개발과정, 개발 후 평가, 학교 전시의 과정에서 개발자와 학교의 의견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3) 교과서 평가 자료의 제공 측면에서

- 전시본이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하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자료 작성에 일정과 기간이 너무 촉박한 실정임.
- 평가 자료 제작 시 선정 기준과 심사 기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교과서 평가 자료는 80점~90점, 90점~100점으로 그 점수 범위가 크게 잡혀 있어서, 의미가 없음.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자료를 만드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고,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도서에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평가자료를 만들지 않고 있음.
- 현재는 홍보의 차단과 함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자료가 선정과정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음.
- 학습자료(교사용 지도서, 학습용 CD, e-book 등)가 전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가 없음.
- 과목별 15종 이상의 많은 교과서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데 시간과 인력의 어려움이 있음.
- 교과서 심사 시 구성된 심의위원 등이 자료를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제공하였으면 함.
- 시·도교육청 내 교과서 운용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배치와 전문 인력의 훈련이 요구됨.
- 특정인들에 의한 교과서 평가 자료 제공은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음.

- 현재 제공되는 평가 자료가 검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과서 내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등 자료 제공이 부족함.

(4) 교과서 선정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의 측면에서

- 과목별 교사가 1인인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과서를 1차로 선정할 수 있는 동교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선정·선정 단위가 교육청 등으로 올라가면 지역별 획일화 등의 문제점이 더 클 것임.
- 소규모 학교의 경우 유사교과 교사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음.
-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학교 교사의 시간 확보가 어려워 거의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실정임.

(5) 교과서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 측면에서

- 교과용도서 선정 기간이 짧고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형식적임.
-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좋은 교과서의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함.
- 교과용도서 선정을 위한 연수가 없음.
- 교과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가 많음.
- 교사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음.
- 교과서 선정 시, 교과서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뒤 출판사의 인지도, 저자의 약력 등을 보고 정한 다음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실정임.
- 교과서 선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6)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측면에서

- 학교운영위원들의 교과용도서 선정에 관한 기준 등 전문성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절차임.
- 심사영역의 적합성, 선정절차에서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사전 자문 기능이 없음.
- 교과서 선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못함.
- 교과서 선정 교사의 설명이 없음.

(7) 학교장의 최종 선정 측면에서

- 학교장의 최종 선정 측면은 무척 형식적임.
-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학교장이 그 결과를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 학운위의 심의와 다를 경우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음.

둘째,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1)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의 개선 측면에서

- 검·인정도서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선정 기준 제공을 강화해야 함.
- 선정 관련 부조리 발생 시 징계, 검·인정 취소 등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함.
- 현재의 매뉴얼과 절차를 유연하고 간소하게 정비해야 함.
- 교과서 선정을 위한 충분한 절차와 일정, 시간적 여건이 법규로 규정해야 함.
- 소규모 학교에서 인근 학교 동교과 교사들과 연합하여 5인 이상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함.
- 시·도교육청에서 교과서 선정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 교과서에 대한 안내 자료를 출판사별로 제공 받아 일선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규 개선이 필요함.
- 교사의 역할을 명시해야 함.

(2) 교과서 선정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의 측면에

- 학교 단위로 학생의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당해 교과목 교사가 3인이 안될 경우 교감, 관련 유사 교과 담당 교사도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함.
- 교육청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교과서 무상 제공시, 교과서 선정권을 지역청에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규모 학교의 경우 유사교과 교사들끼리 협의하도록 함.

(3) 교과서 선정 과정 또는 절차의 측면에서

- 선정 기간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함.
-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과 평가 자료 제공이 필요함.
- 교과서 선정과정 절차를 간편화해야 함.
- 심의 위원회 구성 시 학생 대표도 위원에 참여시켜야 함.
- 교과서 전시본의 경우, 출판사명을 삭제해야 함.
- 학운위에서 교사들이 선정한 책 중에서 다수결로 선정해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교과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위한 자료를 학교 측에서 준비해야 함.
-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권역의 상황과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를 2-3권 정도 정하고, 최종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해야 함.
- 교과서 주문기간을 단축(6개월 전에서 5개월로)하여 교과서 선정을 위한 심사기간을 확보해야 함.
- 교과서 선정·선정 시기를 조정하여 매년 12월에 변경 주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4) 교과서 선정 후 변경의 측면에서(다른 교과서를 쓰고 싶을 때)

- 처음 선정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해야 함.
- 변경 필요 없이 그냥 교사가 다른 교과서를 참고하면 됨.
- 학교장의 결재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해야 함(현재 규정은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
- 차기년도의 신입생에 대해서는 선정 선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수시 변경 허용해야 함.
- 교과서 변경 사유 발생 시 선정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도 차순위 교과서를 사용하면 됨.

(5) 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

- 객관성, 공정성 측면에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개최는 하지 않음.
-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설명회를 교과별로 실시해야 함.
- 일방적인 광고가 아니라 현장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해야 함.
- 설명회 참여의 대상, 시기, 횟수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필요할 경우만 기회 부여하면 될 것임.

(6) 교과서 평가 전문 기구 신설의 측면에서

- 심사·감수 전담 또는 개발지원을 위한 전문기구의 신설 또는 업무위탁이 필요함.
- 평가 전문 기구에서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제공해야 함.
-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저해할 염려가 있음(평가자료의 중립성, 신뢰성을 확보).
- 전문 기구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선정만을 담당하는 기구라면 시·도교육청에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강화하면 될 것임.

셋째,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교과서 선정에 관한 전문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
- 주문과 공급시기를 실제 학기 운영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심사시 출원 도서수 제한(심사, 추천) 등 자율적인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과서 선정에 관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좋은 교과서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사전 연수 및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함.
- 교과서 선정·선정에 학생들의 참여도 허용하는 방안 검토되어야 함.
- 현행 교과서 소유제를 교과서 대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교과서 활용도가 낮은 교과목(체육, 미술 등)은 과감하게 학생용 교과서를 없애고, 교사용 워크북(교사용 워크북에서 학생용 지도자료 추출하여 수업에 활용)을 다양하게 개발 보급하여야 함.

나. 2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설문지는 1차에 응답한 전문가 36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회수한 결과 36명이 응답하여 100%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2차 델파이 설문지에서는 각각의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내용의 구성은 <표 III-3>과 같다. 즉,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 개선안, 교과서 선정 단위에 대한 개선안,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안, 교과서 선정 후 변경에 대한 개선안, 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 부여에 대한 개선안,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등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

지의 구안은 1차 델파이 설문지를 분석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유목화한 결과이다.

<표 III-3>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의 2차 델파이 설문지의 구성 내용

구분	설문 내용
1.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간은 늘리고 주문시기는 늦추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 교과서 선정 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명시 ○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명시 ○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관련 교과목의 교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 ○ 교육감은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외부 압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과정을 지원 ○ 기존 도서의 1/2 이상을 고치는 '개편'을 국정만이 아니라 검·인정 도서에도 적용하는 규정 ○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규정 ○ 교과서 구입비용을 학교 예산회계로 할당 편성하여, 선정 시 총액 내에서 가격을 보고 선정토록 하는 규정
2.교과서 선정 단위에 대한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같이 개별 학교 단위에서 선정 ○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교과서를 선정 ○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교과서 선정을 광역화 ○ 교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학교들은 자발적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교과서를 선정 ○ 시·도교육감이 관내 학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체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개별학교'로 다원화
3.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 ○ 전시본 제공 시, 지도서 및 학습용 CD 등도 같이 제공 ○ 출판사의 인지도에 따라 교과서 선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시본에서 출판사명 삭제 ○ 교사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전시본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과서 선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만 파악 ○ 지역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과서를 2~3권 선정하고, 학교에서는 선정된 교과서

구분	설문 내용
	중에서 최종 선정 ○ 학교는 교과서 선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4.교과서 선정 후 변경에 대한 개선안	○ 교과서 변경 시, 선정 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 선정한 교과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선정 변경 절차를 강화하여,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교사·학생·학부모 의견 청취 ○ 변경 가능한 사유를 ‘선정 과정의 하자나 불법행위 및 발행사의 공급 문제 발생’ 정도로 제한하여, 학교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변경은 못하도록 함
5.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 부여에 대하여	○ 발행사의 경쟁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필요 없음 (객관성·공정성 훼손, 교과서 가격 인상 요인, 광고와 다를 바 없음 등)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설명회를 교과별로 제공 ○ 지역별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공동 설명회 개최 ○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발행사가 지원하는 현장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의 설명회 개최 ○ 발행사가 자유롭게 설명회 개최 ○ 공동 설명회 대신에 교과서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 설명 자료를 출판사에서 제공
6.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에 대하여	○ 현행 교과서 소유제를 대여제로 전환 ○ 교과서를 복수 선정하여 수업에서 교루 사용 ○ 교과서 활용도가 낮은 교과는 학생용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 또는 교사용 워크북(교사가 별도의 학생용 자료 만들어 배포)으로 대체 ○ 교과서 주문과 공급의 유통경로를 ‘학교-발행사’로만 일원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발행사의 책무성 강화

2차 델파이 설문지를 통계분석 한 결과, 각 설문지 항목별 중앙치(Md)와 사분점간의 범위를 산출하였다. 중앙치는 각 델파이 위원들이 응답한 중앙값이며, 사분위는 델파이 위원들이 응답한 값의 최저점에서 25%에 위치한 수치와 75%에 해당하는 수치까지의 거리(범위)를 말한다.

<표 III-4> 델파이 2차 조사 설문지 결과 분석

구분	중앙값	사분위값		평균	표준편차
		하위 25%	상위 75%		
문항 1-1	4.00	3.25	5.00	3.96	1.04
문항 1-2	4.50	4.00	5.00	4.29	0.81
문항 1-3	3.00	2.00	3.00	2.82	0.91
문항 1-4	4.00	3.00	4.00	3.68	1.06
문항 1-5	5.00	4.00	5.00	4.57	0.69
문항 1-6	4.00	4.00	5.00	4.29	0.76
문항 1-7	4.00	3.00	5.00	3.69	1.19
문항 1-8	4.00	4.00	5.00	4.04	1.11
문항 1-9	3.00	2.00	4.00	2.89	1.34
문항 2-1	5.00	4.00	5.00	4.26	1.06
문항 2-2	2.00	2.00	4.00	2.67	1.30
문항 2-3	2.00	1.00	3.00	2.00	1.00
문항 2-4	4.00	4.00	5.00	4.12	0.91
문항 2-5	3.00	2.00	4.00	2.89	1.37
문항 3-1	4.00	3.00	4.25	3.65	1.02
문항 3-2	4.00	4.00	5.00	4.07	1.15
문항 3-3	3.00	2.00	5.00	3.36	1.31
문항 3-4	4.00	4.00	5.00	4.11	1.05
문항 3-5	3.00	2.00	4.00	2.93	1.15
문항 3-6	4.00	3.00	5.00	3.89	0.97
문항 3-7	2.00	2.00	4.00	2.67	1.14
문항 3-8	3.00	2.00	3.00	2.41	0.93
문항 4-1	4.00	4.00	5.00	4.21	0.69
문항 4-2	4.00	3.00	4.00	3.41	1.25
문항 4-3	4.00	2.00	5.00	3.32	1.49
문항 4-4	4.00	2.25	4.75	3.46	1.37
문항 5-1	3.00	3.00	4.00	3.32	1.02
문항 5-2	3.00	2.00	4.00	2.79	1.07
문항 5-3	3.00	2.00	4.00	3.04	1.20
문항 5-4	3.00	2.00	4.00	3.04	1.20
문항 5-5	2.00	1.00	2.00	2.00	0.96
문항 5-6	3.00	2.00	4.00	3.30	1.17
문항 6-1	2.00	2.00	3.00	2.54	1.07
문항 6-2	2.00	2.00	4.00	2.63	1.18
문항 6-3	4.00	2.25	5.00	3.64	1.37
문항 6-4	4.00	3.00	5.00	3.61	1.26

다. 3차 델파이 조사

3차 설문지는 2차 델파이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에게만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회수율은 100%로 나타났다. 이 설문지는 2차의 설문지를 되풀이하였으나 2차 때의 응답 결과를 중앙치와 사분점간의 범위를 산출하여 제시해 주었다. 즉, 각각의 설문지 항목에 중앙치는 Md로, 사분점간의 범위는 []로, 해당 응답자의 응답은 x로 표시하고 다시 응답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였다. 이 때 대다수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인의 응답이 사분점간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대다수의 의견과 달리하는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였다. 3차 델파이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 개선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델파이 조사에서 나온 결과 자료의 분석은 2차와 3차의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지 각 항목에 관한 조사 참여자의 합의는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델파이 조사 방법을 적용한 목적 중의 하나는 토론 참여자들의 응답이 회를 거듭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견 수렴에 대한 분석은 제2차와 제3차의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의 분산비로 측정하였다. 토론 참여자간의 합의 정도를 각 영역의 범주별로 알아보았으며, 평균이 4.0 기준으로 개선안 중에서 표준편차가 3회에 줄어든 것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5>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 개선안에 대한 분석 결과

구 분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간은 늘리고 주문시기는 늦추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96	1.04	4.00	0.94
(2) 교과서 선정 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명시한다.	4.29	0.81	4.40	0.74
(3)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명시한다.	2.82	0.91	2.73	0.96
(4)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학교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3.68	1.06	3.90	0.89

구 분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5)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관련 교과목의 교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한다.	4.57	0.69	4.73	0.55
(6) 교육감은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외부 압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과정을 지원한다.	4.29	0.76	3.95	0.78
(7) 기존 도서의 1/2 이상을 고치는 '개편'을 국정만이 아니라 감인정 도서에도 적용하는 규정을 둔다.	3.69	1.19	3.90	1.05
(8) 감·인정 교과서의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규정을 둔다.	4.04	1.11	3.90	1.12
(9) 교과서 구입비용을 학교 예산회계로 할당 편성하여, 선정 시 총액 내에서 가격을 보고 선정토록 하는 규정을 둔다.	2.89	1.34	3.03	1.35

※ 주) 3차 델파이 응답의 표준편차 중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이 2차 대비 긍정적인 합의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서의 선정과 관련된 법규의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정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지지를 받는 개선안 4가지가 제시되었다. 즉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관련 교과목의 교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는 안이 가장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며, 높은 동의를 나타내었다. 두 번째로는 '교과서 선정 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명시'하는 안, 세 번째로는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간은 늘리고 주문시기는 늦추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안에 높은 동의와 합의를 나타냈다.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안은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었으나 최근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 사태에 따른 획기적인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서 변경 시에 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일부 교사들의 주도하에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사들의 의견을 통해 민주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서 선정 시에 교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엄정한 절차를 시행하도록 하는 장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교과서 선정·선정 단위 개선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교과서의 선정과 선정 단위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5가지를 전문가들에게 델파이 조사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교과서의 선정은 ‘현재와 같이 개별 학교 단위에서 선정한다.’는 안에 높은 동의와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서의 선정 단위를 넓혀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에 반대하고 현재와 같이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학교 단위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6> ‘교과서 선정 단위’ 개선안에 대한 분석 결과

구 분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현재와 같이 개별 학교 단위에서 선정 한다.	4.26	1.06	4.33	1.00
(2)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 지원청별로 교과서를 선정·선정한다.	2.67	1.30	2.48	1.15
(3)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교과서 선정·선정을 광역화한다.	2.00	1.00	1.68	0.73
(4) 교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학교들은 자발적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교과서를 선정한다.	4.12	0.91	4.08	0.97
(5) 시·도교육감이 관내 학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체를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개별학교’로 다원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89	1.37	3.00	1.17

※ 주) 3차 델파이 응답의 표준편차 중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이 2차 대비 긍정적인 합의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3) 교과서 선정·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안의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교과서의 선정과 선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8가지 항목에 걸쳐 전문가들에게 델파이 조사한 결과, 두 가지 안에 대해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교사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특정 장소에서 전시본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개선안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의 합의를 하였다.

<표 III-7>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 개선안에 대한 분석 결과

구 분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3.65	1.02	3.88	1.85
(2) 전시본 제공 시, 지도서 및 학습용 CD 등도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4.07	1.15	4.33	1.04
(3) 출판사의 인지도에 따라 교과서 선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시본에서 출판사명을 삭제한다.	3.36	1.31	3.45	1.19
(4) 교사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특정 장소에서 전시본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11	1.05	4.30	0.79
(5) 교과서 선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2.93	1.15	2.85	1.22
(6)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만 파악한다.	3.89	0.97	3.99	1.06
(7) 지역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과서를 2~3권 선정하고, 학교에서는 선정된 교과서 중에서 최종 선정한다.	2.67	1.14	2.50	1.13
(8) 학교는 교과서 선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2.41	0.93	2.45	1.01

※ 주) 3차 델파이 응답의 표준편차 중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이 2차 대비 긍정적인 합의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와 같이 짧은 시간에 많은 종수의 교과서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이 무리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시본 제공 시, 지도서 및 학습용 CD 등도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에도 동의와 합의를 하였는데, 현재는 교과서와 지도서만이 전시의 대상이었으나, 전문가들은 교수·학습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도 제공하여 교과서 선정과 선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4) '교과서 선정 후 변경에 대한 개선안'의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교과서 선정 후에 교과서를 변경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3가지

를 델파이 조사한 결과, ‘교과서 변경 시, 선정 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는 안에 가장 높은 동의와 합의를 이루었다. 그 다음으로는 ‘선정한 교과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선정 변경 절차를 강화하여,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게 한다.’는 안이었다.

<표 III-8> ‘교과서 선정 후 변경’ 개선안에 대한 분석 결과

구 분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교과서 변경 시, 선정 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4.21	0.69	4.23	0.59
(2) 선정한 교과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선정 변경 절차를 강화하여,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게 한다.	3.41	1.25	3.99	1.00
(3) 변경 가능한 사유를 ‘선정 과정의 하자나 불법행위 및 발행사의 공급 문제 발생’ 정도로 제한하여, 학교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변경은 못하도록 한다.	3.32	1.49	3.27	1.38

※ 주) 3차 델파이 응답의 표준편차 중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이 2차 대비 긍정적인 합의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이 교과서를 새롭게 변경할 수는 있으나 엄격한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선정되고 선정되어야 하며, 교과서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학생들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5) 교과서 선정·선정 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 부여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교과서의 선정과 선정 과정에 발행사가 공동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안에 대해서는 6가지 개선안 중에서 한 가지만 합의를 이루었다. 즉, 어느 정도 상당한 동의와 합의를 나타낸 것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설명회를 교과별로 제공한다.’는 안이다.

<표 III-9> '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설명회 기회 부여' 개선안에 대한 분석 결과

구 분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발행사의 경쟁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필요 없다(객관성·공정성 훼손, 교과서 가격 인상 요인, 광고와 다를 바 없음 등).	3.46	1.37	3.55	1.30
(2)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설명회를 교과별로 제공한다.	3.32	1.02	3.84	0.97
(3) 지역별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공동 설명회를 부여한다.	2.79	1.07	2.88	0.99
(4)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발행사가 지원하는 현장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의 설명회를 제공한다.	3.04	1.20	3.05	0.95
(5) 발행사가 자유롭게 설명회를 개최한다.	2.00	0.96	2.05	0.93
(6) 공동 설명회 대신에 교과서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 설명 자료를 출판사에서 제공한다.	3.30	1.17	3.30	0.96

※ 주) 3차 델파이 응답의 표준편차 중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이 2차 대비 긍정적인 합의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발행사의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여 동의와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와 통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설명회를 부여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개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6)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교과서의 선정과 선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4가지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교과서 주문과 공급의 유통경로를 학교 - 발행사로만 일원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발행사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안에 대해 상당한 동의와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는 교과서 주문과 공급에 (사)한국검인정교과서가 개입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학교에 전산망(나이스, NEIS)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교과서의 주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개별 발행사들이 택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공급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10>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의 분석 결과

구 분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현행 교과서 소유제를 대여제로 전환해야 한다.	2.54	1.07	2.33	0.92
(2) 교과서를 복수 선정하여 수업에서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63	1.18	2.75	1.15
(3) 교과서 활용도가 낮은 교과는 학생용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 또는 교사용 워크북(교사가 별도의 학생용 자료 만들어 배포)으로 대체한다.	3.64	1.37	3.50	1.26
(4) 교과서 주문과 공급의 유통경로를 '학교-발행사'로만 일원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발행사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3.61	1.26	4.08	0.88

※ 주) 3차 델파이 응답의 표준편차 중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이 2차 대비 긍정적인 합의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3.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결과

교과서 선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델파이 전문가 36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설문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의 개선안으로는,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에는 관련 교과목의 교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교과서 선정 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간은 늘리고 주문 시기는 늦추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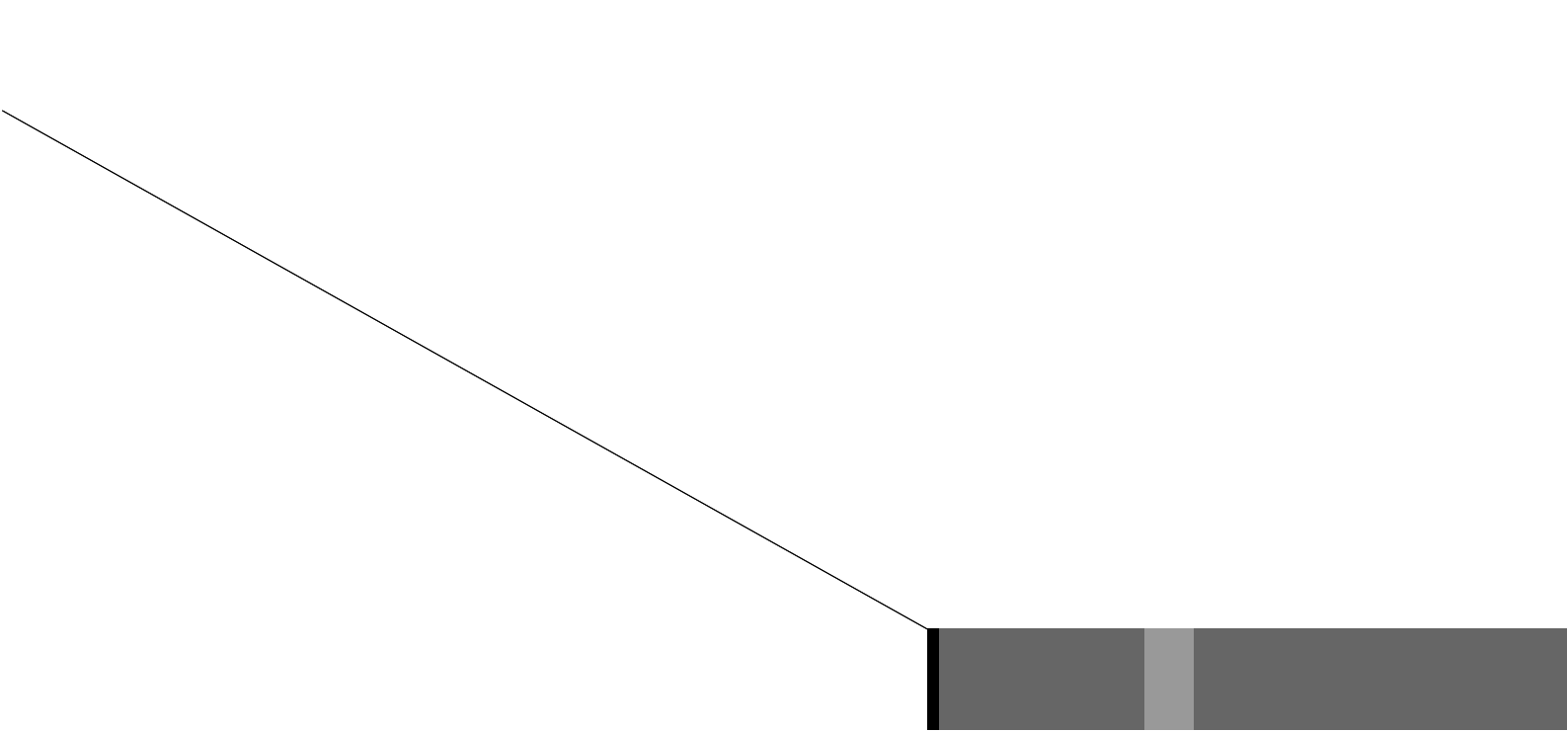
둘째, 교과서 선정 단위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개별 학교 단위에서 선정'하는 방법을 유지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 즉 교과별 교사가 1인 이하의 경우에는 선정 단위를 광역화하거나 유사 교과 협의회가 가능하도록 제안한다.

셋째,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교사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특정 장소에서 전시본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시본 제공 시, 지도서 및 학습용 CD 등도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넷째, 교과서 선정 후 변경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교과서 사용 중에 교육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학년의 교과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 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다만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주문 후에 바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제안한다.

다섯째, 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 부여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설명회를 교과별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주문과 공급의 유통경로를 학교 - 발행사로만 일원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발행사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IV.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 방안

1.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의 개선 방안
2.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지침)의 개선 방안

IV.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 방안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선 방안

◆ 쟁점 - 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중 ‘교사 참여의 근거 부재, 선정 교과서의 변경 조건 부재, 도서 주문 시기 비현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대안은 무엇인가?

가. 교사 참여 근거 법제화 방안

교과서 선정 주체는 당연히 교과서를 직접 사용할 수요자인 교사와 학생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학교장과 그 의제를 심의하는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생의 보호자인 부모도 선정 과정에 동참해야 하는 공동 주체이다. 따라서 교과서 선정의 교육적·사회적 의의가 중요한 만큼, 그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기대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한다.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은 단순히 정해진 절차를 거치는 일반 행정 차원의 일이 아니다. 교도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선정의 타당성을 입증해 내어야 하는 일이 교과서 선정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해당 과목의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 담당하는 전공 교사가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여 교사 참여의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동 규정에 교사 참여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 현행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 개정(안) 예시 1. ⇨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인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 개정(안) 예시 2. ⇨ ③학교장은 검·인정도서를 선정할 때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이 두 가지 안은 형식만 다를 뿐, 실제적 내용은 동일하므로 어느 방안이든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법규에 교사 참여를 명문화해 놓아야 현실적으로 교사의 자율권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과정이 강화될 것이다.

나. 선정 도서의 변경 조건 보완 방안

학교의 장이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와 매뉴얼에 따라 '교과협의회의 도서 추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결정'의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였다면, 그 결과는 합법성을 갖기 때문에 확정된다. 그러므로 그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번복되거나 선정된 교과서를 주문하기 전에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학교가 외부의 간섭에 따라 선정 도서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현행 규정에는 도서 선정에 대한 번복이나 교과서 주문 전 변경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고,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에서도 "선정한 교과서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학교는 교과서 선정과 동일한 단계별(추천, 심의, 확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보강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거나 학교 여건의 변화로 다음 학년도에 쓰일 교과서를 선정하는 문제는 새로운 검·인정 교과서의 선정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당해 연도의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번복이나 교과서 주문 전 변경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교사 의견 수렴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정' 과정을 준수하되, 심의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점이 된다. 즉 심의의 의결 정족수를 평상과 같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따르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출석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이나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찬성' 등으로 강화할 것인가를 적극적 관점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정족수 사례를 헌법에서 보면, 제53조에서 법률안 재의결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 상황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재논의하는 경우이다. 다만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그 요건을 좀 더 강화한 것이다.

◆ 헌법 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학교가 일단 선정한 도서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경은 할 수 있지만 비합리적인 상황에는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 오히려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해 놓아서, 반복의 빌미를 만들어 놓은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긴 하다. 또한 교육적인 이유로(예를 들어 기존에 사용하던 교과서의 30% 이상이 수정·보완됨에 따라 변경하거나, 교원 수급 상황으로 인해 학교의 소속 교사가 바뀔에 따라 원활한 교수-학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과서를 변경하거나 하는 사례) 변경하려 할 경우, 이러한 근거 규정은 변경에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차년도에 사용할 교과서를 바꾸고자 할 경우조차, 기존의 교과서 선정 과정을 되밟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용 중인 교과서를 바꾸는 문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과서 변경은 외부 압력에 의한 결정의 반복과 교육적 차원에 의한 재선정으로 나뉘볼 수 있고, 핵심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법규상에서 구분하여 기술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부 기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학교의 전문성, 자율성, 자주성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검·인정 교과서 체제의 근간이 자율적인 교과서 선정 절차의 보장에 있는 만큼 학교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해 검·인정 교과서 선정을 함부로 반복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교과서 선정에 관한 결정의 반복을 신중하게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서 선정에 대한 반복이나 교과서 주문 전 변경을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교과협의회가 선정 추천한 도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에게 제출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사가 결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도서 선정을 반복하거나 교과서 주문 전의 변경에 대해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및 제63조제3항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사립은 자문)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조항과도 부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내용은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규정 신설안 예시 1. ⇨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인정도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규정 신설안 예시 2. ⇨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인정도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위의 예시 1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예컨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가 10명이라면 재적위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6명 출석에 4명(3분의 2에 해당)이 찬성하면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도서 주문 시기의 현실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1학기용 교과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2학기용 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4개월 전에 주문하도록 되어 있다.

◆ 제30조(주문)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8.]

그런데 교과용도서의 선정이 학교 실정에 맞는 선정 기준의 결정 과정과 그에 기초한 전시본 검토 및 평가 결과를 도출해 내기까지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교과협의회의 추천에서부터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특히 선택 과목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선정을 해야 하는 대상 교과목의 수도 많아서 교과서 주문 일정에 맞추려면 선정이 줄속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선정 기간을 충분히 늘려주어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정 기간을 늘리게 되면 교과서 발행사에서 제때 교과서 공급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교과서 주문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인쇄된 문서로 주고받던 예전에 비해 간편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NEIS 등 컴퓨터 네트워크)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인쇄 기술로 인해 4개월 정도의 기간이라면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¹⁶⁾.

또한 교과용도서의 발행자와 더불어 대리인이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발행자-대리인-학교'라는 유통 구조로 인한 교과서 유통 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교과용도서 주문 시한이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4개월로 줄이는 한편, 대리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중간 유통 비용의 절감을 통한 교과서 가격 인상 요인 억제 효과도 있을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문 기한을 별도로 정하는 단서 조항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 개정안 예시 ⇨ [제30조]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매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2.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지침)의 개선 방안

◆ 쟁점 -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의 '교사 참여 방법과 선정 기준'은 실제적 가치가 있으며, 그 과정의 효율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보증할 수 있는가?
 ◆ 쟁점 - 학교 현장에서의 교과용도서 선정 과정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가. 추천 과정에서의 순위 결정 문제

검·인정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는 과정 중 교과협의회의 추천 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당해 교과목의 모든 교사가 전시되는 모든 교과서를 보고 평가(정성, 정량)하여 그 결과를 교과 부장에게 제출하고, 교과 부장은

16) 학교에서의 도서 선정기간을 늘여주기 위해 매학기에 사용될 도서 주문기간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일원화하고 단축하자는 데 대해 주요 교과서 발행사 대표 혹은 중역들을 면담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기간분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신간본을 생산·공급할 경우에는 학교와 발행사, (사)한국검인정교과서 간의 협조 체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교육부,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부에서도 수정·보완 사항 승인을 제때에 해주어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4개월 전 주문' 규정을 준수하면서 주문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반품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고, 발행사들은 생산 일정을 준수하면서 인쇄 공정상의 사고나 내용 및 편집상의 하자 발생 등에 특별히 유념해야 하며, '(사)한국검인정교과서'에서는 주문 집계·통보, 납본 확인 및 취합·정리, 배부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사용 학기 시작 전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통계표를 작성하여 1, 2, 3 순위를 매겨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과정보다 앞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추천 과정에서 반드시 정량 평가로 1, 2, 3 순위를 매기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교과협의회는 법리상 법적인 지위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인 심의기구이며, 학교장은 법에 명시된 학교 행정의 주체이므로 교과협의회에서 굳이 1, 2, 3 순위를 매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가 타당하다면 교과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평가표는 무순위로 3종을 추천하되 각각에 대한 정성 평가 결과가 학교운영위원회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교과목 전문성을 심분 발휘하여 교과서별 특징과 장·단점, 교수-학습 시 활용성 등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기술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교과서별 상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실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교사 참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교사의 설명이 청취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된다.

물론 전문성 있는 교과협의회의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의 부담을 오히려 줄여줄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순위가 없더라도 의견 서술을 통해서 1, 2, 3 순위가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의 법적 권한을 감안한다면 법리상으로 타당한 무순위 3종 추천이 교과협의회역의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공정성 측면에서도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대표 위원들이 종합적 검토와 판단으로 교과서 선정에 심의해야 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즉 검정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교과 교수·연구자·교사 등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정심의회가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한 교과서를 단위 학교의 교과 담당 교사가 다시 한 번 교수 내용학적 측면에서 검토·추천하고, 지역대표와 학부모대표, 교사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 내용에 학교와 지역의 실정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순위를 정함으로써 교과 내용적 측면과 학교 내·외부적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과협의회에서 3종의 교과서를 무순위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교과서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와 함께 각 교과서의 수준, 특징과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한 정성적 평가결과를 나타낸 추천의견서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교과서 선정 평가와 이에 따르는 교사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학교장 결정 과정의 문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교원 위원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심의 결과가 교과협의회의 의견과 다른 경우 전문가로서의 교사 의견이 비전문가 집단의 간섭으로 뒤집어졌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협의회의 의견과 다른 결과가 잘 나오지도 않고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반발이나 이의 제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학교장의 최종 결정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대개 학교장의 경우는 교과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등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전문성 있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과협의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과협의회와 다른 결정을 할 경우에는, ①명백한 근거, 또는 ②학부모 대상 수요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결정을 바꿀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학부모 중 교과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소규모 학교에서의 교사 참여 방법의 문제

교과목별 교사의 수가 많지 않은 학교에서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과정에 교사가 참여하는 방법은 검·인정도서 선정 매뉴얼(교육부, 2013)에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학교에서 당해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동일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학교의 당해 교과목 자격소지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며, 교원자격을 소지한 기간제 교원이나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강사를 3인에 포함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물론 매뉴얼은 법규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이나 단위 학교가 법과 동등하게 준용하고 있다.

우선 ‘교과목 자격 소지자 3인’ 조건에서 3인이라는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지, 문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추 해석해 보아야 한다. 매뉴얼 연구진은 다수

교과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정해야 하므로 교사 1인이 선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을 신뢰받기 어렵기 때문에, 변증법적인 논리를 차용하여 최소 3인 정도는 되어야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지도 모른다. 그 배경이 어떤 것이든, 최소 3인 이상의 교사가 선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은 의미 있는 것이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목 자격 소지 교사가 3인 미만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과 '인근 학교의 당해 교사 위촉의 현실성 여부'에 있다. 지역이나 교과목에 따라서는 1인 교사 과목이 늘어날 수 있는데도 이 3인 조건은 선정의 실제적 이익도 없으면서 행정 절차만 번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위촉된 교사가 얼마나 자주적으로 그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교과서를 평가할 것이며, 또 당해 학교 교사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 교사 2인의 평가에 따라 교과서가 선정된다면 학교 단위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사 3인 조건은 당해학교 동일 교과군·교과영역 내 자격 소지 교원 3인 이상의 협의를 권장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그 조건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인접 학교 교사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별 의미도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매뉴얼 <대안> 예시 1. 학교에서 당해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당해학교 3인 이상의 동일 교과군 또는 동일 교과영역 내 자격 소지 교원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관할 학교 소속 교사 3~5인 정도를 교과서 선정위원으로 위촉하여 교과서 선정 위원회를 운영해도 좋을 것이다. 이 위원회에 교과서를 사용할 교사가 무조건 포함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관해서는 선정단위를 광역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안 2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참조할 때 소규모 학교를 위하여 도서 선정 단위를 교육청 수준으로 다원화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에 소규모 학교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 매뉴얼 <대안> 예시 2. 시·도교육감은 소규모 학교의 교과서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고등학교 대상)이나 교육지원청(초·중학교 대상)이 관내 학교 교사 대표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도서를 학교에 권고할 수 있다.

◆ 규정 개정안 예시 ⇨ [제3조] ④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나 교과별 교사가 1인 이하인 학교의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라. 도서 선정기준의 개선 방안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교육부, 2013)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 절차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각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수준에 적합한 검·인정도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기준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들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과서 선정기준 항목으로부터 각급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항목을 추출하여 학교단위의 선정기준표를 새롭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 교과서 선정기준 항목이 이미 교과서 검·인정을 받을 당시의 교과서 검·인정기준과 동일하여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그러한 평가 항목에서 이미 일정 수준을 만족하는 교과서임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미 나열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교과서들을 놓고 적절한 선정기준을 추출하여 교과서 간의 우열을 가리라는 모순된 지침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정 매뉴얼에서 표준 선정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 것은, 학교의 여건 및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직접 선정기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선정기준 항목별 점수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배려인 점은 이해할 수 있다. 참고하라는 교과서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던 교과서를 심사하려면 학교별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거나 교과서 선정기준의 일부를 다르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는 교사의 수업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교수-학습 자료가 얼마나 많이 제공되느냐가 교과서 선정 기준으로 크게 작용하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기준으로 기록에 남게 되면 출판사 간의 경쟁 구도에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선정 기준의 항목으로 넣을 수도 없다. 따라서 선정 기준 항목을 추출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활용할 것만으로 구체화한 예시를 제시하거나 아예 권장 선정 기준을 교과목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선정기준이 현재보다는 명료해야 교사의 추천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 장의 논의 과정에서 제시한 현장 사례(p. 30)가 좋은 예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교과서 선정기

준' 중에서 학교별로 관점이나 비중을 달리하여 참고할 수 있는 항목·기준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 '예시' 자료로 제시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 예시를 전범(典範)으로 여기는 속성이 있으므로 교육부, 교육청, 교과연구회 등에서는 학교급별, 교과별로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를 모아 실용적인 자료집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선정 결과의 공개

검·인정 교과용도서를 선정하고 나서 교과서 선정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학교별 교과서 선정 업무 추진 시기의 차이에 따라 때로는 다른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교과서를 주문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외부 압력에 의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학교급별로 교과서 선정 과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출판사의 영향력이 미칠 수도 있으므로 교사들의 책무성을 위해서도 교과서 선정 결과의 공개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교과서를 주문하기 전까지 부당한 외부 압력에 의한 결정 번복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고 인근 학교 선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교과서 선정 결과는 공개하되, 교과서 주문이 완료된 후로 공개시기를 늦추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선정 결과의 공개 시기를 늦추는 것은 교과서 선정을 완료하지 못한 다른 학교에 선정 결과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선정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교과서 선정 주문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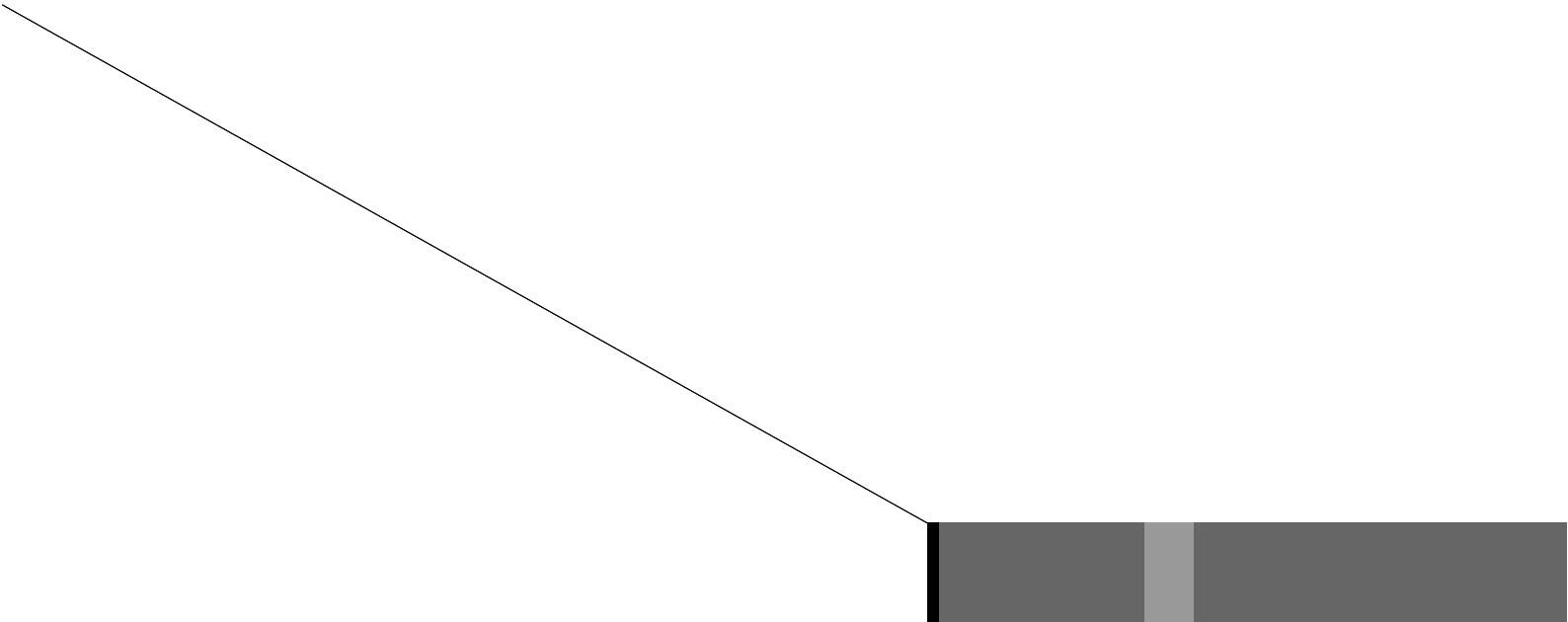
◆ 매뉴얼 <대안> 예시. 선정 결과 공개 시기: 외부의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선정기준은 최종 선정 전에, 선정 절차별 결과는 최종 선정 후에 학교 자율적으로 공개한다. 단, 학교장의 최종 선정 결과는 주문 완료 후에 공개한다.

바.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대응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방법을 구안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는 교육청 단위에서 대응해야만 한다. 즉,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발생하였을 시, 학교는 곧바로 교육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곧바로 현장 조사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매뉴얼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 매뉴얼 <대안> 예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 교과서에 대해 부당한 외부 압력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부조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한다. 해당 교육청은 학교 현장 조사 후, 외부압력 행태 및 경중에 따라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근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후속조치는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V. 요약 및 정책 제언

V. 요약 및 정책 제언

이 연구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탐색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I 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 방법, 한계점 등을 언급하였다. II 장에서는 국내의 교과서 선정제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과서 선정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일본과 미국의 사례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상으로는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을 확인하였다. 실제 검·인정 심사가 끝나는 시점이 8월 말인데, 2학기의 경우 주문 기한을 학기 시작 6개월로 한 점, 실제 교과서 선정의 주요한 역할을 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교사 참여에 대한 부분이 법규에서 누락된 점, 교과목별 교사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점, 외부 압력에 의한 교과서 변경에 대한 대응 방법 부족 등이 그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교과서 선정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교과목별 교과협의회를 열어 충분한 논의를 하기에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의 선정 관련 교과 전문성이 없는 점,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학교가 대응할 방법이 없는 점, 학교별 선정 결과 공개가 외부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와 일본 및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선정 단위를 광역화하여 교육청 단위로 교과서 선정을 진행하는 방법, 교과서 선정주기를 명시하여 교과서를 수시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법,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 교과서를 공개적으로 전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우리나라 교과서 선정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III 장에서는 델파이 조사의 개요와 과정, 결과를 기술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제도와 관련이 있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연구원, 교사, 출판사 담당자들을 조사 대상 전문가로 위촉하여 교과서 선정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공동 설명회,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 등으로 구성된 델파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3차에 걸쳐 조사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이끌어내었다. 1차 조사는 개방형으로 작성하였고, 2차 설문지는 1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내용을 구조화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작성하였다. 3차 설문지는 중앙치와 사분점간 범위를 산출하고 설문지에 표기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2차와 3차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2차에 비해 3차의 표준편차가 줄어들면 긍정적인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최종 개선안을 도출할 때에는 표

준편차가 줄어들면서 동시에 평균이 가장 높거나 상위에 있는 안을 선택하였다.

텔파이 조사 전문가 36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설문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의 개선안으로는,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때에는 관련 교과목의 교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교과서 선정 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명시하도록 하며',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간은 늘리고 주문 시기는 늦추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교과서 선정 단위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개별 학교 단위에서 선정'하는 방법을 유지하되 소규모 학교, 즉 교과별 교사가 1인 이하의 경우에는 선정 단위를 광역화하거나 유사 교과협의회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교사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특정 장소에서 전시본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본 제공 시, 지도서 및 학습용 CD 등도 함께 제공'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교과서 선정 후 변경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교과서 사용 중에 교육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학년의 교과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 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고,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주문 후에 바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 부여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설명회를 교과별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교과서 주문과 공급의 유통경로를 학교 - 발행사로만 일원화하여, 유통 비용을 줄이고 발행사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IV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텔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 협의회의 결과를 토대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과 「검·인정도서 선정 매뉴얼」 등의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과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단기·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편안을 제언한다. 단기안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고 장기안은 충분한 연구와 준비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다. 교과서 선정제도는 그 핵심 가치인 '선정의 타당성, 공정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안

첫째, 교과서 선정의 타당성 및 안정성을 위한 단기 과제로 '교과서 선정 기간의 확보를 위하여 주문 완료 시기를 현행의 학기 시작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늦추는' 규정을 명문화한다.

- 인쇄, 발행, 공급의 전 과정을 1개월 내에도 모두 마칠 수 있을 정도로 인쇄 기술이 발달한 만큼, 학교 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문 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1학기의 경우 학기 시작 '6개월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학기과 같이 '4개월 전'으로 늦추고, 더욱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보통 선정 기간 확보의 문제는 교육과정이 새로 개정되어 교과서가 새롭게 검·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전시본' 제공 시점을 규정이나 매뉴얼에 명시하여 학교가 선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교과서 선정의 타당성을 위한 단기 과제로 '선정 과정의 교사 참여'를 규정에 명문화하고, 매뉴얼에서는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조건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제시한다.

- 선정 과정의 타당성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단기 과제로, 규정 제3조 제2항의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을 "검·인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소속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로 수정하여, 교사 참여를 법적으로 명문화한다.
- 규정에는 학교장이 교과용도서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그 설치가 명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게 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법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매뉴얼에서는 "교과협의회에서 순위를 정하여 3종 추천"을 "교과협의회 무순위 3종 추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종에 대한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 통보, 학교장의 최종 결정"으로 개정하도록 한다. 다만, 교과서 사용의 주요 주체인 교사의 법률적인 역할 보장이 이루어지면서도 실제적인 역할에는 변함이 없도록, 추천의견서를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교과협의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때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교과서 선정의 타당성을 위한 단기 과제로 '교과 교사 1인 이하인 학교의 경우 1인만 있어도 추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나 '유사 교과 교사 3인 이상의 협의를 통하여 추천 가능하다'는 내용을 선정 매뉴얼에 명시한다.

- 매뉴얼의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 절차' 중 세부 계획에서 제시한 "학교에서 당해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당해 교과목 자격소지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조건을 완화하여 선정의 효율성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완화 방법은 3인 조건 자체를 삭제하여 교사 1인 이상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사 교과 교사 3인 이상의 협의를 통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교과서 선정의 안정성을 위한 단기 과제로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 교과서 변경은 외부 압력에 의한 결정의 반복과 교육적 차원에 의한 재선정으로 나뉘볼 수 있고, 핵심은 전자의 경우에 대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법규상에서 구분하여 기술하는 게 쉽지 않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외부 기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학교의 전문성, 자율성, 자주성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검·인정 교과서 체제의 근간이 자율적인 교과서 선정 절차의 보장에 있는 만큼 학교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해 검·인정 교과서 선정을 함부로 반복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교과서 선정에 관한 결정의 반복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성립하게 된다.

다섯째, 교과서 선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선정 결과를 주문 완료 전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선정 매뉴얼에 명시한다.

- 그 이유는 '선정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다른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일 가능성이 있고, 선정 결과에 대한 사회적 외압에 따라 변경하게 되면 주문과 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학교의 자율적인 도서 선정의 타당성과 진행 과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게 된다. 특히 다른 학교의 선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매뉴얼에 적시된 다음 유의사항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일부 교과별 교사 모임 등에서 인터넷이나 기타 수단을 통하여 출판사별 교과서 내용 분석표 등을 인터넷상에 올려 특정 검·인정도서를 간접 홍보함으로써 검·인정도서 선정의 공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처리됨”

- 이와 같이 A교가 선정한 도서 목록을 공개하면, 이웃의 B, C, D교도 그 정보를 바로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자율적 판단을 하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로 공개한다는 부분도 도서 선정을 특별 안전으로 인정한다면 비공개나 늦은 공개가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 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라도 교과서 선정 안전에 대한 부분만을 늦게 공개한다고 하여, 교사나 학생 또는 사회 일반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를 공개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주문을 완료한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행정일 것이다.

여섯째,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는 교육청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선정 매뉴얼에 명시한다.

- 주문 이후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방법을 구안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이는 교육청 단위에서 대응해야만 한다. 즉,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발생하였을 시, 학교는 곧바로 교육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곧바로 현장 조사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장기안

첫째, 교과서 선정의 타당성 및 안정성을 위한 장기 과제로 교과서 선정 기간의 확보를 위하여 '교과서 선정 주기'를 규정에 명문화한다.

- 일본의 경우 의무교육기에는 교과서 선정 주기가 4년이어서 한번 선정한 교과서는 4년 동안 사용해야 한다. 이는 교과서 선정 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외부의 압력에 의한 교과서 변경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교육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바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교과서 변경으로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오히려 외부의 압력에 의해 학교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자주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책적으로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선정의 타당성을 위한 장기 과제로 '교과 교사 1인 이하인 학교의 경우 교육청 단위에서 교과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한다'는 것을 규정이나 매뉴얼에 명시한다. 나아가 지역별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 학교에 당해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이 1인 이하인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별도의 '교과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선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과제로 도서 선정 주체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이다.
- 현행 '학교장의 선정 결정'을 '시·도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이 복수로 선정한 도서 중에서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도록 선정 단위의 광역화를 제안한다. 단위 광역화를 하면, 미국 텍사스주와 일본 사례와 같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그 지역의 교사 대표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서 선정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교과서를 비교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지역 내 최고

전문성을 가진 다수 교사가 참여함으로써 선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다만 현행 학교 단위를 광역화하는 데에는 단위학교 교사들이 자율성을 근거로 반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교육의 실제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참여나 의견 수렴 과정을 대규모의 전시회, 공동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진행한다.

-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확대하거나 심도 있게 고려한다. 이에 대한 장점은 무엇보다 교과서 내용과 수준을 공론화하면서 특정 단체의 입김이 교과서 선정 과정에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견 수렴 과정은 전국적인 공개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 단위로 상설 전시회나 출판사가 함께하는 공동 설명회 등을 열어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넷째, 학교급별·교과목별 교과서 선정기준(안)을 개발한다.

- 이 연구는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방안을 폭넓은 관점에서 제안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안)을 별도로 만들어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제안을 하자면, 학교별로 교과협의회를 개최하여 선정기준표를 만들기에는 전문성이나 시간적 여유 등의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선정기준(안)이 일률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과목별 특성이나 학교급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선정'의 교육적 의미를 담아내야 하므로 별도의 정책 연구를 통해서 학교급별·교과목별 선정기준(안)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전국적으로 창의적·실천적 사례를 수합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를 심도 있게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과서 전문기구를 신설(지정)한다.

- 기본적으로 교과서 선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들 중에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의미와 기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이 왜 개정되었는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교과서 선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없으면 교과서 선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행정적으로 귀찮은 절차로만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심도 있는 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학교별로 일부 교사가 대표가 되어 연수를 받고 형식적인 전달 연수를 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 더구나 연수 자체가 행정적인 절차로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더욱 의미가 없다. 따라서 심도 있는 연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실시하는 체계적인 연수를 방학 기간 등을 통하여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 교육청 단위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구 신설·지정을 제안한다.

이상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교과서를 선정하는 시기마다 전국의 각 지역에서 학교 규모별로 표본 학교를 선정하여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의 제도 혁신 방안을 계속 탐색하기를 제안한다. 타당하고 공정한 교과서 선정을 통해 질 높은 교과서를 공급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학교와 정부의 선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교과서 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3).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 권리라·윤인경(1998). 중학교 가정 교과서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 학회지*, 10(1), pp. 41-57.
- 김국현(2009). 도덕과 교과서 선정 평가기준 연구, *윤리교육연구*, 18, pp. 23-46.
- 김만근·팽주만·김풍환·김진영·정학준·이림(2013). *인정도서 업무 편람* 교육부·시·도 교육청인정도서협의회·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김은성·김호정·박재현·남가영(2013). 사용자 중심의 국어과 교과서 선정기준 개발 방향 연구, *국어교육연구*, 31, pp. 371-400.
- 김은성·김호정·남가영·박재현(2012).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 선정기준 설정 실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5(3), pp. 1-28.
- 김재춘(2012). 미국의 교과서 인정제 동향 :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를 중심으로, *2012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자료집*, p. 16-61.
- 김정렬·이지은(2009). 중학교 영어교과서 현장 선정기준 개발 연구, *영어교육*, 64(2), pp. 3-27.
- 김정은(2014). 중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 *중국학연구*, 67, pp. 187-210.
- 박도순·홍후조·전효선·김명화(2001). *교과서 심의·선정 제도 국제 비교 연구: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박아영(2011).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영어 교과서 선정 방안 연구, *영어교육연구*, 40, pp. 9-30.
- 서지영·김정호·김덕근·권유진·장근주·김정효(2011). *교과서 정책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심재호·권유진·황수영(2010). *미국의 교과서 검정 및 선정제도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유학영·송규각·윤광원(2009). *교과용도서 검정과 선정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유현종·고호경(2013). 수학 교과서 선정기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과학교육 연구지*, 37(2), pp. 245-260.

- 이인제·김창환·이난영·왕미선(2007). **일본의 교과서 검정·선정 정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현일·정희정·강래형·김현지·최혜민(2013). 중학교 미술교사들의 교과서 선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7(1), pp. 177-204.
- 진재관·조난심·김미영·양정실·이경복(2010).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검정교과서.
- 진재관·서지영·김국현·이난영·조아라(2007). **교과용도서 평가 연구(I) -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진재관·주형미·김국현·이난영·함경림·조아라(2008). **교과용도서 평가 연구(II) - 평가모형 개발 및 평가기준 설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진재관·주형미·진의남·함경림·박현정·이난영(2009). **교과용도서 평가 연구(III) - 교과용도서 평가 도구 개발 및 적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경희·김숙진(1996). 과학 교과서 선정과 평가에 관련된 교사들의 인식조사와 과학 교과서 평가틀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6(3), pp. 303-313.
- 최길수·김영주·이종연(2010). 중학교 정보 교과서의 선택 기준 개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3(5), pp. 1-13.
- 함승연(2012). 기술·가정 인정 교과서 선정 준거 개발, *실과교육연구*, 18(3), pp. 81-101.
- 한국검정교과서(2007). **일본 교과서 제도의 개요**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부 록

- [부록 1]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 대조표
- [부록 2]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개정(안) 신·구 대조표
- [부록 3] 델파이 조사 1차 설문지
- [부록 4] 델파이 조사 2차 설문지
- [부록 5] 델파이 조사 3차 설문지
- [부록 6] 델파이 조사 1차 설문지 서술형 의견
- [부록 7] 델파이 조사 2차 설문지 서술형 의견
- [부록 8] 델파이 조사 3차 설문지 서술형 의견

부록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생략)</p> <p>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u>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u>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신설)</p> <p>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u>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u>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p> <p>④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p> <p>(신설)</p> <p>제30조(주문)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u>주문하여야 한다.</u></p>	<p>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현행과 같음)</p> <p>②-----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p> <p>③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④-----검정도서 및 인정도서-----</p> <p>⑤-----나 교과별 교사가 1인 이하인 학교의 경우는-----</p> <p>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의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p> <p>제30조(주문) -----1학기 및 2학기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각 해당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주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6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주문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1단계 (추천)</td> <td>동일 교과 전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선정 후,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2단계 (심의)</td> <td>학교운영위원회는 추천된 감·인정도서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을 심의한 후, 그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3단계 (확정)</td> <td>학교장은 선정할 감·인정도서를 최종 확정</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4단계 (주문)</td> <td>최종 확정된 감·인정도서를 나이스(NEIS)를 통해 주문함</td> </tr> </table>	1단계 (추천)	동일 교과 전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선정 후,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2단계 (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추천된 감·인정도서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을 심의한 후, 그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	3단계 (확정)	학교장은 선정할 감·인정도서를 최종 확정	4단계 (주문)	최종 확정된 감·인정도서를 나이스(NEIS)를 통해 주문함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1단계 (추천)</td> <td>동일 교과 전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선정 후,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2단계 (심의)</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3단계 (확정)</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4단계 (주문)</td> <td>(현행과 같음)</td> </tr> </table>	1단계 (추천)	동일 교과 전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선정 후,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2단계 (심의)	(현행과 같음)	3단계 (확정)	(현행과 같음)	4단계 (주문)	(현행과 같음)				
1단계 (추천)	동일 교과 전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선정 후,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2단계 (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추천된 감·인정도서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을 심의한 후, 그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																					
3단계 (확정)	학교장은 선정할 감·인정도서를 최종 확정																					
4단계 (주문)	최종 확정된 감·인정도서를 나이스(NEIS)를 통해 주문함																					
1단계 (추천)	동일 교과 전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선정 후,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2단계 (심의)	(현행과 같음)																					
3단계 (확정)	(현행과 같음)																					
4단계 (주문)	(현행과 같음)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 학교의 교과서 선정 (p. 22)	<p>아) 학교에서 당해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동일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학교의 당해 교과목 자격소지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을 권장</p> <p>* 교원자격 소지한 기간제 교원,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강사도 3인에 포함 가능</p>	<p>아) -----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당해학교 3인 이상의 동일 교과군 또는 동일 교과영역 내 자격 소지 ----- ----- ----- -----</p>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 (p. 25)	<p>○ 공개 시기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외부의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을 최종 선정 전 공개하고 선정절차 및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 후 공개함</p>	<p>○ 공개 시기 : ----- -----, 외부의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선정 기준은 최종 선정 전에, 선정절차별 결과는 최종 선정 후에 학교 자율적으로 공개함. 단, 학교장 최종 선정 결과는 주문 완료 후 공개함</p>																				
선정기준 항목 예시 (p. 29)	<p>- 감·인정기준과 거의 같음</p> <p>- 교과서 '평가기준'이란 용어 사용</p>	<p>- 감·인정기준과 중복되는 항목 삭제 및 수정 필요(별첨)</p> <p>- 교과서 '선정기준'이란 용어로 교체</p>																				
교과협의회 추천 감·인정도서 및 추천 의견서 (서식3) (p. 33)	<p>[서식3]</p> <p>· '순위'란 있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 <th>출판사명</th> <th>추천의견</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순위	출판사명	추천의견										<p>[서식3]</p> <p>· '순위'란 삭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출판사명</th> <th>추천의견</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r> </tbody> </table>	출판사명	추천의견						
순위	출판사명	추천의견																				
출판사명	추천의견																					

(별첨) 교과서 선정기준(안)

※ 이 안을 참고로 하되, 교과서 검·인정기준 중에서 학교의 실제적, 주체적 검토가 필요한 기준·항목을 선택하여 보완하고,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기준·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평가기준	평가항목
1. 학습 분량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분량이 단원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 학습 분량이 주어진 전체 수업시수에 적절한가?
2. 내용 수준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학년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과 개념을 다루고 있는가? ◦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가?
3. 학습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나 소재를 다루고 있는가? ◦ 학습 요소(학습목표, 도입, 본문, 정리, 그림 및 도표, 참고 자료 등)가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학습의 내용 구성(본문, 활동 및 문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 학습자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가?
4. 시각 자료의 체계성 및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자료는 학습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도록 배치하고 있는가? ◦ 시각 자료가 너무 복잡하지 않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는가? ◦ 시각 자료의 요소(캡션, 글, 색, 삽화, 도형 등)들이 명료하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5. 자기 주도적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및 관련 활동(인터넷 사이트, 멀티미디어, 정보 습득, 도서 읽기 등)들이 다양하게 안내되어 있는가? ◦ 학생 수준별로 학습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가? ◦ 학습 단계별(도입, 전개, 정리) 안내 및 지시사항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6.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혹은 소그룹 활동, 미디어 활용 등의 다양한 학습활동 및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가? ◦ 학습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학습활동(토의, 토론, 실험, 실습 등)을 제시하고 있는가?
7. 교수·학습 활동의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는가? ◦ 학습 주제에 적절하며, 실현 가능한 학습활동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8. 학습 참고 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내의 참고자료(부록, 색인, 용어해설, 찾아보기 등)는 충분하고 유용한가? ◦ 교과서 외의 참고자료(교사용지도서, 워크북, CD자료 등)는 충분하고 유용한가? ◦ 학습내용에 적절한 소프트웨어, 교육 매체 등의 구현 및 활용이 편리한가?
9. 다양한 평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단계에 맞는 평가 방법(진단, 형성, 총괄 평가 등)을 안내하고 있는가? ◦ 다양한 평가유형(선택형, 서답형, 수행평가 등)을 안내하고 있는가?
10. 종합적 사고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지식의 측정만이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하고 있는가? ◦ 학생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안내하고 있는가?

부록 3. 델파이 조사 1차 설문지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1차)

안녕하십니까?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기초연구이며, 차기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밝힐 선정제도의 개선 내용은 다양한 외국의 사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교과서 선정제도와 관련되는 전문가 집단의 공통적인 의견이 집약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델파이 조사가 끝난 후에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금년 중에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귀하를 교과서 선정제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승낙해 주시면 교과서 제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이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1차 설문지를 보내 주시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 발전을 위하여 향후 설문에도 응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연구팀

※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연구원 이림 02-6206-63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설문지에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에 대한 참고자료가 필요하실 때에는 설문지 중간 중간에 정리된 것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참고자료는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이 참고자료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1. 교과서 선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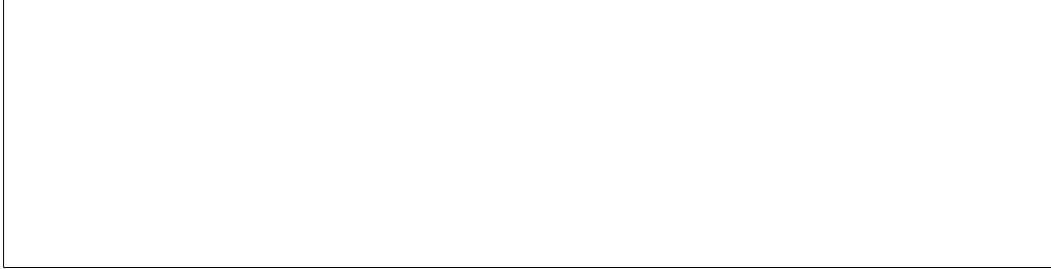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 전시본이 일선 학교에 전달되면, 학교에서는 담당 교사가 규정에 따라 각 교과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 역할, 교과서 평가 자료의 제공, 교과서 선정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교사 등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선정제도와 관련한 법규 측면에서

1-2.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 역할 측면에서

1-3. 교과서 평가 자료의 제공 측면에서



1-4. 교과서 선정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의 측면에서



1-5. 교과서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 측면에서



1-6.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측면에서



1-7. 학교장의 최종 선정 측면에서

[참고자료] 교과서 선정 절차와 실태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규정 또는 관례에 따라 교사가 평가하여 평가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고 있음.
-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전달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일정한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함.
-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각 학교에서 선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의무 규정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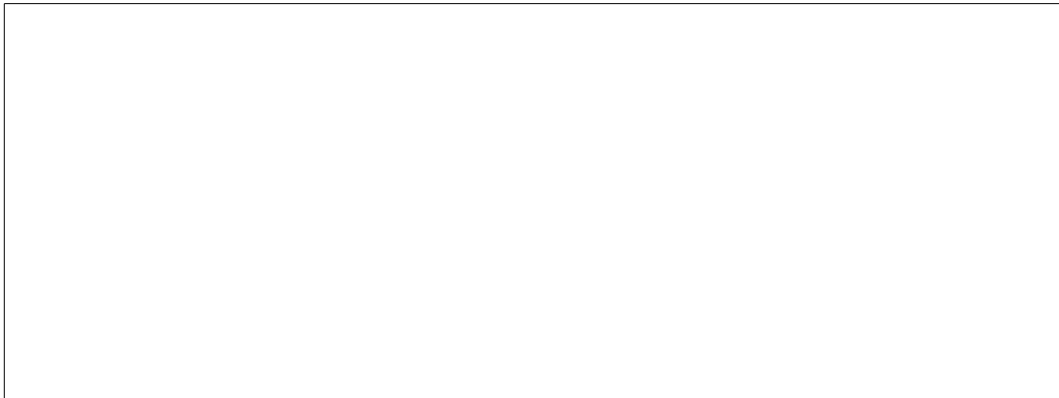
2.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인정을 통과한 여러 교과서를 교사들이 충실히 검토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한다면 각 항목별로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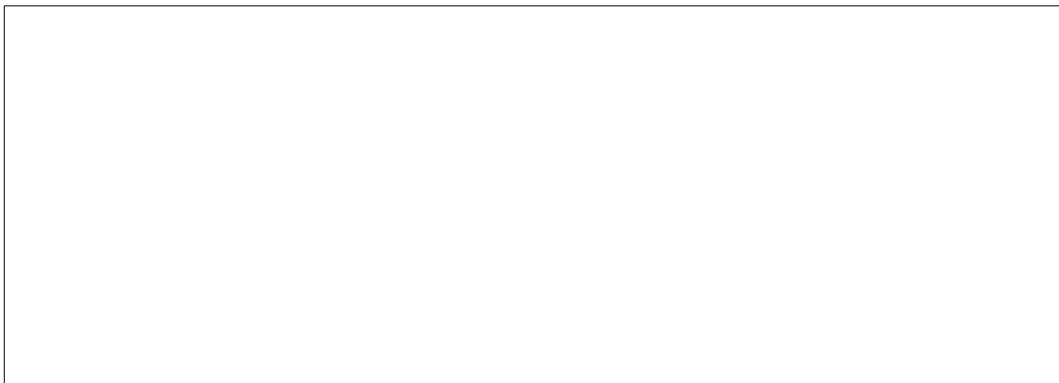
2-1.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의 개선 측면에서



2-2. 교과서 선정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의 측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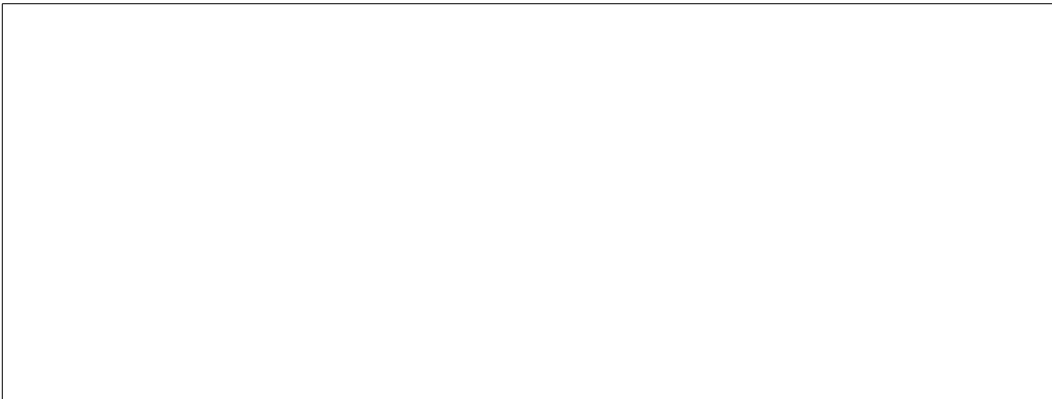
2-3. 교과서 선정 과정 또는 절차의 측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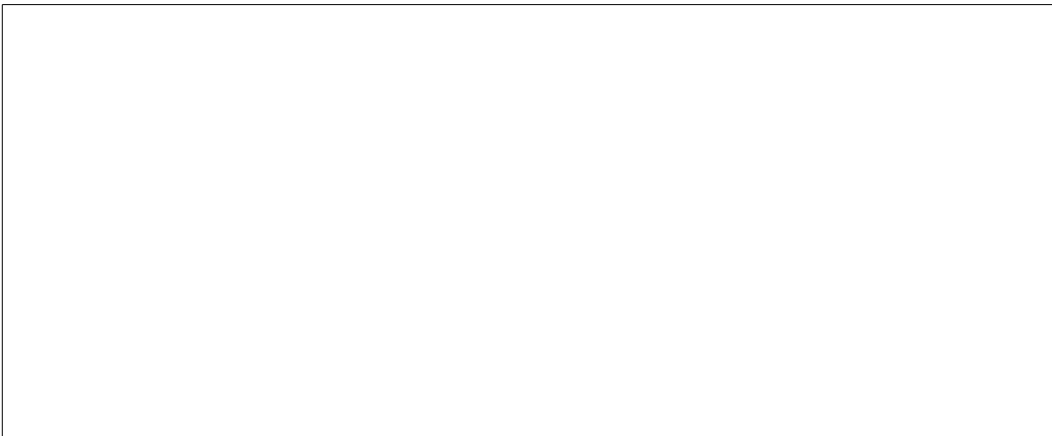
2-4. 교과서 선정 후 수시 변경의 측면에서(다른 교과서를 쓰고 싶을 때)



2-5. 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



2-6. 교과서 평가 전문 기구 신설의 측면에서



[참고자료]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와 국제적 동향

- 시·도교육청이 소속 학교 교과서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은 의무 규정이 아님.
- 미국의 경우 상당수의 교육구청에서 교과서 평가를 통해 해당 교육구청에 속하는 일선 학교들이 사용할 교과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교과서 평가를 통한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이 목록을 보고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음.

3.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에 대하여

교과서 선정에는 교사, 학생, 출판사와 저자, 학부모, 교육기관 등 많은 변인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집단 간의 충돌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선정하여 교육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선정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가운데 잘 응답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차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자문위원 승낙서를 기재하시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승낙서	
이 연구를 위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름 :	소속 :
직함 :	(직장)전화번호 :
E-mail :	휴대전화 :
주소 :	

부록 4. 델파이 조사 2차 설문지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2차)

이름 : (), 근무처 : ()

자문위원님께

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2차 설문지는 1차 설문지를 토대로 개발한 것입니다.

자문위원님의 역할은 2차 설문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자문위원님의 전문적인 분석 의견이 연구에 귀중하게 쓰인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문위원님과 소속기관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4년 5월 15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 선정제도 연구팀 올림

응답하신 설문지는 이메일(012112@hanmail.net)로 5월 20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3차 델파이 설문(예정)에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 개선안

	전 타 당 하 지 않 음	현 타 당 하 지 않 음	별 로 타 당 하 지 않 음	보 통	약 간 타 당 함	매 우 타 당 함	비고(의견)
(1)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간은 늘리고 주문시기는 늦추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2	3	4	5		
(2) 교과서 선정 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명시한다.	1	2	3	4	5		
(3)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명시한다.	1	2	3	4	5		
(4)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1	2	3	4	5		
(5)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관련 교과목의 교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한다.	1	2	3	4	5		
(6) 교육감은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외부 압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과정을 지원한다.	1	2	3	4	5		
(7) 기존 도서의 1/2 이상을 고치는 '개편'을 국정만이 아니라 감·인정 도서에도 적용하는 규정을 둔다.	1	2	3	4	5		
(8) 감·인정 교과서의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규정을 둔다.	1	2	3	4	5		
(9) 교과서 구입비용을 학교 예산회계로 할당 편성하여, 선정 시 총액 내에서 가격을 보고 선정토록 하는 규정을 둔다.	1	2	3	4	5		

2. 교과서 선정 단위에 대한 개선안

	전 타 당 하 지 않 음	현 타 당 하 지 않 음	별 로 타 당 하 지 않 음	보 통	약 간 타 당 함	매 우 타 당 함	비고(의견)
(1) 현재와 같이 개별 학교 단위에서 선정한다.	1	2	3	4	5		
(2)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교과서를 선정한다.	1	2	3	4	5		
(3)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교과서 선정을 광역화한다.	1	2	3	4	5		
(4) 교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학교들은 자발적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교과서를 선정한다.	1	2	3	4	5		
(5) 시·도교육감이 관내 학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체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개별학교'로 다원화 할 수 있도록 한다.	1	2	3	4	5		

3.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안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별로 타당 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비고(의견)
(1)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1	2	3	4	5	
(2) 전시본 제공 시, 지도서 및 학습용 CD 등도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1	2	3	4	5	
(3) 출판사의 인지도에 따라 교과서 선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시본에서 출판사명을 삭제한다.	1	2	3	4	5	
(4) 교사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전시본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5) 교과서 선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1	2	3	4	5	
(6)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만 파악한다.	1	2	3	4	5	
(7) 지역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과서를 2~3권 선정하고, 학교에서는 선정된 교과서 중에서 최종 선정한다.	1	2	3	4	5	
(8) 학교는 교과서 선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1	2	3	4	5	

4. 교과서 선정 후 변경에 대한 개선안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별로 타당 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비고(의견)
(1) 교과서 변경 시, 선정 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1	2	3	4	5	
(2)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선정 변경 절차를 강화하여,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게 한다.	1	2	3	4	5	
(3) 변경 가능한 사유를 '선정 과정의 하자나 불법행위 및 발행사의 공급 문제 발생' 정도로 제한하여, 학교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변경은 못하도록 한다.	1	2	3	4	5	

5. 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 부여에 대하여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비고(의견)
(1) 발행사의 경쟁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필요 없다(객관성·공정성 훼손, 교과서 가격 인상 요인, 광고와 다를 바 없음 등).	1	2	3	4	5	
(2)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설명회를 교과별로 제공한다.	1	2	3	4	5	
(3) 지역별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공동 설명회를 부여한다.	1	2	3	4	5	
(4)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발행사가 지원하는 현장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의 설명회를 제공한다.	1	2	3	4	5	
(5) 발행사가 자유롭게 설명회를 개최한다.	1	2	3	4	5	
(6) 공동 설명회 대신에 교과서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 설명 자료를 출판사에서 제공한다.	1	2	3	4	5	

6.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에 대하여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비고(의견)
(1) 현행 교과서 소유제를 대여제로 전환해야 한다.	1	2	3	4	5	
(2) 교과서를 복수 선정하여 수업에서 교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2	3	4	5	
(3) 교과서 활용도가 낮은 교과는 학생용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 또는 교사용 워크북(교사가 별도의 학생용 자료 만들어 배포)으로 대체한다.	1	2	3	4	5	
(4) 교과서 주문과 공급의 유통경로를 '학교-발행사'로만 일원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발행사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1	2	3	4	5	

기타 의견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차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록 5. 델파이 조사 3차 설문지

교과서 선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3차)

이름 : (), 근무처 : ()

자문위원님께

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3차 설문지는 2차 설문지를 토대로 개발한 것입니다.

자문위원님의 역할은 3차 설문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자문위원님의 전문적인 분석 의견이 연구에 귀중하게 쓰인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문위원님과 소속기관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4년 5월 23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 선정제도 연구팀 올림

응답하신 설문지는 이메일(012112@hanmail.net)로 5월 30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요령]

※ 아래 응답 척도의 상단에는 2차 텔파이 설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를 요약하여 중앙치는 Md로, 사분점간 범위는 [] 로, 해당 전문가의 응답은 x로 나타냈습니다. 그 하단에는 각 질문에 대해 다시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재추정치가 대다수 전문가들의 추정치와는 달리 [] 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견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Md : 중앙치로서 각 텔파이 위원들이 응답한 중앙값
- 사분위 : 텔파이 위원들이 응답한 값의 최저점에서 25%에 위치한 수치와 75%에 해당하는 수치까지의 거리[범위]

1.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 개선안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간은 늘리고 주문시기는 늦추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Md	
[의견]	1	2	[3	4	x5]
	1	2	3	4	5
(2) 교과서 선정 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명시한다.				Md	
[의견]	1	2	3	[x4	5]
	1	2	3	4	5
(3)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명시한다.			Md		
[의견]	1	[2	x3]	4	5
	1	2	3	4	5
(4)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Md	
[의견]	1	2	[3	x4]	5
	1	2	3	4	5
(5)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관련 교과목의 교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한다.					Md
[의견]	1	2	3	[4	x5]
	1	2	3	4	5
(6) 교육감은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외부 압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과정을 지원한다.				Md	
[의견]	1	2	3	[4	x5]
	1	2	3	4	5

	전 타 당 하 지 않 음	별 로 타 당 하 지 않 음	보 통	약 간 타 당 함	매 우 타 당 함
(7) 기존 도서의 1/2 이상을 고치는 '개편'을 국정만이 아니라 검·인정 도서에도 적용하는 규정을 둔다.				Md	
[의견]	1	2	[3	x4	5]
	1	2	3	4	5
(8)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규정을 둔다.				Md	
[의견]	1	2	3	[4	x5]
	1	2	3	4	5
(9) 교과서 구입비용을 학교 예산회계로 할당 편성하여, 선정 시 총액 내에서 가격을 보고 선정토록 하는 규정을 둔다.			Md		
[의견]	1	[2	3	x4]	5
	1	2	3	4	5

2. 교과서 선정 단위에 대한 개선안

	전 타 당 하 지 않 음	별 로 타 당 하 지 않 음	보 통	약 간 타 당 함	매 우 타 당 함
(1) 현재와 같이 개별 학교 단위에서 선정한다.					Md
[의견]	1	2	3	[4	x5]
	1	2	3	4	5
(2)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 지원청별로 교과서를 선정한다.		Md			
[의견]	x1	[2	3	4]	5
	1	2	3	4	5
(3)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교과서 선정을 광역화한다.		Md			
[의견]	[x1	2	3]	4	5
	1	2	3	4	5
(4) 교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학교들은 자발적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교과서를 선정한다.				Md	
[의견]	1	2	3	[x4	5]
	1	2	3	4	5
(5) 시·도교육감이 관내 학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체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개별학교'로 다원화 할 수 있도록 한다.			Md		
[의견]	1	[x2	3	4]	5
	1	2	3	4	5

3.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안

	전 타 하 지 않 음	허 당 지 음	별 로 타 하 지 않 음	보 통	약 간 타 당 함	매 우 타 당 함
(1)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Md	
	1	2	[3	4]	x5	
[의견]	1	2	3	4	5	
(2) 전시본 제공 시, 지도서 및 학습용 CD 등도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Md	
	1	2	3	[4	x5]	
[의견]	1	2	3	4	5	
(3) 출판사의 인지도에 따라 교과서 선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 시본에서 출판사명을 삭제한다.					Md	
	1	[2	3	4	x5]	
[의견]	1	2	3	4	5	
(4) 교사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전시본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Md	
	1	2	3	[4	x5]	
[의견]	1	2	3	4	5	
(5) 교과서 선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Md	
	1	[2	3	x4]	5	
[의견]	1	2	3	4	5	
(6)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만 파악한다.					Md	
	1	x2	[3	4	5]	
[의견]	1	2	3	4	5	
(7) 지역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과서를 2~3권 선정하고, 학교에서는 선정된 교과서 중에서 최종 선정한다.					Md	
	1	[x2	3	4]	5	
[의견]	1	2	3	4	5	
(8) 학교는 교과서 선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Md	
	1	[2	x3]	4	5	
[의견]	1	2	3	4	5	

4. 교과서 선정 후 변경에 대한 개선안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별 로 타 당 하 지 않 음	보 통	약 간 타 당 함	매 우 타 당 함
(1) 교과서 변경 시, 선정 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Md	
[의견]	1	2	3	[4	5x]
	1	2	3	4	5
(2) 선정할 교과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선정 변경 절차를 강화하여,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게 한다.				Md	
[의견]	1	2	[3	x4]	5
	1	2	3	4	5
(3) 변경 가능한 사유를 '선정 과정의 하자나 불법행위 및 발행사의 공급 문제 발생' 정도로 제한하여, 학교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변경은 못하도록 한다.				Md	
[의견]	1	[x2	3	4	5]
	1	2	3	4	5

5. 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획 부여에 대하여

	전혀 타당 하지 않음	별 로 타 당 하 지 않 음	보 통	약 간 타 당 함	매 우 타 당 함
(1) 발행사의 경쟁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필요 없다(객관성·공정성 훼손, 교과서 가격 인상 요인, 광고와 다를 바 없음 등).				Md	
[의견]	1	[2	3	x4	5]
	1	2	3	4	5
(2)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설명회를 교과별로 제공한다.				Md	
[의견]	1	2	[3	x4]	5
	1	2	3	4	5
(3) 지역별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공동 설명회를 부여한다.				Md	
[의견]	1	[2	x3	4]	5
	1	2	3	4	5
(4)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발행사가 지원하는 현장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의 설명회를 제공한다.				Md	
[의견]	1	[x2	3	4]	5
	1	2	3	4	5
(5) 발행사가 자유롭게 설명회를 개최한다.				Md	
[의견]	[x1	2]	3	4	5
	1	2	3	4	5
(6) 공동 설명회 대신에 교과서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 설명 자료를 출판사에서 제공한다.				Md	
[의견]	1	[2	x3	4]	5
	1	2	3	4	5

6.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에 대하여

	전 타 하 지 않 음	여 기 지 음	별 도 타 하 지 않 음	보 통	약 간 타 당 함	매 우 타 당 함
(1) 현행 교과서 소유제를 대여제로 전환해야 한다.			<i>Md</i>			
	<i>x1</i>	[2	3]	4	5	
[의견]	1	2	3	4	5	
(2) 교과서를 복수 선정하여 수업에서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i>Md</i>			
	1	[2	<i>x3</i>	4]	5	
[의견]	1	2	3	4	5	
(3) 교과서 활용도가 낮은 교과는 학생용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 또는 교사용 워크북(교사가 별도의 학생용 자료 만들어 배포)으로 대체한다.					<i>Md</i>	
	<i>x1</i>	[2	3	4	5]	
[의견]	1	2	3	4	5	
(4) 교과서 주문과 공급의 유통경로를 '학교-발행사'로만 일원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발행사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i>Md</i>	
	1	2	[3	<i>x4</i>	5]	
[의견]	1	2	3	4	5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6. 델파이 조사 1차 서술형 의견(답변 그대로 인용)

1. 교과서 선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1-1. 선정제도와 관련한 법규 측면에서

- 교과서 선정 및 선정에 관한 법규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봄.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직접 보고 평가한 후 학운위를 통과하고 학교장이 결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봄.
- 실질적으로 교과서 선정을 할 때 교과서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뒤 출판사의 인지도, 저자의 약력 등을 보고 정한 다음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편임. 교과서 선정의 경우 모든 내용을 볼 수 없으니 교과서의 특징을 살핀 뒤 정한다고 볼 수 있음. 교과서 선정의 경우 관련 구비 서류와 평가지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정교과외의 경우 1인의 교사가 있는 경우 인근 학교 교사와 함께 하는데 이도 번거로움이 많음. 유사교과 선생님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과서 선정·선정과 관련된 법규(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를 토대로 검·인정 교과서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위원을 위촉한 후 검·인정 교과서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기까지 교육공동체 가운데 학생(학습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배제되어 있음. 이는 아직도 교과서는 가르치는 교사 중심의 편의성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임. 이에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의 출판사 교과서를 선택하여 학생(학습자)에게 적용해보거나 학생(학습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재고되어야 함.
-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교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담당 교과의 교사라고 생각함. 현행 법규에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봄.
-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에서 사용할 검·인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함)를 거쳐야 함. 그리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인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음. 이 법령에 의거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료의 객

관성이 부족하고 또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선정 관련 준거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교과서 실제 활용 대상인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바람직함. 다만 교과서 선정 및 선정을 위한 기간이 매우 짧아서 과목별 깊이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이 어려움. 인정교과서 체제에 찬성하지만 교과서 집필에 소규모 출판사까지 난립하지 않도록 출판사 엄선 제도가 필요함.
- 소규모 학교에서 교과 전공교사가 1명이 있는 경우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3~4개교가 연합으로 함께 선정하는 제도를 두었으면 함. 아니면 교과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사 교과 교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의 측면에서 관련규정대로 교육현장에서 가르칠 교사가 추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은 형식에 불과한 실정임.
- 교과협의회에서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면 원안대로 가결됨. 해당과목의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이 교과서를 분석하여 상정된 교과서 순위를 변경하여 선정하는 일은 불가함. 전적으로 해당과목의 담당교사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음. 한국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8종의 교과서를 짧은 시일 내에 분석하여 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전시본 제공과 최종선정까지의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과목별 교과수가 적은 도서지역 학교는 소수의 교사들이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여야 함(학년별 또는 동일 교과 교사의 선정).
- 검·인정교과용도서 선정매뉴얼을 통해 교과서 선정·선정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지음. 이처럼 교과서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불공정 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다보니 교사입장에서는 교과서 선택과 활용이 불편할 뿐더러 다양한 교과서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저자, 발행사에서는 최초 선정되고 나면 수정, 보완, 개선을 위한 노력 내지는 경제적인 가격에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발생함.
- 교과서 선정 선정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단위 학교 지도교사가 선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봄.
-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학교 교과협의회 결정으로 선택된 후 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의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는 없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올해 한국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됨. 그러므

- 로 교육청에서 교과서 평가 자료의 제공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과정이라 생각됨.
- 현행 법규상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규정은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공하고 있음. 일면 법규의 소홀로 읽어질 수도 있겠으나 교과용도서가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자료라는 점, 그리고 이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당사자는 이 교재를 활용하여 교수활동을 진행하는 교사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교사의 전문성에 근거한 판단 위에 학교 현장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됨.
 - 법규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봄. 다만 소규모 학교나 특정 과목의 경우 한 두 명의 교사가 수많은 종류의 교과서를 검토하게 되어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봄.
 - 검·인정도서의 경우 이미 검정과 인정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교과서로서의 객관성과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봄.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요청을 통해 수정하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지하도록 해야 함.
 - 현재 법규에서 정해진 대로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선정제도에 변화가 있으면 이에 맞추어 법규를 정비하면 될 듯함.
 - 아마 '법규'라는 점에서 매우 개괄적으로 진술되어 있을 것임.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며, 현재 부족한 안내는 세부 지침 성격으로 상세하게 따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가르치는 교사가 교과서 선정과 선정의 중심에 있는 것도 일면 바람직하나, 특정인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검정과 인정의 구분 의미가 실제로는 검정수준에서 논의되고 교과서 도서에 관한 규정은 국정, 검정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인정도서 제도의 기능이 사실상 무용 상태임.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교사의 수업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검인정 도서 활용에 대한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교육적,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경우, 또는 교육적,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일정 교과에 대한 국정 도서제 유지도 바람직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과서 선정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교과서 선정권이 단위학교에 위임되어 있는 것은 단위학교 자율성 신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함.
 - 현재 교과서 선정제도상에서는 가장 주체가 되는 학습자의 의견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없음. 학습자인 학생과 교과서를 이용하여 수업하는 교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 선택되는 교과서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것이 개발자로서는 당연한데, 학습자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음.

- 교과서 개발 비용이 공동 배분인 경우 선정, 선정 시 출판사에서 과열 경쟁이나 영업 활동이 거의 없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교과서 선정부수대로 이윤 창출이 되는 구조이므로 출판사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이치임. 따라서 현행 제도에 맞게 법규가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봄.
- 선정 및 선정 제도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없으나, 시행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함. 교사들이 추천한 복수의 교과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는 일련의 절차는 표면적으로는 제도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전문성이 결여된 선정 방식임.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원이 교사가 추천한 교과서를 과연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는지가 의문임. 따라서 단위 학교별로 교과서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교과서 선정위원으로 별도 위촉하여 책임감 있게 교과서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함.
-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정하고 나서 교과서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선정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입장에서 교과서 선정에 대한 권리가 심의의 공정성이라는 전제에서 침해될 수 있음. 교과서는 사용자에게 의해서 선정되어 지는 것이 맞지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을 이유로 비전문가가 교과서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교사의 교과서 선정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함.
- 현재 선정, 선정에서 법규의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생각됨.
- 선정 선정 제도와 관련해서 법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지침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 학교 교사들이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각 교과서의 콘텐츠의 우수성, 즉 각 교과서의 특징점 및 교과서에 따른 교수지원서비스가 주요 요인으로 뽑히는 데 이에 대한 홍보물 및 자료 또한 교육부 지침 상에는 공정하지 않은 자료라고 제시되어 있음. (교과서 선정 매뉴얼) 교사들은 풍성하고 알찬 수업을 위해서 마땅히 교과서에 따른 수업 자료가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 부분이 불공정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행위로 규정해야 할 것임.

1-2.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 역할 측면에서

- 시도교육청 지도 및 감독 역할은 검인정의 과정이 합법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된 것인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고, 학교 단위에서 선정 과정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함.
- 교사나 학교 단위에서 '좋은 교과서'가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연수나 협의의 기회가 사전에 제공되면 더 질 높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을 것임.
- 선정과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며, 선정에 대하여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교사의 선정과정에서의 선택이 보장되었는지 학교를 감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봄.
- 현재는 출판업체의 홍보를 차단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처럼 느껴짐. 가급적 질 높은 교과서를 어떻게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육청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시·도교육청은 검·인정 교과서 선정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및 심의 과정을 안내해 주고 선정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러한 시·도교육청의 지도 역할 가운데 학교 실정에 맞는 선정기준표의 재구성이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괄적인 계획만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심도 있는 교과서 선정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의 감독 역할로는 저작자 및 도서관매업자와 연관된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있음. 이러한 시·도교육청에서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려는 국한된 노력보다는 공정한 정보 제공이나 그러한 장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 담합이나 유착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선정은 교과 전문성과 각 급 학교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 교과서 선정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시·도교육청에서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각 학교에서 선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을 위한 매뉴얼 안내하고 지역교육청별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

이 촉박하고 연수 자체의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각 시도의 여건과 교과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자체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참고자료가 부족하여 선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 선정과정이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할 수 있음. 오히려 학교의 선정 선정에 관여하는 일을 절대 금하고 있음.
- 교과서 부조리 발생 시 지도·감독을 위해 감사과의 역할을 증대하여 감사과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과서 전시본 전달과 동시에 교과서 선정 및 부조리 예방에 관한 교사와 관리자의 연수(교과서 선정 매뉴얼제공)를 실시하며, 출판사에서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학습 참고자료를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부조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출판사들의 부조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꾸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
- 교과서의 선정과 사용은 교사와 학교의 고유한 권한이며 재량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교육청은 단지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감독, 지도하게 됨. 따라서 각 급 학교 또는 교과단위로 행해지는 교과서 선정·선정과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감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시·도교육청에서는 선정의 자료 제시, 절차 안내, 부정 방지 안내에만 한정할 필요 있음.
-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교육부의 전달사항을 전달할 뿐이며, 각종 비리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본분의 의무라고 생각되며,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학교 자체의 일이라고 생각함.
- 현행 법규상 시도교육청이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대한 지도와 감독 기능은 신설학교의 도서 선정, 선정 시 참고자료를 제공 가능 정도로 한정하고 있음. 학교에 주어진 교과서 선정 권한을 존중할 때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도, 감독 역할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음.
- 시·도 교육청은 현행과 같이 교과서 선정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함. 다만 학교 현장에 유용한 평가 자료를 현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제시해야 할 것임.
-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비치한 경우 시·도 교육청의 역할은 제

한적임. 시·도교육청에서 특정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경우 학교 자율권 침해 요소 있음.

- 현재 선정을 주도하는 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선정을 위한 지원과 선정 이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형태로 밖에 역할을 할 수 없음.
- 시·도교육청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정 업무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지 못함. 학교에서 시행하는 선정 업무량과 담당자의 역량을 미루어 볼 때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업무가 일상화될 때까지 업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대한 분석을 꾸준히 해야 할 것임.
-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지원하는 기준, 정보 제공 등이 미흡함.
- 교과서 선정 의사결정권이 단위학교에 있고 이는 단위학교 실정과 학생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수업권과도 맞물려 있기에 시도교육청의 지도, 감독 역할은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단위학교 교과서 선정에 일부 관여할 수 있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단위학교가 선정한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단위학교 교과서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는 알기 어려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현재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시교육청에서 하는 업무가 있나 하는 의구심들이 정도로 역할이 미비함. 교과서 개발 전, 개발과정, 개발 후 평가, 학교 전시의 과정에서 개발자와 학교의 의견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시교육청별로 교과서 전담 부서에서 모든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으면 함. 예를 들어 출판사의 기획 과정에서 학생 모니터링단, 교사 모니터링단 등의 구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개발 과정 중 문의를 전담으로 처리해 준다면 좀 더 개선된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임.
- 현재까지 시·도교육청은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의 수동적인 지도·감독 역할을 해 왔음. 중앙정부(교육부)의 공문 전달 기능이나 부정행위 접수 등 주도적이라기보다는 다소 형식적이었음. 그러므로 효과가 없었음은 당연함.
- 교과서 선정, 선정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의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되었으면

함. 단, 교과서 안내에 대한 부분을 출판사별로 받아 학교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교과서 선정 및 선정을 과정에서의 시·도 교육청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안내 등의 행정 업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따라서 실제 단위학교에서 공정하게 선정 및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지도·감독에 대한 역할을 크게 강화해야 함. 특히, 민원 발생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등은 사후 처리에 불과하므로 사전 계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가 더욱 필요함.
- 교과서 선정에 있어 시,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은 소극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듯함. 학교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도서에 대해 시, 도교육청이 관여하지 않고, 교과서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여를 할 부분이 없이 교육부의 업무 지침에 따라 교과서 선정 행정 지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음. 시, 도교육청은 교과서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 처분을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함.
- 현재 학교별 자율 선택이므로 시·도교육청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됨.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시도교육청의 지도 감독 역할은 인지하고 있지 않음.

1-3. 교과서 평가 자료의 제공 측면에서

-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과서에 대한 필요한 정보는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교과서 평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료가 있다면 제공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것 밖에 없는데, 출판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해보겠지만, 제공되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봄. 그리고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음.
-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전시본 이외에도 중요한 요소는 교과서와 함께 제공되는 별책(부록)임.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교과서보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교육용 자료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풍부하나 하는 것이 교과서를 평가하는 데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홍보의 차단과 함께 출판사에

서 제공하는 교육용 자료가 선정과정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음.

-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전시본이 학교에 전달되는 자료는 교과서 원본으로 제한되어 있음. 직접 교과서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활용하게 될 학습자료(교사용 지도서, 학습용 CD, e-book 등)인 활용 자료는 전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업 실현을 계획하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 비용적인 측면이나 검토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학습 자료를 각 학교에 배부하기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단 시간에 교과서를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그러므로 교과서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함. 단 계량화 수치화 된 자료가 아닌 각 교과서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는 비평 자료가 제시 되었으면 함.
- 전시본이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 즉시 해당 학교에 평가 자료를 안내하여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자료를 제작하기에는 일정과 기간이 너무 촉박한 실정임. 평가 자료 제작 시 선정 기준과 심사 기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시도교육청에서 평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규가 정하고 있으나 과목별 15종 이상의 많은 교과서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데 시간과 인력의 어려움이 있음.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평가 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사회적으로 민감한 과목의 경우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전문가나 교사를 선정, 위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시도교육청별로 교과서 평가자료 제공은 필요한 일이나 잘못하면 교과서 선정에 특정 교과서가 좋은 점만 또는 나쁜 점만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음. 이에 공정한 교과서 선정을 위해 교과서 선정 시 구성된 심의위원 등이 자료를 1차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제공하였으면 함.
-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검·인정도서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 선택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책에 대한 장단점 등을 기술하는 평가 자료는 공개되는 자료로서 평가자 역시 조심스러울 수 있음. 국·검정도서 체제에서 검·인정도서 체제로 전화되면서 수백 권의 교과서에 대한 평가 자료를 수일 내에 완성하여 전시본과 함께 학교에 제공하는 것은 선정 기간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도서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평가자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를 교과서 첨부물로 제공하는 것이 시도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교과서 심사를 강화해서 심사통과 된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가 선정되더라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검·인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용 도서에 대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 자료를 만드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낌. 자칫 의도와 달리 교사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도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평가 자료를 만들지 않고 있음. 그렇다고 해서 각 도서의 장점을 나열하거나, 도서간 차이점을 서술하는 식의 평가 자료는 교사들의 교과서 선정과정에 도움을 주기 어려움.
-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과서 평가 자료를 제시함은 학교 현장의 지도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공치 않는 것이 타당함.
- 경남교육청은 교과서 평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에 답변할 수 없음. 그러나 평가 자료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현행과 같이 짧은 기간 내 선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평가 자료가 부분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임. 그렇다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가 자료는 각 교과서의 서술 쪽수, 교과서 구성 원칙, 자료 구성 등 일반 현황에 대한 분석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평가 자료가 학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 내 교과서 운용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배치와 전문 인력의 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특정인들에 의한 교과서 평가 자료 제공은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음. 평가 자료 제공 기관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됨.
-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이므로 교과서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선정은 처음부터 교사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선정하는 과정임.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공되더라도 많은 교과서를 짧은 기간 내에 검토하고 평가 자료까지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부담이 됨. 또한 현재 제공되는 평가 자료가 검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익숙하지 않은 선정 업무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평가 자료를 필요로 함. 너무 많은 자료의 제공도 불필요하지만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는 교과용 도서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심의기준과 심의 결과가 교과서 평가를 위해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과서 내용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기준 등 자료 제공이 부족함.

- 검인정 통과된 교과서의 특징, 가격 등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 미 제공으로 인해 학교 교과서 선정 담당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현실적으로 세심한 선정 대상 교과서의 비교 분석의 한계가 있음.
- 교육청이 제공하는 도서별 평가 자료가 단위학교 교과서 선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려면 교육청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함. 현재 교육청은 행정 중심의 조직이어서 교과서 선정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서별 평가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평가 자료라면 제공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 교과서 평가 자료 제공에서도 출판사의 규모나 제작 부수의 차이에서 어떤 안내 기준이 없어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어느 선까지 교과서의 홍보 내용을 구성하라는 적절한 안내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안내와 적절히 그 안내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기구가 있었으면 함.
- 교과서 평가 자료는 교과서 선정에 실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음. 단순하고 획일적인 심사 점수 분포 등은 여러 교과서를 비교하는 자료로서 턱없이 부족함. 또한 검인정심사를 통해 이미 합격된 교과서를 평가한다는 것이 무척 주관적임. 검인정심사위원이 아닌 또 다른 전문인(기관)이나 교과모임 등 어느 평가 자료에 얼마나의 신뢰비중을 허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해줄 것 이냐는 등의 모호성이 있음.
- 교과서 평가 자료는 학교별,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함.
- 교과서 평가 자료 제공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교과서를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 학교에 제공되는 교과서 평가 자료는 심사 기관에서 공개한 점수, 교과서 통합 소개자료 외에는 교사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음. 교과서 평가는 80~90 점, 90점 이상 두 개 권역으로 평가하고 세부 교과 내용 전반에 대한 평가 내용은 공개 되지 않아 제시되는 평가 자료는 교과서 선정에 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지 않고 있음. 교과서 심사 과정에서 평가한 평가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직접 교과서를 확인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공하는 권역별 점수는 의미가 없는 자료임.
- 평가 주체의 공정성과 평가 자료의 질이 전제된다면, 평가 자료 배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과서 선정, 선정이 바람직함.

- 교과서 평가 자료는 80점~90점, 90점~100점으로 그 점수 범위가 크게 잡혀져 있음. 이미 검인정 심사 절차에 따라 통과된 교과서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는데, 교과서 평가 점수가 좋다고 해서, 그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그 유용성과 효용성으로 연계되는 측면이 있지는 않음. 학교에서 선정하기 위한 평가 요소는 교과서의 콘텐츠 자체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같이 고려하여 선정하는 바, 하나의 요소로서의 자료 제공 측면에서는 의미 있음.

1-4. 교과서 선정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의 측면에서

- 어떤 교과서를 선정하느냐는 일선 교사들이 학교 여건과 수준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해야 현장에 적합한 교육이 가능하므로 현재처럼 학교 단위에서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과서 선정 선정에 있어 교사의 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람.
- 학교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교과서 선정 시 교과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이런 결과로 교과서 장단점 검토가 밀도 있고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교과서 선정 단위로는 시·도교육청 단위가 아닌 학교별 교과 단위(각 교과는 3년 간 하나의 출판사 교과서를 활용함)로 교과서의 출판사가 선정됨. 물론 각 교과의 교사가 개인 단위로 교과서를 선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입시 위주의 성적 산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놓고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음.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피하고 있으나 올해 처음 성취평가제를 적용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중학교 3학년생의 고입 전형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살펴보니 교과별 학년 단위의 전체 석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음. 이에 학교별 교과 단위의 출판사 선정을 넘어서 교과의 교사 개인 단위의 교과서 선정은 아직 갈 길이 멀게 보임.
-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개별 학교의 차이는 큼. 그리고 개별 학교의 차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 교사임. 따라서 학교 단위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교과용도서 선정 기간이 짧고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형식적이어서 학교 현장에 맞는 좋은 교과서에 대한 기준 제기가 명확해야 하며, 교과용도서 선정에 관한 연수 등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교과서 선정 선정 단위는 당연히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과목별 교사가 1인인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과서를 1차로 선정할 수 있는 동교과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적음,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초, 중학교의 교과서 선정, 선정 권한을 확대해야 함.
- 일선 학교에 전시본이 전달되면 학교 나름의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시본이 도착한 후 최종 선정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음. 한 과목당 3,4권 많게는 8,9권을 꼼꼼히 비교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책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도서심의회에서 평가하여 전국시도교육청에 공통된 평가자료를 함께 제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학교에서는 동일 교과 3명 이상의 교원이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과에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 교과서 구입대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정교과서 확대 이후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됨. 따라서 재정적 측면에서 지역교육지원청(또는 교육청)과 학교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함(교육예산의 건전성 보장을 위해 학교 단위 도서 선정 시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 : 지역별 공동구매 등으로 가격 협의).
- 교과서 개발, 수정 심의 등은 당연히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할 필요 있으나, 선정은 실제 교과서를 가르치는 지도교사들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교과서는 실제 사용하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지도하는 교사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방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교과용도서가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자료라는 점, 그리고 이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단위는 학교 현장이라고 생각함. 이는 선진국의 교과용도서 선정 과정과 동일하며 이웃 일본에서도 이의 민주성을 평가하고 있음(일본과의 교과서 쟁론 시 일본의 시도교육청 단위 선정을 비민주적 조치라고 비판 공격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단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 소규모의 학교에서는 검·인정 교과서 전체가 학교에 제공되지 않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정 교과에 교사수가 1~2인 경우 인근 학교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학교가 아니므로 인근의 교사가 자기 주장하기 어려워

교과서 선정이 해당 학교 소수의 교사에 의해 영향을 받음.

- 현재 학교 단위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짧은 기간 내에 소수의 교사가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큼.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단위의 선정은 짧은 기간 내에 소수의 교사가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 수를 고려해 위원회 단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일차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복수의 교과서 후보군 선정 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현재처럼 단위학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무상으로 제공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과서 선정 및 선정은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교과서의 선정에 있어 일률적인 기준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1차 평가 단체가 있었으면 함. 학교 교사, 학교장,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의 경우 각 교과별로 이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전문 그룹이 있다면 좀 더 납득하기 쉬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출판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교과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잘 되었는지 학교 교육 실정에 맞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교과서의 최종 수요자는 학생임. 최종 수요자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있는 단위는 학교임. 그러므로 교과서 선정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중에서 학교(선정에 참여하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장 심플하고 단조로 워야 하는데 현재는 역으로 업무과중이 가장 심함.
- 지역 단위별로 선정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출판사 교과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음. 이런 경우는 출판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사 평가단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교과서 선정 및 선정에 있어서 각 급 학교 단위의 선정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기회비용과 선정 절차 등을 고려해보면 학교장의 영향 하에서 선정되는 교과서의 선택 과정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지역교육청의 행정 지도사항이 계속 발생할 우려도 있음.
- 기본적으로는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선정 단위가 교육청 등으로 올라가면 지역별 획일화 등의 문제점이 더 클 것임.
-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향성에 따라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금과 같이 부여해야 한다고 봄.

1-5. 교과서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 측면에서

-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 단계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은 교과서인지에 대한 갈등과 혼란이 올 때가 많으므로 좋은 교과서에 대해 평소 고민하고 적절한 철학을 마련하며 교과서를 보는 안목을 높이기 위한 연수나 정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교과서 관련 연수나 정보 제공의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교과서 선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구비서류에 있는 것은 아는데,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교원의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마인드 제고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 당해 과목 자격 소지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당해 과목 자격 소지교원을 위촉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간 확보가 어려워 거의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교원들의 교과서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아 수업 현장 적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하는 경향이 많음.
- 학교현장에서 교과별로 교과서선정하는 과정이 형식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현실임. 질이 높은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 보다는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도 일이라는 측면, 그리고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든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들로 인해 단순히 문제가 많으면 좋다거나 여백이 많으면 좋다 혹은 색감이 좋은 것이 좋다는 등 교과서의 내용과 체계보다는 그 외의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 교과서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는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자체 수립한 계획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함. 업무 과다와 선정 기간의 촉박함으로 선정 평가표의 출판사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평균 줄 맞추기식 평가를 하고 있는 형편임. 또한 교과서를 학생의 입장에서 배우기 편리한 자료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치기 더 편리한 자료로 파악하고 선정하려는 경향 또한 강함. 따라서 우선순위에 오른 교과서에 한해서라도 동일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적용해보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현실적으로 바쁜 현장 교사들이 짧은 시간 안에 교과서를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일임. 교사들끼리 의견을 나눌 충분한 시간과 장이 필요함.
-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는 좋은 교과서의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며, 교과용도서 선정을 위한 연수 실시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교육과정이 변경되어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 교사 연수를 통하여 교사가 전문가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좋은 교과서를 선정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시본의 내용과 성취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반드시 필요함(현재는 단순 검토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 교사의 업무 처리 과정이 복잡함. 단순한 업무 처리 절차가 필요함.
- 책을 전시하고 각 책들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고, 2013년도 같이 그 책들을 웹으로 전시하여 선정하는 것은 학생에게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화면으로 보는 것과 만져보고 직접 읽어보는 부분은 많이 다름. 각 급 학교에서 전년도에 사용한 교과서가 별 문제가 없을 경우 그대로(동일 출판사)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도서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료를 제공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통과된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과목별 출판사별 전체 교과서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방안 제안함.(학교에서 교사들은 교과서 선정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교과위원회 사전 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전시본을 짧은 시간에 검토해야 하는 점이 어려움이 있음. 교과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가 많고 이에 따라 교과서 선정절차를 어려워하거나 심지어 불필요하게 여기기도 함. 교과서 선정·선정을 위한 교사용 안내 자료 또는 연수 제공이 필요함. 인정 심사에서의 평가 결과와 달리 출판사의 인지도, 영업결과에 따라 선정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 이는 교사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교과서, 흥미위주의 교과서, 기존 사용해 오던 출판사의 교과서 등을 손쉽게 선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선정 시기를 기간본은 7월, 신간본은 9월에 함으로써 정작 차년도에 사용할 교사는 이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교과서 선정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효과적임.
- 교과서 평가를 담당하는 학교의 지도교사들은 교과협의회를 거쳐서 학교의 지역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함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재를 득하는 현 체제가 바람직함.
- 학교마다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동과 교사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됨. 그러나 일부 교과목의 경우 분석해야할 교과서가 너무 많아서 교사들이 평가를 다 하기가 어렵다고 봄. 그리고 선정한 교과서를 다음해 실제 수업을 해 보

면 부족한 면이 나타나서 변경하고자 하나 보통의 경우 귀찮아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교사가 해당 도서를 선정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최근에 와서는 교과별 검정 통과본이 다수 권(어떤 교과에의 경우 20권에 육박하고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단지 교과서 외형 체계만을 보고 선정하는 것이 다반사임.
-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의 경우 과목 당 한 두 교사가 근무하는 소규모 학교나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지구별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자료가 제공되면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은 현재의 절차로도 충분하다고 봄. 공인된 기관에서 교과서 선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면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되리라 봄. 일정한 비율의 인근 학교 교사를 교과서 선정 위원으로 활용하면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의 경우 교과 교사가 선정한 결과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뒤집지는 않음. 따라서 교과서 선정에 있어 교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교과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중학교에서 특정 교과는 1명인 경우가 있음. 여러 명이 있어도 경력이 많은 교사가 주도하여 결정하면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담당) 교사가 선정에의 영향력이 가장 크나 소수의 주도로 혹은 교사들의 무관심의 결과가 반영되어 결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됨.
- 소수 또는 단독 교사의 평가보다는 인근 학교나 지역의 교사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 워크숍 등의 기회가 필요함.
- 교과서 선정 위원회의 기능, 업무 효과적 분업을 통해 선정 교과서들에 대한 체계적 기초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자료 제공이 필요함.
-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단위학교에서는 신학기 사용할 교과서를 6개월 전(즉, 3월 초에 사용할 교과서를 8월 말까지)에 주문하여야 함. 하지만, 짧은 검정심사 기간 등으로 교사들에게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학운위 심의 전에 교과서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를 교과협의회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교사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교과서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새롭고 참신한 교과서 보다는 기존의 교

수학습 방법을 답습하는 방식의 교과서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음.

- 교과서 관련 가장 민감한 분들이 바로 교사임. 이런 입장에서 언제나 교사는 마지막 결과물을 보게 되는 입장임. 이럴 때 교과서를 잘 해석해 놓은 교사용 보조 자료의 유무를 가장 주의 깊게 보게 될 것임. 따라서 평가 자료에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단원의 교수 학습 모델을 제시한다면 좀 더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선택이 될 것임.
- 교과서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로서는 본 업무(교수/학습)외에도 행정업무들이 많음. 그러므로 교과서 선정에 위한 평가라는 비중이 높은 업무는 물리적으로 소화 불가능한 과제임. 검토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검토인원도 많지 않음. 그러다보니 여러 교과서의 심층 분석보다는 브랜드나 외부관계인(기관)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임. 수개월에 걸쳐 수많은 위원이 심사한 교과서를 단 며칠 만에 몇 명이서 제대로 평가·분석하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음. 현재 발행사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평가 자료는 효과가 없음.
- 교과서 선정 시 담당 교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 담당 교사가 보통 2~3명이므로 각각의 의견이 다를 경우 표본 학생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전시본 검토 기간(전시본이 도착한 15일 이내 평가 완료되어야 함)이 물리적으로 부족하여 부실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과서를 선정하는 입장에서 교사는 교과서를 검토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부족함. 주요교과서 교과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어서 교과서 선정에 객관성을 기할 수 있지만, 수업 시수가 적은 일부 교과들은 검토할 교사의 부족으로 교과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교과서 선정을 객관적으로 하여 좋은 교과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에 참여하고, 교사의 선택권에 대한 재량권이 좀 더 확실하게 부여되어야 함.
-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연령이 높거나 권위를 지닌 교사의 의견에 교과서 선정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많으며, 교사와 출판사와의 이해관계가 교과서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음.
- 평가 기간을 확보하여 주고,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이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봄. 모든 교과서에 따른 자료를 선정전에 막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업을 위해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1-6.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측면에서

- 공정한 교과서 선정을 위해 학운위 심의를 받는 과정은 필수적이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집필자나 출판사 관계자의 입감이 작용했는지 여부, 여러 교사들의 협의가 바탕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 학교에서 정해지면 운영위의 통과는 의례적인 것에 그침.
- 거의 모든 학교운영위원들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교원이 심의한 목록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통과 절차에 불과함. 담당교과의 교사도 짧은 시간 동안 교과서의 장단점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전문가도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심의하고 선정한다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음.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교과 담당 교사의 최종 선택을 존중하여 거의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최소한 교과 담당 교사의 평가 항목 재구성이나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됨.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선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야 함. 보통 학교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되어 보통 10개 이상의 안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임.
-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과서 선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형식적인 추인 이외에는 검증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임.
- 현행 법규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의 교과용도서 선정에 관한 기준 등 전문성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절차로만 거칠 수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과목의 수가 많고 과목마다 3배수의 교과서를 추천하여 심의를 하며 학교운영위원이 교과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심의라기보다는 절차 준수의 의미가 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단순히 통과절차일 뿐 심의의 기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교과서를 가르칠 학교와 교사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학교운영위원들이 교과서 내용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대부분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의견보다는 전공교사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함.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축소가 필요함.
- 교과서 선정 심의는 교과협의회에서 추천한 3종의 교과서 중 1종을 선정하는

심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의해 결정하는 부분이 대다수임. 짧은 시간에 모든 교과목에 대한 교과서를 심의하기에는 역부족임. 학운위 심의를 위해서는 심의 전 교과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 져야 하며, 개별 발송이 어려울 시 교과서 전시와 동시에 학운위 위원에게도 통지하여 전시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 에 대해 교과협의회 선정 순위 제공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선정하 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교과협의회에서 순위 없이 3종의 교과서를 추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 모색).

- 전문가 그룹인 교과협의회에서 추천한 1~3순위의 도서를 비전문가인 학교운 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고, 경우에 따라 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이에 따라 학운위 심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 오히 려 학운위에서는 교과용도서 선정 과정에 필요한 심사영역의 적합성, 선정절 차에서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사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함.
- 학생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학부모가 교과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학교운영위원회는 실제로 교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이 선 정한 교과서를 그대로 심의해 통과해 주는 과정에 불과함. 교과서 선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형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됨.
- 현재 학교운영위의 심의는 교과협의회에서 올라 온 의견을 승인하는 형식으 로 진행되고 있음. 때때로 상위 1순위가 아닌 차상위 등이 선정되기도 하지만 교과협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함. 이러한 문제는 학교운영위가 교과서를 심의할만한 충분한 판단자료가 미비한 데 기인함. 따라서 교과협의 회의 선정 결과만이 아니라 선정 이유를 심의자료로 제공하고(현재 이미 제 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불필요한 사족이겠지만) 필요한 경우 교사 대표를 참 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보완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교과서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 각함.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학교 쪽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사를 거쳐 충분한 설명을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맡기는 것이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봄.
- 교과서 선정 자료의 적절성을 심의, 필요한 경우 교과서 선정 교사의 설명을 듣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교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사가 선정한 것을 추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학교운영위원회가 교과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에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대체로 단순히 추인의 성격임.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교원위원이 아닌 경우 교과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교과서별 평가 결과표를 보고 심의하는 것이 요식적 행위가 되기 쉬움. 교과서 평가를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수준의 평가와 학교 교원수준의 평가로 2단계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가 선정하고자 하는 교과서에 대해 가부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으로 판단됨.
- 교과서 선정은 학운위 심의 사항임. 학운위원이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교과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심의 한다기 보다는 교과협의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상정한 선정 안에 대해 선정 과정 등의 합리성 등을 심의한다고 볼 수 있음. 학운위 심의사항이기는 하지만 교과서 선정에 대한 학운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 교과서 선택에 있어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측면에서 볼 때 선택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공해야 할 것임. 현재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의 용이성, 경제적인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임.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과서 선정에 관한 전문성이 없음. 교사들이 평가한 자료에 대한 형식적인 행정의 절차일 뿐임.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형식적 절차가 강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봄.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교과 전문가인 교사의 교과 내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교과 외적인 부분인 전체 선정 교과서의 발행사간 균형 또는 가격 등 외부 요인에 대해서 평가 하는 등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에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하기에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음. 또한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선정, 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임. 형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아 보임.

1-7. 학교장의 최종 선정 측면에서

- 교과서 선정 소위원회의 평가에 반하는 학운위의 심의가 나왔을 경우 학교장이 이를 조사하고 더욱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권력을 행사하거나 불공정한 목적으로 학교장의 역할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학운위의 심의와 다를 경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봄.
- 학교장의 최종선택권은 형식적인 것으로 멈추어야지 학교장이 교과서의 선택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그리하여 최종선택권이란 권한의 범주를 명시해줄 필요가 있음.
- 학교장이나 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뿐 질 높은 교과서는 선정과는 무관해 보임.
- 일부 (특히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이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특정 출판사를 지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됨. 하지만 교과과의 (특히 부장 교사)동료 교사의 특정 출판사 추천을 묵인하기 어려운 현실임. 요즘과 같이 검·인정 교과서를 출판하는 교과나 출판사가 많아지면서 그 과정에 참여한 현장의 교수나 교사의 수도 급증하고 있음. 이에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또한 증가하게 된 것임. 따라서 교과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정한 자료 제시나 학교 현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함.
- 학교장은 교과서 선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함. 학교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추인 이외에는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임. 오히려 학교장 선생님이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교과서 선정은 교과 담당 교사에게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함.
- 학교장의 최종 선택은 존중되어야 함. 단 사립학교의 경우 전공 교사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함.
- 해당교과목의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이 순위를 변경하여 선정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므로 검정 인정 심사를 거쳐 검증된 교과서는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가 선정되어도 문제될 일 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검인정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임(도서 심사 시 충분한 시간, 인력, 예산 필요).
- 학운위 심의와 마찬가지로 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학교장이 그 결과를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과 지원의 최종 책임자는 학교장임. 그러기 때문에 교과서 선정, 대금 징수 등의 사항은 당연히 학교장의 최종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 학교장 또한 교과교사들이 선정한 교과서를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마치면 그대로 최종 승인해주는 과정이므로 학교장이 교과서 선택에 관여하는 경우는 드뭄.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인 학교장이 문제를 제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선정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함.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을 학교장이 번복하는 것은 정당한 일로 보기 어려움. 이런 점에서 교과서의 최종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봄.
-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해당 과목의 교사들에게 교과서 선정에 대한 타당성 설명 요구할 수 있음. 인근 학교와의 정보 교류 확대해야 함.
-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것을 추인하는 형태가 됨.
- 형식적 절차로 생각됨.
- 학교장의 경우 2단계에 걸친 평가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학교 교육 목적이나 학교 학생의 특성, 수준 등과 현저한 격차 또는 문제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 교사 및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재심을 불이도록 역할 제한함.
- 사회적인 분위기나 요구 등을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올바르게 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안을 평가 자료로 갖출 수 있어야 함.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교과 전문 지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교장에게 교과서 선정의 최종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평가에 참여한 교사들의 노고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친 결과물이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학교장의 최종 선정은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봄.
- 학교장은 교과서 선정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절차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교과서와 다르게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 학교장에 의해 최종 교과서 선정이 결정지어지게 되어 있음. 교사의 교과서 선정 과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sheet를 구성하여 선

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치지만 최종 결정은 복수로 올라간 교과서 내에서 학교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어 교사의 교과서 선정에 대한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학교장이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듯하나, 특정 교과서를 추천하는 등 간접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현재는 학교장의 영향력이 많이 낮아졌지만, 학교장의 최종 선정 측면은 무척 형식적이거나, 또는 무척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함. 그런 측면에서 학교장의 최종 선정 과정이 선정 과정에서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봄.

2. 교과서 선정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2-1.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의 개선 측면에서

- 교과서 심의 및 선정 절차가 법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므로 개선할 사항이 없음.
-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여 각 학교에서 선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의무 규정은 아님.> 이 내용이 학교에서는 의무 조항처럼 여기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실정에 맞게 제공 받은 평가 자료를 가공할 수 있음을 연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법규(교과용도서예 관한 규정)를 토대로 검·인정 교과서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위원을 위촉한 후 검·인정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까지 교육공동체 가운데 학생(학습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배제되어 있음. 이는 아직도 교과서는 가르치는 교사 중심의 편의성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임. 이에 교과서 선정과 관련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의 출판사 교과서를 선택하여 학생(학습자)에게 적용해보거나 학생(학습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재고되어야 함.
- 법규 측면에서 교과서 선정 그리고 책임까지 교과 담당 교사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함.
- 검·인정도서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선정 기준 제공을 강화해야 함. 선정 관련 부조리 발생

- 시 징계, 검·인정 취소 등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 추가해야 함.
- 교과서 선정을 위한 충분한 절차와 일정, 시간적 여건이 법규로 제공되어야 함. 1과목 1교사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선정, 선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육부보다 시도나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증대해야 함. 교육부에서 이번 역사 교과서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 제도가 필요함.
 - 보다 공정한 교과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생에게도 공지하여 전 시본을 확인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교과서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교과서 선정·선정 절차의 목표를 교사의 전문성, 자율성이 발휘되는 것으로 정하고 현재의 매뉴얼과 절차를 유연하고 간소하게 지정함. 교과서 평가를 위한 제도 보완(연중 상시 평가 체제 도입함.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참여시킴. 교과서 평가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평가 분야별 점수를 공개함. 사용 교과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
 - 소규모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협의회 구성 시 인원이 한정 되고, 1~2인의 협의회는 독단의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학교 급의 인근 학교 동 교과 교사들과 연합하여 5인 이상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할 필요 있음.
 - 교과서를 가르치고 난 후 교과서에 대한 재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지으면 더 나은 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임. 지금도 재선정 과정을 거쳐 교과서를 바꾸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 모든 교과목을 다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함.
 -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과서 검토 시간의 확보를 위해 교과서 제공 시점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시도교육청별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음. (예컨대 교과서 발행자는 주문이 이루어지는 시점 1개월 전에 교과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15일 이상의 검토 기간을 확보하여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에는 교과서 주문의 하한 시점만을 학기 개시 6개월(또는 4개월)로 명시하고 있음.
 - 시·도 교육청에서 교과서 선정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적정 비율의 타 학교 교사 교과서 선정에 의무적 참여를 하도록 함.
 - 선정 단위나 과정, 절차가 현재와 달라진다면 이에 맞추어 법규를 정비해야 함.
 - 법규의 개선보다는 부족한 안내를 세부 지침 성격으로 상세하게 따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선정과 선정의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교과별로 교원과 전문가 참여를 통해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 사회적 합의된 교과 또는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어려운 교과에 한해 국정도서화하고 그 외 교과의 경우 검정도서를 확대함. 수요자, 출판사가 합의할 교과서 가격 합리화 시스템, 전문기구(위원회) 구성해야 함.
- 교과서 선택에 있어 출판사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임. 사회적 요구, 단체의 요구, 대규모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바른 교과서를 선택했느냐는 문제임. 또 다른 측면은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고 많은 지식을 올바르게 전달하려면 적절한 비용을 들인 교과서가 손해 보지 않고 팔릴 수 있는 적절한 가격에 책정되는 것임. 참고서를 만들어 이익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교과서 판매만으로도 회사의 이익을 보장받는다면 현재보다 양질의 교과서를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선택 결과를 좀 더 투명하고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교과서의 가격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함.
-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별 기관의 행정 지침이 명확해야 함.
- 교과서에 대한 안내 자료를 출판사별로 제공 받아 일선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 함. 단 안내자료에 대한 쪽수, 종이, 저자 소개 배제 등은 규격화할 필요 있음. 교과서에 대한 수업 자료 등은 합법적으로 제공하되, 영업자가 학교 방문하는 부분은 일정 규제가 필요함.
- 객관적인 교과서 선정 및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평가 기준(안)을 제시하고, 단위 학교에서는 이를 해당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교과서 선정과 선정에 있어서 교사의 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교과서 선정에 대해 교수-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선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임. 이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역할은 교과서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교과서 발행사들의 불법 자료 배포, 영업 행위 등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교과서 선정 위원회에서 교과서 선정에 적극 방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함. 학교장은 교과서 최종 결정 시 교사가 정한 교과 순위 번복은 단순 서면 정도로 임의 변경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학교별 교과서 평가 및 선정 절차의 투명성, 교과서 선정 시 부정 방지 및 제재 등에 대해 법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보임.

- 규제의 현실성 있는 반영 필요함 .
- 교사들이 선정 시 꼭 고려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선정 전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막는 규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지침 마련 필요함.

2-2. 교과서 선정·선정 단위(학교,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의 측면에서

- 교사가 학교 업무와 수업 등으로도 벅찬 가운데 많은 교과서를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인데 교과서 선정 일정이 짧아 질적으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교과서 심사본이 나오면 당해 결정하는 일정보다는 1년 정도의 검토 기간을 확보하여 학기별로 교사 및 관련 위원들이 교과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학기별 1회, 총 2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과서 평가 자료 및 교과서 선정 관련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기를 바람.
- 교과서 선정과 선택과정에 대한 감독은 필요하다고 봄.
- 모든 결과를 통제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집단사고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단위학교에서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때 그 자격 대상을 학교운영위원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됨.
- 교과서 선정 및 선정 단위는 학교여야 함. 지역교육지원청이나 시도교육청은 선정단위가 너무 넓어 선정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음. 우리나라와 외국의 문화가 다르고 교과서의 의미 역시 다르므로 외국의 사례를 들어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문건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교과서 선정·선정 단위로는 시·도교육청 단위가 아닌 학교별 교과 단위(각 교과는 3년 간 하나의 출판사 교과서를 활용함)로 교과서의 출판사가 선정됨. 물론 각 교과의 교사가 개인 단위로 교과서를 선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입시 위주의 성적 산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놓고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음.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피하고 있으나 올해 처음 성취평가제를 적용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중학교 3학년생의 고입 전형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살

펴보니 교과별 학년 단위의 전체 석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음. 이에 학교별 교과 단위의 출판사 선정을 넘어서 교과의 교사 개인 단위의 교과서 선정은 아직 갈 길이 멀게 보임.

- 개별 학교에 선정의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함.
- 현행의 학교단위 선정선정이 바람직함.
- 교과서 선정 단위는 학교 단위로 학생의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 찬성함.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의 선정, 선정을 위한 리스트, 평가자료 제공이 필요함(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단위는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와 같이 소규모가 적정함). 검, 인정 교과서는 이미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심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엄선된 교과서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더욱 필요함.
-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 필요함.
- 교과서 선정은 단위학교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외부 출판사들의 부조리 행위를 지도·단속하고, 교과서 선정과정에 외부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 당해 교과목 교사가 3인이 안될 경우 교감, 관련 유사 교과 담당 교사도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모색함. 교사의 권한이 많아질수록 책임도 지고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행위가 발견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단위에서 엄격한 규정 적용함.
- 선정단위는 학교가 가장 타당하다고 봄, 교육지원청이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심의 선정은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는데, 한정될 소지가 크고, 교과서 부수가 대단위로 이루지기 때문에 조직적 부정의 소지가 더 발생할 소지 있음.
- 교과서 선택 단위를 지역교육청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하는 것은 논의 가치조차 없음. 당연히 교과서 선택은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함.
-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 단위 학교별 교과서 선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함.(지역 특성, 학교 특성 등을 반영한 교과서 선정)
- 현재는 학교가 선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미국은 지역 학교구별로 일부 책을 선정하고 최종 학교에서 결정하고 있고, 일본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심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음. 개별 학교보다는 교육청에서 지역적

특색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묶어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 학교에서의 선정 과정이 정해진 절차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평가표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선정 업무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학교 단위에서는 업무량이나 내용이 담당자의 역량에 비해 매우 과다하여 적절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소수의 교사가 참여하게 되는 학교에서는 몇 개 학교를 묶어 선정 단위를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평가표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공되고, 업무와 관련한 연수 등으로 해당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장기적 지원 방안이 필수적임.
- 학교에서의 교과별 교과서 선정과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개발과 제공 기능 강화 필요함.
- 단위학교 체제 유지해야 함.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 선정권을 지역청에서 행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이 경우 교과서를 지역청에서 구입하여 주고 학교가 학생에게 대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지역청에서 선정하지 않은 다른 교과서를 학교에 제공하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교과서 선정 단위는 기존의 평가자들이 일방적으로 출판사의 평가 자료를 가지고 하는 방식에서 전문가들의 평가 내용을 먼저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면 함.
- 시도별로 교과서를 광역화하여 선정에 있어서 학교(평가에 참여하는 교사)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광역 내 학교단위에서 불수용 시 단위학교별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것임. 그리고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체제를 보완해야 할 것임.
- 교과서 설명회 등 알권리 충족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별로 요청하고, 선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출판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되었으면 함.
- 현재의 단위 학교별 교과서 선정 방식에서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과서를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함.(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부합/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교과서 선정에 부합)
- 학교 단위의 교과서 선정 단위는 많은 행정력 및 객관성의 결여를 불러올 수 있음. 교과서 선정 단위를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내에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여러 개의 학교가 광역으로 교과서를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교과서 선정을 위해 각 급 학교 교사가 연대해서 교과서를 평가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됨.

- 학교 선정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청이나 교육청 등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학교 교사의 선택 재량권이 있어야,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음.

2-3. 교과서 선정·선정 과정 또는 절차의 측면에서

- 교과서 선정 소위원회의 협의가 학기별로 1회 이상, 연간 2회 이상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교과서를 바꿔 적용하는 시기를 한해 늦추면 좋을 것임.
- 2-1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봄. 지금의 과정에서 구비서류를 다소 수정하면 될 듯함.
- 단위 학교에서 교과서 심의 시 학생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심의 위원회 구성 시 학생 대표도 위원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각 교과별로 교과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교사 개인당 교과서 분석에 대한 장단점을 서술형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선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교사들이 선정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된다면 더 좋을 듯함.
- 발행사를 비롯한 저작자나 도서 판매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고 차단하는 역할이 아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장을 마련하는 기능을 해야 함. 또한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컨설팅을 계획 운영하여야 함.
- 각 교사의 개별 평가표를 제시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긴 하지만, 토론을 통해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이 개별 학교에 더욱 적합한 교과서를 찾아내는 방법이라 생각함.
- 선정 기간의 충분한 확보 및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과 평가 자료를 제공해야 함.

- 교과서 전시본의 경우, 출판사명을 삭제하고 3~5개월 정도 전시하여 학교의 교과서 선정, 선정이 심도 깊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절차 마련이 필요함.
- 학교의 선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함 업무 단순화 필요함.
- 보다 공정한 교과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생에게도 공지하여 전시본을 확인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교과서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학운위에서 동일교과목별 출판사 교과서를 두고 다수결로 선정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예: 금번 한국사 교과서와 같이 일부 출판사를 제외시키거나 치우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임. 학운위 선정결과를 비공개로 하여 전수 학교를 조사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장치 마련).
- 선정·선정과정 간소화 :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교과협의회의 심사결과만으로 신속하게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편화해야 함.
- 학교단위(인근학교 협의회) 교과협의회 => 학교 교과서(전교과 포괄) 선정협의회의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장 결정함.
- 교과서를 선택과정에 있어 그 교과서를 사용할 교사의 몫이 가장 큼. 그래서 교과 교사들의 추천이 가장 앞서고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순서로 진행되는 현재의 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봄.
- 교과서 선정 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검토 기한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이미 2-1에서 언급)과 교과서 검토 시 참고가 되는 평가자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함.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심의 시 교과협의회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을 교장이 다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보이지 않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인 선정의 과정으로 보고,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을 위해서 교과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위한 자료를 학교 측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특정 장소에서 교과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함(해당 과목에 대한 모든 교과서를 볼 수 있어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특히 동일 장소에서 동일 교과 선생님들끼리 교과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봄).
-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권역의 상황과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를 2-3권정도 정하고, 최종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평가표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지원청 등에서 미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한 교과서를 일부 심사, 지정(2-3권정도)하고 이 중 최종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일차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복수의 교과서 후보군을 선정하고, 학교에서는 이들 후보군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하되, 소수 또는 단독 교사에 의한 평가보다는 인근 학교나 지역의 교사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 워크숍 등의 기회 지원 필요함.
- 교과서 선정 위원회의 기능, 업무 효과적 분업을 통해 선정 교과서들에 대한 체계적 기초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자료 제공 필요함. 교과서 선정 위원회, 교사, 학교장의 편견 및 외압 제거를 통한 합리적 의사 결정 시스템 마련되어야 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단위학교에서는 신학기 사용할 교과서를 6개월 전(즉, 3월 초에 사용할 교과서를 8월 말까지)에 주문하여야 함. 하지만, 짧은 검정심사 기간 등으로 교사들에게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임. ⇒ 교과서 공급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 전 주문하여야'한다는 조항을 예를 들면 '5개월 전 주문하여야'한다는 조항으로 수정하거나, '교과서 선정을 위한 심사기간을 1개월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검토해야 함.
- 교과서 선정 과정 또는 절차의 측면에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상호 의견 개선의 원활함을 개선했으면 함. 선정 과정을 현재에는 알 수 없고 그 절차 또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방식이라 좀 더 투명했으면 함.
- 교과서 선정의 중심(또는 이에 준하는)을 교사에게 부여함.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은 제도 안에서 절차의 문제가 없었는지 등 행정 오류만을 확인하고 최종 승인하는 권한만을 부여함. 또한, 교과서 평가의 부담을 덜고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의 평가비중 20%, 지역교육지원청의 평가비중 30%, 교사의 평가비중을 50%로 하여 교과서를 선정하면 각 기관별 업무에 임하는 충실도가 높아질 것임. 그리고 심사 완료되어 공개된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분석하여 나온 여러 기관(분석 희망 신청 기관)의 자료를 가감 없이 평가기관(선정 단위) 제공함으로써 학계(기관)의 편중을 낮추고 선정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임.
- 담당 교사 평가와 담당 교사의 의견이 분분할 경우 표본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해 담당 교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장 최종 선정은 폐지되어야 함.

- 교과서 선정, 선정 과정에서는 교사에게 교과서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와 시간에 제공되어야 함. 교사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검정심사 결과표, 수정보완 대조표, 집필진해설서, 지역교육청의 권장목록 정도가 제시되는 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기간동안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교과서 평가를 위한 자료가 좀 더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또한,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교사의 결정권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고 학교장에 의해 최종 결정되어 지는 절차에 있어서 순위가 번복될 경우 교사의 의견의 전달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 학교 내에서 공정한 평가 및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나 장치(감시 및 보완)가 가장 필요해 보임.
- 선정 선정 과정에서 교과서 검토 기간 부족함. 교과서 선정을 위해서 내려가는 전시본 교과서마저 1권밖에 제공되지 못하는 바, 교사가 충분히 여러 자료를 보고, 검토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함.

2-4. 교과서 선정 후 수시 변경의 측면에서(다른 교과서를 쓰고 싶을 때)

- 교과서 변경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고, 교과서 선정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교과서 주문하기 이전에 학운위 심의 및 학교장 결정 등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는 것이 필요함.
- 교사에 따라 다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짐. 그런 부분은 같은 과정을 거쳐 교과서 선정을 바꾸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봄.
- 이 경우는 현 체제에서 그리 많을 것 같진 않음. 다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교과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재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한 번 정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논리를 정할 필요는 없어 보임.
-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별 교과 단위로 전체 학년을 하나의 출판사 교과서를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선정 후에 특히 학기 중에 수시 변경하거나 교사 개인별로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거의 허용되지 않음. 교과서 변경으로 인한 예산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년도에 먼저 주문을 받아 인쇄하였기 때문에 전적인 물량 부족을 겪기 때문임. 물론 다음 학

년도에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쓰고 싶을 때는 교과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내용을 결재를 얻은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반복해 변경 가능함. 하지만 교과서의 완전한 자유발행제나 인정교과서의 전면 시행이 되기 전에는 제도의 틀에 묶여 교과서 선정 후 수시 변경은 어려운 현실임.

- 교과서 선정은 1년 단위가 바람직함. 다만 선정된 교과서에서 큰 오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그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교과서는 나름의 체계와 계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필되었으므로, 신입생의 경우 한번 선정한 교과서를 졸업 시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차기년도의 신입생에 대해서는 선정 선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수시 변경 허용해도 좋을 듯함.
- 번거롭겠지만 처음 선정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현재도 필요시 일정 절차를 거쳐 기존 사용 교과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개선 방안은 필요 없음.
- 수시 변경에 찬성함. 선정된 교과서는 교사의 수업 방법 등에 의해 교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변경될 경우 교과서도 변경이 되어야 함.
- 최종 선정된 교과서를 제외하고 다른 교과서들의 순위를 정해놓고, 교과서 변경 사유 발생 시 선정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도 차순위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 교과서 변경시마다 새로 협의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통과시키는 방법은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림.
- 교과서 선정·선정 시기를 조정하여 매년 12월에 변경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결재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현재 규정은 변경시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교과서 선정을 수시 변경할 경우 교과연계성이나 수업 계획적인 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한 한 학년 단위로 하고, 재선정할 경우 처음 선정 절차와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선정해야 함.
- 교과서를 수시 변경하는 것이 3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봄. 실제로 교사들의 추천으로 선정된 교과서를 수업을 통해 확인해보면 책을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교과용도서 제3조 제2항에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규정으로도 수시 변경은 가능함. 개인적으로는 별도의 추가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좀 더 교과서간의 자율

경쟁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중론이 있는 경우, 수시 변경을 위한 재심의 제안자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겠음. (예컨대 해당 과목 교사의 50% 이상의 발의, 학교운영위 70% 이상의 발의 등). 이럴 경우라도 교과서 선정 검토는 당초와 같이 교과별협의회-학교 운영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

- 당연히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봄. 하지만 학년 간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목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해당 연도에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다음 학년도에는 학생,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음. 해당 교과서의 수정·보완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선정된 교과서가 학교 상황에 맞지 않거나, 연계된 다음 학년 군 교과서가 검·인정을 통과하지 못해 없는 경우 등 변경해야 할 요인이 발생함. 권역별 선정위원회가 운영된다면,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다시 한 번 선정된 교과서를 점검하고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매년 선정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수시 변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함. 연계된 다음 학년의 교과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때 선정의 심사 없이 그냥 동일 출판사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지난 해 사용 교과서를 고려하여 선정 업무를 재수행할 필요가 있음.
-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에서 선정한 후보군 중에서 변경할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처리함. 그렇지 않을 경우는 2·3과 같은 과정으로 처리함.
- 전체 대체는 불가하고 필요할 경우 필요한 부분만 교사가 수업자료로 활용하면 됨.
- 교과서를 선정한다는 것은 사실 학생들에게는 선정된 교과서를 반드시 구입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교과서 선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교과서를 학교에서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이라고 가정하면, 교과서 선정을 반드시 단수로 하기 보다는 복수로 구입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복수의 교과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고, 교과서 선정 및 선정을 수시로 변경하여도 무방하다고 봄.
- 매년 교과서를 변경한다면 인정의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대임. 각 출판사의 교과 내용이 다른 현재 매년 교과서를 바꾼다면

학생들이 올바른 학습은 불가능함.

- 수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함. 주변 환경(발행사 파산, 도덕적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자발적 변경 요구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수시 변경이 간결하도록 절차를 축소하고 최초 선정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근거하여 2순위, 3순위가 선택될 수 있도록(또는 처음부터 재검토) 해야 함.
- 담당 교사 전원의 동의 의견이 있을 경우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 현재는 교육과정기별로 교과서 선정,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연 단위로 교과서 선정 절차를 거치는 제도 수립이 필요함.
- 교과서의 수시 변경도 교과서 선정과정과 다르게 운영될 수는 없으므로 교과서 선정 절차와 동일하고 진행되어야 함. 만약 이 규정을 느슨하게 해 놓으면 최초 결정 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선정한 교과서가 쉽게 외적 요인에 의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임.
- 교과서 수시 변경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므로 선정과 선정에서 신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듯함.
- 교사들이 현재는 쉽게 수시로 바꿀 수 있는 환경 아님. 이 부분은 오히려, 교과서 선정 시 신중한 선택을 기할 수 있는 바이며,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수시 변경의 절차상의 확실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함은 필요하다고 봄.

2-5. 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

-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나 그런 영상을 담은 자료를 학교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청하였는지를 점검하면 좋을 것임.
- 좀 부정적인 견해임.
-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함. 지역교육지원청단위로 한다고 해도 설명회의 횟수가 만만치 않으며 제대로 하려면 전 교과에 걸쳐 모든 교사가 참석해야 의미가 있음.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인쇄 매체로서 교과서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연계되어 개발된 학습 자료를 폭넓게 이해하여 선정함은 물론 선택 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발행사가 충분히 자사 교과서에 장점과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단 일방적인 광고가 아니라 현장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이 되었으면 좋겠음.
- 객관성, 공정성 측면에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봄.
- 발행사를 알 수 있는 공동설명회는 광고와 다를 바가 없어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좋은 의견임. 시도 단위의 교과별로 공동 설명회가 필요함.
-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개최는 오히려 단위 학교의 선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 설명회와 같은 행사성의 사업은 교과서의 특성과 교수학습 적합성을 살펴기보다는 발행사의 규모에 따른 영향력의 행사로 전락할 수 있음.
- 현재 매우 다양한 종류의 교과와 도서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발행사 공동설명회는 현실적으로 단위학교 차원의 선정·선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고 생각됨.
- 시·도교육청 단위의 공동 설명회는 필요하나, 개별 설명회는 광고와 설명을 위한 홍보비가 필요하여, 교과서 대금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있음.
-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의도이나, 실제로 수많은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설명회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지는 의문임.
- 교과서 선정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는 일정한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겠으나 일회적 행사가 얼마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임.
- 동 설명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함. 설명회 참여의 대상, 시기, 횟수 등을 명확히 하여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원활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발행사의 설명회는 발행사간 경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발행사에서는 교과서 등 선정 대상만 제공함.
- 교육청 단위에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고, 발행사에서 교과서의 특징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교과서와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있음.
- 교육청 단위에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좋고, 발행사 개별적으로가 아닌 공동으로 교과서의 특징에 대한 자료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음.

-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에서 후보군 선정을 위해서는 허용 가능함. 학교별로 설명회 실시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모할 것으로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필요하나 꼭 설명회가 아니라도 각 출판사 교과서의 특징 비교 분석표를 제공하면 됨.
-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회 부여의 장점은 교과서 개발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심사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 교과서 설명 기회를 공개적으로 가짐으로써 음성적인 로비로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기 보다는 교과서의 질 제고에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임. 다만, 공동설명회 장소, 부대비용, 설명회 참석 교사들의 출장비, 번거로움 등이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설명회가 효과적으로 개최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이중으로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공동 설명회를 도입하려면 발행사와 교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방법을 찾아서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는 교과서와 출판사의 홍보지 정도만 제공하고 있음. 분명 설명회는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임. 다만 우려되는 점은 대형 출판사의 경우 물량 공세가 예상됨. 따라서 적절한 규모로 제시하는 절차가 필요함.
- 반대함. 공동 설명회 주관은 발행사가 아닌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또는 그러하지 않지만 인정되는) 전문기관 또는 학계이어야 함.
- 지역별로 필요할 경우만 기회 부여를 하면 좋을 듯함.
- 검인정 심사를 거친 교과서이므로 불필요함. 오히려 객관성 및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또는 교과서 심사기관의 평가 자료를 좀 더 심도 있고 다양하게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함.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발생사가 참여하게 되면 교과서의 홍보에 치중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교과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 어려울뿐더러, 군소 출판사들이 대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임.
- 공동 설명회를 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음. 단위는 지역별인지 학교별인지,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으며 일선 학교 참여도 역시 미지수임. 부가 서비스 홍보 등에 치중할 우려도 있어 보임.

- 필요하다고 생각됨. 교사들에게 교과서 저작진의 집필의 의도, 기획방향, 그에 따른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등 총괄적으로 선택에 필요한 요소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함. 발행사들도 제품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교사들에게 알릴 수 있는 창구는 필요함.

2-6. 교과서 평가 전문 기구 신설의 측면에서

- 평가 전문 기구에서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교과서 선정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므로 자칫 학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함. 학교마다 수준이나 문화, 여건 등이 다양하므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학생 수준에 맞는 교과서가 선정되려면 학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므로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필요하다고 봄.
- 이미 검정 또는 인정심사의 절차를 거쳤는데 다시 교과서를 평가하는 전문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음.
- 학교: 교과서 선정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야 함. / 시·도교육청: 교과서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 제공과 평가를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서를 조직해야 함. 또한 단위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과서 선정을 돕기 위한 컨설팅단을 구성하거나 지도·감독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야 함.
- 교과서로 수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현장 학교의 교사인 만큼 현장 교과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나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함.
- 평가 전문 기구의 신설은 자칫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저해할 염려가 있음. 검인정을 통과한 이후에 또다시 평가 전문기구를 두는 것은 옥상옥의 의미가 있음. 시도 교육청에서 교과서 평가를 통한 선정 목록 작성 발표는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교사의 자주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농후함.
- 교육부에서 선정 관련 공통기준과 교과별 기준 예시안을 제시해주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그 기준을 참고하여 시도의 여건 및 교과별 특성을 살려 선정 기준안을 확정하여 평가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이미 검, 인정 심의를 거친 교과서에 대해 평가자료를 작성하는 일을 전문기구에서 전담한다면 수월한 측면이 있겠으나 평가자료의 중립성, 신뢰성을 확

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수반됨. 교과서 선정은 출판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 하나의 전문기구를 신설하여 평가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함.

- 심의위원회 같은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함.
- 국·검정체제에서 검·인정도서 체제로의 변화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되었음. 시·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자료를 작성하기 보다는 전문 기구에서 평가하여 통일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가기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기관이어야 하며, 기구에 의한 평가는 책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심의위원회에서 평가까지 할 수 있는 방안,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평가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제공하는 것이 시간 예산 절약으로 효율적이라 판단됨) 아울러 출판사의 부조리 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인정도서 제도의 보완을 위해 심사·감수전담 또는 개발지원을 위한 전문기구의 신설 또는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연계해서 교과서 평가 전문 기구도 긍정적으로 판단됨. 단 전문기구는 심사와 같은 식의 교과서 평가를 하기 보다는 현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 심사기관(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들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해야 함.
- 전문기구 필요 없음. 대안으로 교육부에서 교과서 개발에 따른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과서 선정은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 정도, 지역 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 지도를 담당하는 교과협의회에서 선정할 필요 있음.
- 교과서를 평가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하면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신설에 찬성함.
-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그 취지가 민간 차원의 생산과 소비를 선택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교과서 평가 역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것이 검인정 교과서의 선정이나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견해를 제공할 경우 검정의 취지를 벗어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또한 부정적임. (미국의 경우는 자유 발행제이므로 교육구 차원에서 사용권장 목록을 제공하기도 하나 이를 검정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교육청 단위에서 교과서를 선정해 왔으므로 학교 현장에 그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또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의를 요함.)

-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전문 기구의 신설과 아울러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 해당 과목에 대한 교과서 평가 기관에서 평가 후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제공하면 교과서 선정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리라 봄.
- 어떤 성격의 교과서 평가 전문 기구인지 잘 모르겠음. 전체적으로 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당하는 평가 전문 기구 신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선정만을 지원, 관리, 감독하는 기구인지가 명확했으면 함. 전체를 담당하는 교과서 평가 전문 기구 신설이라면 필요하다고 봄. 하지만 선정만을 담당하는 기구라면 시·도교육청에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가능할 것임.
- 점인정 심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선정만을 담당하는 평가 전문 기구는 비효율적이며, 선정을 돕는 기구라면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부서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 적절함.
-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에서 실시할 후보군 선정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필요하나 주된 역할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러한 역할의 실현 가능성과 이후 교육적, 출판업계 등과의 파장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함.
- 교과서 검정, 인정 심사가 위탁기관(평가원 등)과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평가 전문기구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교과서 평가 전문 기구 신설에는 찬성임. 하지만 출판사와의 사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임. 결과물만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과서의 제작 기법,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평가가 들어가야 함. 또한 합격한 교과서에 대한 평가이므로 점수제보다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하는 방식이었으면 함.
- 반대함. 점인정심사기관(위원)과 다를 바가 없으며 제도에 반대되는 것임.
- 교과서가 점인정 심사를 거쳐 통과되므로 전문 기구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교과서의 평가는 물론, 선정, 선정, 수시 수정·보완 업무 등을 전담하는 교과서 관련 전문 기구 신설이 필요함.
- 교과서는 발행사가 제출하고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됨. 이때 교과서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평가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음. 평가 Fact가 교과서 선정과 관련된 부분과 다르다면 심사 시 보완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이 때 관련 평가를 위해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임. 지금도 교과서 심사료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임.

- 전문 기구 구성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으면 좋을 것도 같음. 기구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면 학교에서 선정, 선정 시 참고하는 수준 이상이 될지 의문이 듦.
- 이미 검인정 심사 절차를 거친 교과서에 대해서 교과서 평가 전문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봄. 일정 수준과 자격이 있는 교과서에 대해서 각 학교 교사들이 재량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에 대하여

- 교과서를 매개로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며 수업활동이 이루어짐.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지는 하지만 그래도 교과서는 수업의 가장 중요한 자료임. 교과서의 가치를 감안하여 교과서 선정을 더욱 공정하고 신중하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 검인정 과정이 질적으로 잘 이루어져 하고, 학교에서 교과서 검토에 대한 1년 이상의 시간 확보가 필요하고, 교사나 교과서 선정에 관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좋은 교과서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사전 연수 및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봄.
- 교사를 교과와 전문가로 본다면, 교사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봄. 하지만 이해관계의 충돌을 빚는 경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봄. 교과서는 이해관계의 충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한국사를 둘러싼 지난 경우를 보면 이는 교과서 선택 선정 이전의 문제의 본질이 더 크다고 보여 짐. 이러한 경우 때문에 교사의 교과서 선정 선택권이 축소된다면 이는 안 된다고 생각함.
- 교과서 집필진의 사회성, 책무성을 제고하여야 함.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견지하며 현장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에서 집필진을 선정할 때 공개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여 필터링을 더욱 정교화 해야 함.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교의 경우 이념적 흐름에 따라 교과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음. 교과서 선정 위원 임명 조건을 정교화·명료화하여 연령별, 성별, 가능하면 교직단체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요구됨.
- 학교현장에서 질 높은 교과서가 선정되어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보다는 교사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서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됨.

- 교과용도서에 관한 법 규정을 보면,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함. 또한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하며,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함. 따라서 교과서의 선정 과정에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공정한 자료를 심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함. 그리고 “교과서”든 “지도서”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자료임에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교의 실정이나 학생(학습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교과서 선정은 자유로워야 함. 그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자유발행체가 이상적이겠지만, 국가 차원의 입시가 치러지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검·인정제를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봄. 보완의 방향은 수요자의 기호에 맞게 현장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 되는 것임. 특히 현장의 교육 전문가이며 수업을 설계자인 교사들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
- 교과서 선정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됨.
-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제고 및 단위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좋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 선정에 관한 전문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
- 교과서 선정 선정에 대해 학교의 자율권이 우선 되어야 함/교육과정 개정의 기간이 안정화되어 학교가 수시로 교과서를 선정하고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없애고,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동교과 교사가 소수인 경우 지역별, 교과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1차 선정 및 의견 조희 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교과서 선정이 정치적 이해 집단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됨.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꼭 필요함. 교육부의 교과서 선정 시 권력에 의해 휘둘리지 않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교과서를 비교·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사, 학생, 학부모, 학운위 위원

등의 학교 자체 선정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함. 선정에 대한 외부 영향을 차단하고, 그 선정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출판사 설명회 등은 오히려 학교 단위의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선정에 대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연수 및 부조리 행위 단속을 위한 지도·감독에 힘써야 함. 현행체제에서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도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 교사들에게 교과서를 비교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제안사항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교과서 선정사항은 비공개로 하여 전국적으로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검인정심사시에 평가자료도 함께 평가 작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도서별 첨부자료로 제공하고, 검인정을 통과한 도서는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가 선정되어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교과서 선정에 따른 교사들의 고충과 업무과중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는 바 동일과목의 출판사의 도서를 두고 학운위에서 선정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출판사의 과다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됨.

- 교과서 선정과 선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는 것임. 따라서 선정과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문과 공급시기를 실제 학기 운영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형식적인 선정·선정 관례를 깨뜨리고, 발행사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엄정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전문기관 운영과 이에 따른 평가기법 개발 등). 동일 교과에 너무 많은 발행사가 참여하여 수준 낮은 교과서가 남발되고 교과서 시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부분적인 공동 공급제, 심사 시 출원도서 수 제한(심사, 추천) 등 자율적인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교과서 개발, 수정 심의 등은 당연히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할 필요 있으나, 선정은 실제 교과서를 가르치는 지도교사들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그리고 보완으로 소규모 학교 등에서 1~2인이 심의할 경우 독단의 여지 있으므로 같은 학교 급의 인근 학교 교과별로 5인 이상의 교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 있음.
- 교과서의 종류가 너무 많아 일선 학교에서는 그 많은 교과서를 모두 확인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있음. 과학의 경우 10권이 넘는 출판사 책을 짧은 시간 안에 훑어봐서는 절대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란 어려움. 미국처럼 교과서의 비중이 적은 학교(수업시간에 교과서 없이 주로 수업)시스템에서라면 교과서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처럼 교과서의 비중이 크다보니 이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게 됨. 현재의 문제점은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시스템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 않는가. 외국처럼 지도교사의 수시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면 우리는 중간, 기말고사에 모든 비중을 두는 평가시스템으로 지도교사의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될 것임.(지도교사마다 다르게 가르쳐도, 시험문제는 같게 평가해야 되는 현재의 시스템이 문제)

- 현행의 선정 과정에 특단의 제도적 보완을 덮쳐주는 것은 자칫 검정제도의 기본적 취지와 질서를 흐트릴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학교 현장에서의 교과서 선정이 너무나 단기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각 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를 근거로 한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현행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전문성, 그리고 상식과 이성적 판단에 따라 공정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함.
- 교과서 선정을 위한 자료 제공해야 함(해당 과목에 대한 전체 교과서, 출판사 목록, 저자, 쪽수, 가격 등). 전체 교과서가 모두 있는 선정 장소 필요함(소규모의 학교인 경우 해당 학교에 가지 않고 평가 장소에서 평가 후 과목에 대한 자료를 해당 학교로 제공). 해당 학교의 교사 외에 일정한 비율의 타 학교 교사 교과서 선정에 참여시킴(평가 후 자료를 학교에 송부).
- 교과서는 이를 활용할 교사가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많은 종수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고 더 많은 종수의 교과서가 인정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교사가 이를 수행하는 데 업무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임. 교과서 선정제도는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면서 교사의 선택권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교과서는 직접 사용자인 교사가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검인정 교과서의 많은 종수는 업무 수행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음. 업무의 중심점은 교사이지만 교과서 선정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의 마련, 제공으로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면서 교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 교과서 선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실과 믿음 사이의 충돌과 갈등임. 이의 해소를 위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될 사항에 대해서 '교과서 평가 전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과서 선정 · 선정에 학생들의 참여도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초등학교

와 중학교 교과서는 지역청 단위로 선정하되, 복수로 선정하여 그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교과서 외형체제 및 질 제고, 교과서 가격 자율화에 따라 현행 교과서 소유제를 교과서 대여제로 전환 필요함. (일부 학생 활동용 교과서는 1학생 1교과서로 유지하되, 텍스트 중심의 교과서는 대여제 도입 필요)하고, 동일 교과에서 복수의 교과서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교과서 활용도가 낮은 교과목(체육, 미술 등)은 과감하게 학생용 교과서를 없애고, 교사용 워크북(교사용 워크북에서 학생용 지도자료 추출하여 수업에 활용)을 다양하게 개발 보급하고, 학생들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도록 체제를 바꾸어야 함.

- 교과서는 완성된 책이 아님. 학생과 교사, 출판사가 서로 완성해 가는 책임. 따라서 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현장에서 활용되면서 좀 더 개선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롤 모델임. 따라서 현재의 제도나 체제를 계속 좀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가야 함. 교육부, 학부모, 학생, 집필자, 출판사가 항상 서로의 의견을 말하고, 조정하고, 개선해 가는 모니터링 기간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함.
- 명확하게 선정을 유도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함. 선정 과정의 투명한 행정과 이를 공개토록 하고 제도안에서의 선정에 있어 문제가 없을 시 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권을 정부(이하 시도교육청 등)가 보장해 주어야 함. 교과서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이권을 차단하여 아무리 좋은 교과서라도 도덕적으로 불충분하다면 사용치 못하도록 해야 함. 교과서 발행사, 저작자, 발행사와 계약이 체결된 총판, 서점 등의 불공정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선정을 위한 도서목록에서 제외하고 발각 시 즉각 공개하여 안내하고 기 선정된 학교는 재선정토록 조치해야 함.
-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개발 비용이 공동 배분이 아니므로 교과서 선정 영업을 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과서에 대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교과서를 선정하고픈 심정도 충분히 상존함. 따라서 출판사에서 교과서에 대한 안내자료 및 수업 자료 제공에 대한 부분을 합법적으로 수용하고, 설명회나 자료를 통해 교사가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 위에 제시된 것처럼 많은 변인을 도외시할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이해관계의 중심은 출판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 따라서 출판사가 선정 행위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를 해야 함. 교과서 사용자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므로 선정 및 평가에 참여하는 교사의 평가를 가장 중요시하는 선정 시스템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선정 영역을 현행 단위 학교에서 지역 교육청 단위로 넓혀 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부합되도록 함.

- 교과서를 개발하는 발행사들은 합격교과서가 많은 선정이 되기를 바램. 이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과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것 또한 현실임.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과서 선정을 위해 교과서에서 지원하지 않는 많은 자료(CD-ROM, 교수지원 on-line site, 다양한 교수 지원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것들도 발행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또한 요구되어 지는 것들로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교과서 선정과정에서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철저히 배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야 함. 선정은 공정하고 발생된 문제는 강한 처벌로 대응 하는 것인 앞으로의 건정한 교과서 개발 및 선정에 도움이 될 것임.
- 현재 교과서 선정, 선정이 발행사의 영업 강도와 부가 서비스 몰량 공세, 특정 교사의 주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듯함. 이러한 관행을 끊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를 공정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발행한 발행사와의 소통의 채널이 열려있어야 함. 제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자료도 보지 못하고, 단순히 교과서만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 있음.

부록 7. 델파이 조사 2차 서술형 의견(답변 그대로 인용)

1.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 개선안

	비고(의견)
(1)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간은 늘리고 주문시기는 늦추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시기를 12월까지 늦추도록 함. - 선정, 선정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나 주문 시기를 늦추어도 되는지는 점검이 필요함. 전체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을 고민해야함. - 절차가 정교화 되지 않으면 기간 증가 의미 없음. - 선정기간 늘림은 찬성하나 주문시기 등 후속업무에 지장 초래하면 안 됨. 일련의 업무들을 연계하여 보장할 필요 있음. - 생산 공급을 고려하는 선에서 개선하도록 함.
(2) 교과서 선정 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명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선정, 선정 시 현재도 교사의 의견을 반영함. 안 되고 있을 때가 문제이지 굳이 명시하고 안하고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과정보다는 실질적 의견 반영 결과(사유)를 내도록 명시하도록 함. - 반영은 필요하나, 명시가 불가피하다고 보이지는 않음.
(3)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명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의 공정성 문제임. (직업 가치관 등) -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잘못하면 외부압력으로 변질 우려 또한 있음. - 과다하게 안배할 경우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교사가 선정한 교과서에 대하여 학부모 의견 수렴함. - 학부모가 교과 교과서에 식견이 있어야 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음. 학부모의 재능기부처럼 교과별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좋을 듯함. -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 청취 의미 없음. -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라는 문구 명시 필요함(현재 잘 안 되고 있으므로).

	비고(의견)
(4)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교과서 선정과 동일하게 함. - 교과서 변경을 자유롭게 할 필요 있음. - 교육과정 변경이나 내용의 부적절함으로 인하여 변경이 자유롭도록 할 필요 있음. - 현재 규정에 없는지, 없다면 규정은 필요함.
(5)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관련 교과목의 교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선정이 교사에게는 부담임. 담당 교과도 아닌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봄. - 관련 교과목이 아니라 해당 교과목의 교사 *인을 명시해야 함.
(6) 교육감은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외부 압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과정을 지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다면 규정으로만 남을 것임. -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 명확하지 않음.
(7) 기존 도서의 1/2 이상을 고치는 '개편'을 국정만이 아니라 감인정 도서에도 적용하는 규정을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문항은 선정, 선정과는 무관함. - 국정도 이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음. 점검 절차도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 국정/검정/인정 모두 적용되는 규정임. - 1/2이상의 개편은 개편이 아니라 새로운 교과서의 출원임. 같은 교육과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1/2이상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없음. 시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개정은 필요하며, 수시개정을 1/2이상 한다는 것은 교과서 정가에 그만큼을 반영해 준다고 할 때 가능하나, 이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임.
(8) 감·인정 교과서의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규정을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령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도 가능함. - 상한제는 필요함. - 가격 상승을 예측하게 되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됨. - 가격상한제는 찬성하나 어떻게 적용할 건지가 더욱 중요함.
(9) 교과서 구입비용을 학교 예산회계로 할당 편성하여, 선정 시 총액 내에서 가격을 보고 선정토록 하는 규정을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를 예산에 맞추어 선정하다보면 교과서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 학생 수 대비 주문부수 수량 과다 주문, 재고량 폐기 등으로 예산 낭비가 됨. - 가격으로 인해 다양한 교과서 선정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비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중학교는 가능하나 고등학교는 불가능함. - 자칫 교과서 가격이 선정의 주요 조건으로 작동될 우려가 있음. - 학교에 예산이 없는 경우 교과서 선정에 예산 문제로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해질 수 있음. - 총액은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이 기준 때문에 원하는 책을 선정 못할 수도 있음. - 학교회계로 구입하여 학생에게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함. - 교과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내리려는 정책으로 보임. 편성된 예산안에서 구입하라는 제한은 좋은 교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질 낮은 교과서를 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2. 교과서 선정 단위에 대한 개선안

	비고(의견)
(1) 현재와 같이 개별 학교 단위에서 선정·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마다 학교 여건과 학생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행처럼 학교단위로 선정,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 현재와 같은 체제는 학교에 부담이 됨. - 최종 결정은 개별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고등학교에 합당함. - 출판사 간 과당 경쟁 방지임.
(2)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교과서를 선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특성 반영이 미흡하고 책임에 대한 문제임. - 추천 목록 또는 최소화된 선정안 제공함. - 초, 중학교 교과서 경우 해당 됨.
(3)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교과서 선정을 광역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특성 반영이 미흡하고 교과서 선정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 교육청에 있으므로 발행사의 로비 등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음. - 시도교육청 수준은 너무 단위가 큼. - 독과점 가능성 있음. - 현재와 같은 선출직 교육감 제도에서는 오히려 교육감 이념 성향에 영향이 편향될 우려가 있음.

	비고(의견)
(4) 교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학교들은 자발적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교과서를 선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위 구성은 학교의 자발적 판단이어야 함. - 현행 체제로 간다면 학교 규모를 정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화하는 방안도 있음. - 법규정에 *명 이상의 선정위원회 구성하도록 명시함. - 공동 선정은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함(장소, 인력풀 등). - 광역화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는 사항임.
(5) 시·도교육감이 관내 학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체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개별학교'로 다원화 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에 의해 선정주체가 정해질 경우, 여러 가지 우려가 예상됨. - 선정 주체가 대형(교육지원청, 교육청)일 경우 불법, 부조리 감시가 어려워짐. - 선정주체를 다양하게 한다면 학교특성(규모 등)보다는 교과목특성, 지역특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학교에서 안을 선택하게 함. - 기준만 분명하다면 좋겠음. - 선정 주체 결정 기준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가능함. - 다원화하되 결정권을 단위학교로 두고 교육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큰 틀은 광역화로 규정하고 단, 개별학교에서 타당한(특별한) 요청 시 수렴과정을 통해 승인하는 규정이 필요하도록 생각됨. - 교육감 권한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3.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안

	비고(의견)
(1)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이 모호함. 어떤 과정의 조치를 간소화할 것인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보다, 지원이 문제라고 봄. 절차가 간소화되면,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학교단위에서는 간소화하나 이를 위해 미리 교육청 단위에서 1차 선정해 목록 제공 필요함. - 얼마나, 어떻게 간소화한다는 것인가?

	비고(의견)
<p>(2) 전시본 제공 시, 지도서 및 학습용 CD 등도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전시장 운영함. - 교과서보다는 지도서를 보고 교과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 CD가 지도서에 포함된다는 현행 초중등학교 국검 인정 구분고시를 개정하여 CD와 지도서 선정여부는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함) - 지도서, 학습용cd 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함. - 개별학교 단위에서 선정 시 제공함. - 학교별로 지도서까지 제공하게 하면 교과서 선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비용 측면에서 고등학교는 단위학교에서 선정하고 초중학교는 지역청별로 선정하는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타당할 수 있음. - 검인정 승인된 교과용도서는 모두 제공해야 함. - 선정 선정에 도움이 될 것임. - 지도서, cd 등은 교과서 합격 발표 이후 개발됨. - 전시본 제공물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이는 교과서 정가에 반영되어야 함.
<p>(3) 출판사의 인지도에 따라 교과서 선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시본에서 출판사명을 삭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변형된 형태의 부정을 유발함. - 학교에 모든 관련 정보를 제대로 주고 선정, 선정하도록 해야 함. - 인지도 역시 전문성임. - 전시본을 별도로 제작하는 비용만 추가될 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출판사명 삭제가 인지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적합한 대안은 아님.
<p>(4) 교사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전시본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인 시간 및 전시장소 확보 등 어려움이 따름. (※출판사의 경제적 부담 또는 교과서 가격 인상요인으로 교과서의 특성에 따라 웹전시 선택으로 실시) - 선정, 선정 기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 교과서연구재단, 평가원, 교육청 등에 교과서 전시관을 마련하여 상시 비교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비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기간? 특정장소?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 심사를 거친 도서이므로 지나친 기간 연장은 무의미함.
(5) 교과서 선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전문가가 아님. 학생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답변할 수 있음. - 학생들의 의견을 따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검토 과정을 거침. - 교과서 선정 시 학생들은 그 과목에 대한 사전 지식 등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임. - 교사, 학부모만으로도 충분할 듯함. - 학생들의 의견과 무관한 사안임.
(6)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만 파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교과전문가는 아님.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옳다’는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한계’라는 측면으로 접근한 응답임.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할 수 있음. - 교사의 교과전문성을 인정해야 함.
(7) 지역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과서를 2~3권 선정하고, 학교에서는 선정된 교과서 중에서 최종 선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 어촌 소도시에서는 가능할 듯하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적합하지 않음. - 지역차원의 선정위원회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학교와 교사의 다양성 반영 미흡함. - 절차를 2중으로 규정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의 낭비 요인이 됨.
(8) 학교는 교과서 선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이 보안의 문제를 갖고 있진 않음. 이 설문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해야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듯함. - 결정한 것을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음. - 비공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움. - 모든 학교가 선정이 완료되면 즉시 공개토록 해야 함.

4. 교과서 선정 후 변경에 대한 개선안

	비고(의견)
(1) 교과서 변경 시, 선정 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선정, 선정을 위해 모든 교과서를 다시 보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변경 보다는 재선정이라고 할 수 있음.
(2)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선정 변경 절차를 강화하여,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하되 교육적인 판단 하에 변경을 쉽게 하도록 하여야 함. - 이전에 선정된 교과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제점 해결 어려움이 있음. - 학생 의견까지 청취하는 것은 어려울 듯함. - 강화할 타당한 이유는 없음. 선정과 동일하면 됨. - 실제로는 변경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변경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최초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3) 변경 가능한 사유를 '선정 과정의 하자나 불법 행위 및 발행사의 공급 문제 발생' 정도로 제한하여, 학교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변경은 못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 계획 수립하여 대응, 지원함. - 가장 중요한 교과 교육과정 반영과 교과서의 질에 대한 문제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대책 미흡함. - 지도하다보면 학습 상황에 맞지 않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변경 사유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명시 어려움. 변경에 대하여 지역청 차원의 심사로 가름. -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변경의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5. 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획 부여에 대하여

	비고(의견)
(1) 발행사의 경쟁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필요 없다(객관성·공정성 훼손, 교과서 가격 인상 요인, 광고와 다를 바 없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설명회를 갖는 것의 장점은 있으나 그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함. - 장기적으로 연구하되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학생의 학습 형태, 습관 등에 따라 어려움이 따름. -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선정, 선정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비고(의견)
	<p>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경쟁 기회로 설명회가 적절함. 발생사의 교과서를 홍보할 객관적 절차임. - 발행사에게 공식적인 설명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설명회를 교과별로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공동 전시장만 운영함. - 학교 단위보다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설명회가 좋겠음. - 시도교육청의 추천 목록 마련 단계에서 실시함. - 공인된 전문기관 또는 학계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 것이라면 찬성함.
(3) 지역별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공동 설명회를 부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역별 요구’의 주체와 범주가 사전에 명시되고 논의되어야 함. - “요구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여 얻는 큰 의미나 효과 없음. - 일괄 설명회가 필요함. - 공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상황 마련함(지역적 독과점 있음). - 필수화해야 함. - 지역별로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함.
(4)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발행사가 지원하는 현장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의 설명회를 제공한다.	
(5) 발행사가 자유롭게 설명회를 개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사에게 직접적인 설명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 발행사에게만 맡겨두면 안될 듯함. - 공정 경쟁이 아님. - 자유롭게 개최하도록 하는 경우 과잉 경쟁 발생 우려, 설명회 과정은 공정하게 교육청 등에서 관리해야 함.
(6) 공동 설명회 대신에 교과서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 설명 자료를 출판사에서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에서 평가자료를 가급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안내함. - 교과서만으로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 출판사가 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다면 설명 자료로 대체함.

	비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 자료의 성격, 내용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음. - 보충 설명 자료를 만드는 데 비용 추가 되어 교과서 가격 상승 우려됨. - 교과서 선정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설명 자료 제공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음성적인 전달이 아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6.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에 대하여

	비고(의견)
(1) 현행 교과서 소유제를 대여제로 전환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를 한다고 해도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교과서임. - 교과서 구입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포함하여 교부하면서부터 시범운영하여 점차 확대함. - 학교별로 자유롭게 실시해야 할 사항임. - 교과서에 주석을 다는 등 학생마다 사용하는 형태가 다름. - 우리나라 정서상 교과서는 소유해야 함. - 대여제는 워크북 성격이 아닌 교과서만 가능함. - 대여제로 전환하되,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전환함. - 외국에서 적용했다고 우리나라에서 모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님.
(2) 교과서를 복수 선정하여 수업에서 교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교육과정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를 여러 권 갖고 있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함. - 현행 교실 수업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학습량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복수 선정(교과서 가격 문제)보다는 교과서 사용의 자율이 적절함. - 교과서 대여제의 경우 복수 선정 가능함. - 다양한 교육 형태로서 선정기관이 원한다면 못하게 할 이유 없음.

	비고(의견)
<p>(3) 교과서 활용도가 낮은 교과는 학생용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 또는 교사용 워크북(교사가 별도의 학생용 자료 만들어 배포)으로 대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과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 교사용 워크북은 현행 법령상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함. - 디지털 교과서는 교실 환경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시트지 등으로의 배포는 쓰레기만 남발함. - 서책의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디지털, 워크북이 활용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출판사와 해당 교과 교사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교육적인 효과, 예산의 낭비 방지, 환경보존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함. - 보조교재로서는 사용가능하나 기본 교과서는 있어야 함. - 디지털교과서는 학교에서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가 서책보다 낮지 않음.
<p>(4) 교과서 주문과 공급의 유통경로를 '학교-발행사'로만 일원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발행사의 책무성을 강화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대한 문제점이 함께 고민되고 보완될 수 있어야 함. - 학교와 발행사가 직접 업무 처리하는 것은 공정성 등의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음. - 학교에서 직접 주문하고 공급하면 교과서 가격을 낮출 수 있음. - 선정과의 관계 설정 필요함. 선정 절차 없이 주문 공급 일원화는 부적절함. - 공급 단계를 1단계 감축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 예상됨. - 개별발행제로 유통비용을 줄이고 발행사 책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유통경로는 철저히 교사(학생) 입장에서 논의 되어야 함.

기타 의견 :

- 교과서는 학교의 학습자 수준과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학교단위의 선택이 타당하다고 봄.
- 교과서 선정 선정에 있어서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확대 및 그에 따른 책무성 제고해야 함. 시도교육청은 필요시 지원역할 충실하도록 함.
- 교과서 선정 선정과 주문 공급 문제에 관해서는 학교와 발행사가 직접 접촉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교과서 선정 선정 단위를 광역화할수록 대단위 형태의 공정성 시비 대상이 될 수 있음.
-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원청 보다 학교의 자율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가야 함.
- 학교운영위 위원들이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공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학운위에 서는 공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공 교사가 적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공동으로 선정,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과서 선정과 선정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함.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선정을 위하여 일정 인원 이상의 협의회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교과서 주문 공급 시스템 수정은 꼭 필요함.
- 특정 소수 교사나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교과서 선정 여부가 결정되기 보다는 다양한 전문가적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함.
- 교과서의 중심은 최종수요자인 교사와 학생들이 되어야 함. 발행사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앞선 기준은 정확히 교사와 학생이어야 함. 위의 몇몇 설문항으로 볼 때 교과서의 선정과 선정, 설명회, 유통경로 등이 발행사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음. (예를 들어, 발행사 설명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학교-발행사로만의 유통경로 일원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종수요자인 교사와 학생들을 기준으로 검토가 된다면, 교과서 선정 단위의 사항도 추후 변경에 관한 사항도 선정과정과 절차도 유통과정도 단순화될 듯함. 교과서를 선정하는 교사들에게 집중된 업무량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제때 늦지 않게 교과서로 학업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의 번잡하고 불편함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임.
- 교과서 선정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참여하는 인력인 학교-발행사-심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서 개정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진행해야 함. 정권이 바뀌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행사에서 그에 대한 인력을 상시적으로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교과서 개정의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됨.

부록 8. 델파이 조사 3차 서술형 의견(답변 그대로 인용)

1. 교과서 선정 관련 법규 개선안

<p>(1) 교과서 선정을 위한 기간은 늘리고 주문시기는 늦추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다.</p> <p>[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 교과서를 적용하는 시기를 한 해 늦추더라도(기존 교과서 활용)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선정, 선정하는 시간을 더 줄 수 있을 것임. 학교 단위에서 선정 선정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시간의 문제는 있으나 다른 절차상의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기간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검인정 일정이 촉박하고 예산 집행 등과 맞물려 주문시기를 마냥 연기할 수 없음.- 교사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전시본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해 연도 교과 교육과정을 거의 운영해 본 뒤 차년도 교과서를 선택함.- 법규에 이런 사항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봄.- 기간은 그다지 의미 없는 요소라고 생각하며 절차에 초점을 두기를 바람.- 기간 늘린다 하여 선택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시기를 늦추면 생산 공급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임.- 교과서 생산, 공급 일정 고려를 전제로 함.- 선정 및 선정 기간을 늘리려면 심사 전시본 앞단의 심사기간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임. 주문 지연은 생산과 학교 공급시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p>(2) 교과서 선정 시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명시한다.</p> <p>[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나 그 과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적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를 강조하는 것일 뿐 교과서 선정과 선정의 공정성이나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보통'의 의견을 제시함.- 교사 의견만 적극 반영 시 지도서 중심으로 교과서 선정 우려됨. 학생, 학부모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교사의 의견이 아니라 해당 교과 교사 의견이어야 하고, 모든 것을 규정에만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봄.- 의견 반영 과정에 반드시 사유 등의 논리적 이유를 남기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함.- 현재도 교과서 선택에 있어 교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음.- 학부모는 교과서 사용의 주체가 아님.

(3)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명시한다.

[의견]

- 프로슈머 관점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의견 반영이 필요함. 단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로 선정해야 할 것임.
-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며, 잘못하면 외부압력으로 변질 우려 또한 있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법규에 이런 사항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봄.
- 교과서 선정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청취가 필요함. 다만 이 과정을 의무화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음.("하여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로 명시)
- 학부모의 의견은 전문성이 결여되고, 결국 교사의 의견을 물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4)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의견]

- 교과서 선정 변경 시 신규 선정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학운위 동의 여부를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선정된 교과서의 변경의 원인으로 교과서업체와의 관련성, 부정을 막기 위해 학운위의 많은 인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교사의 교과서 선택 자율권 보장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우려보다 더 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은 법규에 있으므로 동의 규정을 넣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 교과서는 최초 선정 시보다는 변경 시에 절차를 더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필수적임. 다만 3분의 2 이상으로 할지,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할지는 검토 필요함.
- 교과서 선정은 가르치는 교사의 선호도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데, 2/3의 동의는 바꾸기 힘든 구조임.

(5)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할 시, 관련 교과목의 교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한다.

[의견]

- 해당 교과 교사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관련 교과목 교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음. 관련 교과목을 학교에서 정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규정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봄.
- 변경이 제3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만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지극히 당연함.

(6) 교육감은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외부 압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과정을 지원한다.

[의견]

- 외부의 압력,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감독이 필요함.
- 외부 압력이 드러난다면 사법처리로 가야할 사항임. 학교 차원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교육청이 이를 지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법규에 이런 사항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봄.
-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 교육감이 외부 압력에 대한 대응 과정을 지원할 필요는 제기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 등에 명시 여부 및 지원 방안 예시 등은 검토 필요함.

(7) 기존 도서의 1/2 이상을 고치는 '개편'을 국정만이 아니라 검·인정 도서에도 적용하는 규정을 둔다.

[의견]

- 현행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
- 교과서의 수정·보완 절차를 쉽고 빠르게 하는 것이 인정도서 확대 정신과 일치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교과서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국정/검정/인정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생각됨.
- 개편의 범위에는 국, 검, 인정에 차이를 둘 까닭이 없음.
- 검·인정도서의 잦은 내용 수정은 교과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발생하게 됨. 교과서의 잦은 개편은 교과서 발행사의 원가 부담 및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교과서 가격 부담이 높아지고, 국가의 교과서 구입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
- 내용 수정을 절반 이상이나 하면 거의 새로운 책이나 다름없어짐. 그 정도의 개편을 해야 할 상황이면 책의 질이 의심되고, 개편 내용 역시 또다시 심사해야 할 듯함.
- 기존 도서의 1/2 이상을 고치는 것은 개편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과 같음. 같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교과서의 1/2 이상의 개정은 학교 현장인 교사, 학생들에게 모두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며, 또한, 교과서정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하나의 교육과정 속에서 1/2 이상의 교과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교육과정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으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 시킬 뿐임.

(8)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규정을 둔다.

[의견]

-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 자체 규정이나 출판사들 자체의 상호 규제책을 자율세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율 정책을 우선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심의회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굳이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

- 교과서의 외형적인 면이나 과도한 편집 비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교과서의 내용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음.
- 가격 상한을 정할 경우 매년 수정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될 것임.
- 정부든 출판사든 가격 문제는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자율성 있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이 가격 때문에 제한되는 부작용이 우려됨. 현재 교과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인지 의문임. 교과서 가격 인상이 문제라면 무조건 출판사에 압력을 넣기보다는 국가 지원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함.

(9) 교과서 구입비용을 학교 예산회계로 할당 편성하여, 선정 시 총액 내에서 가격을 보고 선정토록 하는 규정을 둔다.

[의견]

- 교과서를 예산에 맞추어 선정하다보면 점차적으로 학교에서는 저가의 교과서를 선택하고자 할 것이고, 결국 교과서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시도교육청에서 교과서대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많음.
- 무상교육의 확대에 따라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교과서 선택 과정에서 교육청의 예산 형편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함.
- 가격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해야 무한정 교과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임.
- 도서별 가격 상한제의 대안으로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과서 구입비를 학교 예산회계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함.
- 교과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내리려는 정책으로 보임. 편성된 예산안에서 구입하라는 제한은 좋은 교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질 낮은 교과서를 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 교과서 선정, 선정의 제1원칙은 교과서 질임.
- 학교 교육의 원천 콘텐츠, 기본 토대가 되는 교과서를 질보다 가격이 우선되어서는 안 됨.

2. 교과서 선정 단위에 대한 개선안

(1) 현재와 같이 개별 학교 단위에서 선정한다.

[의견]

- 개별 학교 단위에서 선정, 선정하는 것보다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 학교 간 시너지 효과를 보기 어려움.
- 고교에서는 개별 학교 단위 선정 선정 방식 유지함.

- 현재와 같은 방식도 좋음. 그러나 여러 부분(학교, 발행사 등)에 걸쳐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매우 타당하고는 할 수 없음.
- 개별 학교 단위에 국한해서 현재처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광역화해서 교과서 전시와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방안이 교과서 선정에 대한 공정성 기여 등의 측면에서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

(2)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 지원청별로 교과서를 선정한다.

[의견]

- 교과서 선정과 선정 과정에서 단위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뿐더러 전체적으로 역행하는 방법이라서 매우 우려되어 1번에 응답함.
- 학교마다 특성과 학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봄.
- 교과서 선정 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정보다 학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함.
- 의무교육기간이며 교과서 구입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교과서 선정 선정 단위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하는 것 검토 필요함.

(3)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교과서 선정을 광역화한다.

[의견]

- 학교마다 특성과 학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봄.
- 현재 학교단위로 선정하고 있는 데, 갑자기 시도교육청 수준으로 광역화하는 것은 너무 급진적임.
- 개별학교에 의무만 주어진 교과서 선정/선정을 중앙에서 전문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지역 정서에 맞는 최고/최선의 선정을 유도(전학 등)함. 단, 기본 선택은 광역중심이지만 특별한 경우 독특성을 인정해주는 예외를 두어야 함.
- 시도교육청 수준의 광역화는 단일교과서가 사용하는 영역이 지나치게 클 수 있음.

(4) 교사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학교들은 자발적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교과서를 선정한다.

[의견]

-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사가 적은 교과는 이미 교과 단위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 3번에 응답했었으나 소규모 학교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4번으로 고쳐서 응답함.
- 교과서 선정은 반드시 해당 과목 ○인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 있음. 해당 학교에 교사가 부족할 경우 자발적이 아니라 몇 학교가 함께 공동위원회를 범으로 구성하도록 제시해야 함.
- 전문성 확보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공동위원회, (지역)교육지원청 등의 협력이 필요할 것임.

- 학교단위 선정 방식을 보완하는 정도의 방식으로, 학교단위 선정방식과 지역교육청 단위 선정 방식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음.
- 광역화로 선정/선정의 변화를 연구해야 한다에 찬성하므로 (4)문항은 광역화 했을 때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항임.
- '자발적 공동위원회'면 범위가 어딘지 애매함이 느껴짐. 알음알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건지 불분명함.

(5) 시·도교육감이 관내 학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체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개별학교'로 다원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의견]

- “~다원화 할 수 있도록 한다.”가 아니라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넓은 의미로 (5)번 문항이 같은 뜻이어서 3번에 다시 응답함.
-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함.
- 선정 단위를 국가에서 정하지 않고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교과서 제도의 혼선 우려됨.(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과서 선정방식이 바뀔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사전에 선정방식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변경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음)
- 큰 틀은 광역화로 규정 단, 개별학교에서 타당한(특별한) 요청 시 수렴과정을 통해 승인하는 규정이 필요함. 선정 주체의 전문성과 환경이 각각 다른 주체로의 다원화는 연구사업의 과정 중 하나일 뿐 최종목적지는 아님.
- 시도교육감에 따른 선정 주체를 달리함은 교과서 선정주문프로세스를 각기 다르게 접근함으로써, 시스템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없게 할 것임.

3.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안

(1) 교과서 선정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의견]

- 현장의 의견은 충실히 반영하되,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
- 개인별검토 > 교과협의회 > 학운위 > 학교장결정 > 주문 (이후 공급 > 학생배부 > 가격정산 등) 으로 이어지는 절차마다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 교사와 학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함.
- 질문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음. 불필요한 절차라면 간소화하여야 하나, 간소화 명분에 따라 꼭 필요한 절차까지 생략될 수도 있어서 방향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소화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봄.

- 선정/선정의 형식적인 과정과 절차는 소모성이지만 않나 생각함.
- 전시본 제공시 교과서 외 평가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발행사들의 지나친 원가 부담을 초래하고, 군소출판사와 대형출판사와의 지원 자료에 대한 질적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 또한, 지금도 교과서 선정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내려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 공정한 교과서 선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근본적으로 교과서 가격 상승의 요인을 발생하게 됨.
- 선정 선정 과정과 절차는 더 꼼꼼하게 기간을 확보하면서 진행되어야 함.

(2) 전시본 제공 시, 지도서 및 학습용 CD 등도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의견]

- 교과서 가격 인상 요인 인 지도서 중심으로 교과서 선정 우려됨.
- 전시본에 지도서/CD 등을 포함할 경우 교과서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과서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외적인 요소에 의해 선정과 선정이 결정될 소지가 큼.
- 지도서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은 학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출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 나아가 교과서 가격이 상승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현행대로 전시본을 제공한다면 교과서 합격 발표 후 1~2달 이후인테 지도서와 cd 등도 함께 제작하기는 부담이 너무 큼. 기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부실한 자료 제공이 될 수 있음.

(3) 출판사의 인지도에 따라 교과서 선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시본에서 출판사명을 삭제한다.

[의견]

- 학교현장 특히 고교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출판사가 부교재나 참고교재가 잘 개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내용검토하기에 앞서 출판사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출판사명을 삭제하는 의미를 실제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음.(출판사를 보고 교과서를 선정하는 교사가 없다고 생각됨)
- 출판사명을 삭제하더라도 출판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음. 출판사명을 삭제한 전시본을 따로 제작하는 데 드는 경비 부담에 비하여 선정의 공정성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움. 출판사의 평판(그동안의 교과서 질 제고에 대한 노력, 출판사의 대외 이미지 등)도 어떻게 보면 교과서 선택에 필요한 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임.
- 교과서 발행사는 교과서 선정 후 향후 기대하는 교과서의 질 관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는 기초이기도 함.
- 출판사의 인지도를 보고 교과서를 선정 선정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출판사의 인지도가 높다는 것은 지금까지 신뢰받았다는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좋은 교과서를 개발했다는 것임. 마땅히 교사들이 그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를 알아야 할 것임.

(4) 교사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전시본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견]

- 교과서 선정 일정 촉박, 전시 장소 확보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특정장소에서만 열람하는 방식도 바뀌어져야함.
- 오랜 시간이 너무 자의적 표현이고, 교과서 양에 맞추어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검토 시간이면 된다고 판단됨.
- 비용 증가만 초래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듦.
-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인가를 생각해보아야함. 현재와 같이 개별학교 단위로 선정/선정한다면 과목별 2명 이상의 교사가 오랜 기간/특정 장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현업에 종사하면서(각종 행정사무와 교수학습) 가능한가? 선정/선정기간동안 아이들은 누가 케어하나? 탁상공론임.

(5) 교과서 선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의견]

- 전문가가 아닌 학생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며 무조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음. 따라서 '전혀 타당하지 않음'으로 판단함.
-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미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됨.
- 1-(3)과 동일한 입장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 인정함. 다만, 학생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권장하는 수준이 좋을 듯함.
- 학생들의 무슨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인가? 어떠한 교육과정의 무엇을 배울 것 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최고의 학습을 향상시킬 교과서를 선정/선정한다? 그렇다면 이미 선행학습이 완료됐다는 말인데 앞뒤가 맞지 않음. 발행사들이 학생들에게 각종 불법유인물로 유혹할 것이고 학생들은 브랜드에 치우친 의견으로 모아질 것임. 학생들을 전문가로 보는 것인가? 이는 학생들을 도덕적 범죄자로 보는 것임.
- 교육과정을 모르는 학생들의 평가가 반영되는 것을 적합하지 않음.

(6)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만 파악한다.

[의견]

- 절차적 정당성 여부만 파악하기보다 전체적 맥락에서 선정선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학운위에서는 절차 및 과정상 이상 유무만 판단하도록 함.

(7) 지역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과서를 2~3권 선정하고, 학교에서는 선정된 교과서 중에서 최종 선정한다.

[의견]

- 너무 걱정스러워 5번에 응답했었으나 4번으로 수정하여 응답함.
- 교사에게 부여된 교과서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전문성 제고와 학교 선택권 동시 보장 방안이 효과적일 것임.
- 지역청 단위 선정 방식과 학교 단위 선정 방식을 절충한 듯이 보이나, 오히려 선정 과정이 2단계로 되어 선정에 대한 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음.
- 지역 교과서 선정위원회의 위원 선정부터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교과서 선택에 현장 교사의 의견이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축소될 경우 교과서 선정을 위한 로비 활동이 극심해질 수 있음.
- 교과서는 교재가 아니고, 이미 검인정 심사를 통해 교과서로서의 자격을 갖춘 상태인데, 이것을 또 2~3권을 선정하는 과정은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학교에서 선정하는 기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검인정 심사가 좀 더 강화된다면, 과목별 합격한 교과서의 수도 지금과 같이 그 중수가 난립하지는 않을 것임.

(8) 학교는 교과서 선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선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의견]

- 교과서 선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일정 기간’이 얼마 동안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함. 오히려 선정 선정 결과는 즉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최근 한국사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선정된 교과서에 대한 논란과 외부 압력이 있었으나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사례로서 제도에 굳이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음.
- 모든 학교가 선정이 되면 상시로 공개되어야 함.(일정기간 동안 x)
-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과서 선정결과를 공개하여 전국적으로 언론이 주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예, 최근 한국사 관련)
- 선정선정 후,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음.

4. 교과서 선정 후 변경에 대한 개선안

<p>(1) 교과서 변경 시, 선정 과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p>
<p>[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변경 시, 현행처럼 교사 의견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받는 것 외에 추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3번에 응답함. - 동일한 절차로 하되, 오히려 변경에 더 신중하여야 한다고 봄.
<p>(2) 선정된 교과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의 선정 변경 절차를 강화하여,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교사·학생·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게 한다.</p>
<p>[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의 선정은 전문가인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변경 시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변경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신규 선정과정과 동일하게 함. - 한번 선정하면 다음 개정 시기까지 같은 출판사의 과서를 사용하게 만드는 지금의 경직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선정 교과서의 변경 절차를 엄격하게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불필요한 변경으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함. - 선정과 동일하게 변경 절차 운영하는 것이 좋음. - 학교에서 선정된 교과서에 대해 학교에서의 변경에 제한을 둔다면 학교 밖의 전문적 기구에서 검토해야 타당할 것임. - 선정 시보다는 변경 시 결정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기준을 선정 시보다 변경 시 더 강화) 장치 마련하는 것에 동의함.(학운위 의결 기준 상향, 선정 시에는 학생, 학부모 의견 참고하되, 변경 시에는 학생, 학부모 의견 반영하도록) - 교과서 선정은 가르치는 교사의 선호도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데, 2/3의 동의는 바꾸기 힘든 구조임.
<p>(3) 변경 가능한 사유를 '선정 과정의 하자나 불법행위 및 발행사의 공급 문제 발생' 정도로 제한하여, 학교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변경은 못하도록 한다.</p>
<p>[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특성 및 수준에 맞지 않아 변경할 수도 있음. - 제시한 변경 사유 보다는 다른 사유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학교에서 일단 선정하여 가르치던 교과서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과서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변경하고자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변경 사유를 교육 내용과 무관한 경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임.
- 교과서 변경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변경할 수 있어야 함. 선정한 교과서의 질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교과서의 수정 보완 등이 원활하기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처음 선정 기간을 확보하여, 꼼꼼하게 선정 과정을 거친 후, 이후 변경은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교과서 선정제도를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보임.

5. 교과서 선정 시, 발행사의 공동 설명회 기획 부여에 대하여

(1) 발행사의 경쟁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필요 없다(객관성·공정성 훼손, 교과서 가격 인상 요인, 광고와 다를 바 없음 등).

[의견]

- 검인정 교과서 제도는 경쟁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임. 오히려 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함.
- 공동 설명회는 선정 로비를 양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공동 설명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함.

(2)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설명회를 교과별로 제공한다.

[의견]

- 지도서와 학습용 CD 등을 전시본으로 제공하기 위한 비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과서 설명회는 잘못하면 교과서 발행사의 광고의 장이 될 수 있음.
- 현행과 같이 학교, 교사 중심의 선정 방식을 선호. 교육청이 교과서별 설명 자료를 만드는데 한계가 많음.
- 시도교육청이 주최하여 설명회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발행사의 지나친 홍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군소회사의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3) 지역별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공동 설명회를 부여한다.

[의견]

- 지역별 요구로 한정을 짓지 말고 교육청 단위의 공동 설명회나 전시 장소 마련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 교과서 선정 참고자료를 교육청에서 가급적 객관적, 구체적으로 제작하여 보급함.
-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에서 공동설명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에 강제할 필요는 없지 않다고 생각함.
- 발행사 공동 설명회가 자체가 안 됨. 설사 지역별 요구가 있다면 전문기관/학계 등 중앙(시도교육청 등)의 지원에 의한 설명회이어야 함.
- 지역별 요구는 여론이므로 중요시해야함.

(4)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발행사가 지원하는 현장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형식의 설명회를 제공한다.

[의견]

- 공동설명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어떠한 형태로든 발행사가 참여하는 설명회는 안 됨. 발행사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가? 만약에 한다면 대중소 발행사의 형평성에 맞게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현장 교사들과의 질의/응답만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발행사 관계자와 관련 지원(물품 등)은 완전 배제하고 교과서 저작자와의 만남이어야 함. 단, 저작자와의 만남도 교사중심의 질의에 대한 저작자의 응답으로 계획해야 함.
- 알권리 충족시킴.

(5) 발행사가 자유롭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견]

- 발행사가 자유롭게 개최하는 설명회를 현장 교사가 모두 찾아다니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있음.
- 교과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면 교사의 정보를 알 권리를 위해 발행사의 자유로운 설명회가 필요함.
- 공식화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설명회를 발행사 자율에 맡겨 둘 경우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6) 공동 설명회 대신에 교과서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 설명 자료를 출판사에서 제공한다.

[의견]

- 선택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제작한 자료만 보급함.
- 현행과 같이 출판사 공동 제작한 보충설명자료 정도가 적합함.
- 교과서 전시본과 함께 지도서 등을 제공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굳이 보충 설명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봄. 보충 설명 자료를 허용하게 되면 자료 제작비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교과서 가격이 상승될 수 있음.
- 어떠한 형태로든 발행사(출판사)는 안 됨. 영리 목적 외에는 없기 때문임. 중앙(시도교육청 등)에서 해야 할 업무를 발행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됨. 보충 설명을 위해 분석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선정 중심인 교사의 편의를 위한 중앙(시도교육청, 검정기관 등)의 몫임.

6. 교과서 선정제도 전반에 대하여

(1) 현행 교과서 소유제를 대여제로 전환해야 한다.

[의견]

- 현행 교과서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과서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여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함. 또한 대여제를 시행하는 경우 하나의 교과서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교과서를 두루 접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이유임.
- 대여를 한다고 해도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교과서이고 예전에 실패했던 교과서 정책 중의 하나가 대물림이었음. 따라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대여제로 전환 시 문제점도 많이 있음. 깨끗이 사용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음. 예산 절감의 효과도 크지 않을 듯함.
-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하에서 대여제는 실효성이 떨어짐.
- 교과서를 단 년(일회성) 소비재로 여기는 풍토를 전환하고 점진적으로 풍부하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 환경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함.
- 모든 교과를 일시에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교과 교실제 학교부터, 교과서 활용도가 낮은 교과부터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권장함.
-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 환경 상 대여제의 전환은 불가함. 보편타당하고, 평등한 평가의 기준이 바로 교과서이고, 국민의 정서가 소유, 쟁취가 기본이 있기에, 교과서의 대여제의 전환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불가하다고 봄. 오히려, 소유제를 기본으로 그에 알맞은 교과서의 사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임.

(2) 교과서를 복수 선정하여 수업에서 교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견]

- (1)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도서관 대여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과서는 학습의 절대 자료가 아닌 보조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측면이 바람직함.
- 같은 교육과정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를 여러 권 갖고 있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함. 학생들이 교과서를 여러 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모든 교과서를 비치하도록 하여 교사가 연구 자료로써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임. 따라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교과서의 다양화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복수 선정의 의미가 적음.
- 교과서는 저자와 발행사별로 장단점이 있어서 1가지를 선정하여 1년간 쭉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복수로 선정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꼭 진도를 나가야 하는 수업의 지침서임. 따라서 교과서를 복수 선정하는 것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학습량의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임.

(3) 교과서 활용도가 낮은 교과서는 학생용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 또는 교사용 워크북(교사가 별도의 학생용 자료 만들어 배포)으로 대체한다.

[의견]

-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완하는 선행조치도 필요함. 특히 게임중독 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의 교과서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 교과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치고 디지털교과서 또는 교사용 워크북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업방식의 변화, 경제성 향상 기대 가능함.
- 교과서 활용도가 낮은 교과서를 모든 학생이 구입하고 지참하도록 하는 것은 교과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되며, 학생들에게 우리 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비교육적인 측면이 많음.
- 보조교재로서는 사용 가능하나 기본교재는 아님. 예를 들어, 체육교과서가 활용도가 낮다하여 보조교재로 대체한다면 기본교재(교과서)를 사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찌되었든 디지털교과서는 만들어져야하고 교사가 만들 수 있는 학생용 자료를 위한 또 다른 모양의 교과서는 만들어져야 함. 형태만 달라질 뿐 활용도가 낮은 교과서의 교재는 만든다는 것임.
-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서는 책으로 출간되어 공급되어야 함. 디지털교과서만 제공하는 것은 학생 및 교사의 교과내용에 대한 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되어야 한다면, 그만큼 인프라가 학교 현장에 구비되어야 함. 그렇다면, 교사가 별도의 학생용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교사들의 개인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임.

(4) 교과서 주문과 공급의 유통경로를 '학교-발행사'로만 일원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발행사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의견]

- 유통경로 변경은 발행사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 일선 학교 업무 부담의 우려가 있음.
- 공급사의 유통 비용을 줄이며 교과서 가격 상승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학교 단위에서 교과서 선정, 공급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문, 배부 시스템 개선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함.
- 발행사의 발행사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함. 그게 기본임. 기본은 협의대상이 아님. 유통경로를 학교-발행사로 일원화하면 정말 유통비용이 줄어드나?(일원화가 교사/학생을 위함인가? 발행사를 위함인가?) 만약 유통비용을 줄어든다면 누구에게 가장 유익한가?(교사/학생인가? 발행사인가?)

- 교과서 주문과 공급의 유통경로는 철저하게 최종수요자인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논의/검토되어야 함. 교사에게 있어 주문업무가 편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학생에게는 교과서를 학업에 지장되지 않도록 적기에 안정적으로 불편함 없게 안겨주어야 함.
- 학교-발행사로 일원화하면 교과서를 발행사는 수많은 발행사들과 각각 대면해야 하는 교사의 고충과 통일되지 않은 각각의 업무(행정을 비롯~)와 민원(해결하지 못하는~)들, 대중소 발행사들간의 주문과 공급업무 환경의 불평등에 의한 충돌,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등)에서의 관리/통제 불가능 등 학교현장의 번잡하고 불편함 등이 있을 것임.
- 유통경로 일원화로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발행사입장에서의 교육마인드임.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제도권 하에서 공동으로 주문과 공급을 실행하여 최종수요자(학생/교사)의 편의는 물론, 발행사의 입장도 만족시키는 더욱 현실적 대책임.